

200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4. 2. 28

연구수행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권인숙

연구원 김엘리

김현영

노미선

이경환

이동옥

홍미리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군대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현안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문제이다. 특히 이 남성간 성폭력 문제의 경우 남성문화와 관련되어 신고율이 낮고 인식이 미비하여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신뢰할만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대에서는 2001년 사단장의 여성군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과 신고, 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2003년 7월 김모 일병의 자살 이후 이러한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7월 육, 해 공군을 합쳐서 국방부가 발표한 '2000년 이후 군내 성범죄 관련 실태 및 조사관련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총 32건(이중 남성간은 2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성희롱은 18건이고 성추행은 14건 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690,000명의 군인 중 성폭력 피해자는 0.00005 %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유형에서도 비교적 강도가 약한 성희롱이 발생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수치는 군대는 성폭력 발생이 사회와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낮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대는 성폭력이 없는 곳이라고 주장할 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군대 외부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지난 2000년 정대철 의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그 해 기준으로 이 전 3년 간 군인들의 성폭력, 성희롱 발생수가 666건이고 그와 함께 휴가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5%가 피해를 인정했다고 나타났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발생률은 9.1%에 달했다. 위 두 기관의 조사뿐만 아니라 2003년 7월에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져 나온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사건들은 군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군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빈도중심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문제의 진단과 대처, 법이나 정책변화를 유도할 만한 수준의 조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 외에 심층면접과

군관계자 면담 등 보충면접을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1)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립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은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남성간 성폭력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성폭력을 결합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남성간 성폭력의 연구현황과 그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피고, 이를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접목시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을 분석했다.

2)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와 성의식조사

성폭력의 발생빈도, 발생형태, 발생상황, 발생이유, 신고현황 등에 대해 설문지 방법과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집단 내의 공개성 여부와 성폭력 수용도 등을 살펴 군대내 성폭력 발생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보다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언어적 성희롱의 실태, 성교육 시행 내용과의 상관관계, 가해자 형성에서 피해경험이나 목격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성의식을 세분화하여 성역할 의식, 성애의식,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에 관한 의식과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의식조사를 병행하였다.

3)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대의 제도적 의식적인 성폭력 대처방안의 관점과 현황, 실효성 등을 진단하고, 군에서의 성폭력 신고절차, 피해자 보호, 성폭력 교육의 개선방향 등을 짚어보았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지 조사, 심층면접, 관계자 보충면접 등이다.

1) 문헌연구

남성간 성폭력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관계된 국내외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연구하여 연구의 방향과 개념을 정립하고, 조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본 설문조사는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의 예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역군인은 연구기간이 짧고 첫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대다수를 점하는 육군¹⁾에 한정하였으며 부대방문 조사와 휴가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군부대 방문 조사에 응한 병사들은 총 294명이다. 휴가병은 서울역과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휴가를 나왔거나 부대로 귀환하기 위해 승차를 기다리는 휴가병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조사하여 총 111명을 조사하였다. 제대병의 경우 제대 후 3년 이내로(입대 년도 1997 이후) 한정하여 가능한 현재의 군대내 상황을 반영하려 했다. 제대병 조사 중 육군 제대병을 선별하여 총 266명의 설문결과를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²⁾. 무응답과 신뢰도가 낮은 설문지, 소속부대가 육군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유효 참여자 수는 671명이다. 이 중 소속군대별로 나누면 육군전방부대 439명, 육군후방부대 232명이다. 설문에 응답한 현역병은 총 405명, 제대병은 266명이다.

3) 심층면접을 통한 실태조사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다면적인 문제를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이 행해졌다. 가해자의 심층면접은 국방부의 공식 협조를 얻어 2003년 12월 29일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총 8명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피해자의 경우는 총 3명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내용은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전허락을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서면언어로 옮겨졌다. 또한 피해자 면접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 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사례 중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 6명의 상담 사례를 포함하였다. 또한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폭력이 어떻게 보고되고 처리되는지를 알기 위해 법적 제도적 과정을 살피고, 지휘계통에 있는 관계자들은 어떤 인식을

-
- 1) 총병력 69만 명 중 육군은 56만 명이다(2000년 말 기준). 해군은 공군은 각각 6만 7000여 명, 공군 6만 3000여명 이다. 월간조선의 군대 종합 가이드 북 (2002년 발간)을 참조
 - 2) 설문지 조사는 휴가병과 제대병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었다. 부대 방문조사의 실시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일단 소속부대와 관계없이 휴가병에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서울역 동서울 터미널에서 만난 휴가병중 4명을 제외한 111명이 육군소속이었다. 제대병은 복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육군이 아니어서 제외된 96명의 설문지중 해군이 11명, 공군이 28명, 상근병이 10명, 의경과 전경이 24명, 기타가 6명이었다. 그러나 부대방문조사가 육군 전후방부대에서 이루어진 후 대부분의 설문지가 육군에 속해있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육군만으로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결과분석에서 제외된 97명의 설문결과는 따로 분석하여 제안부분에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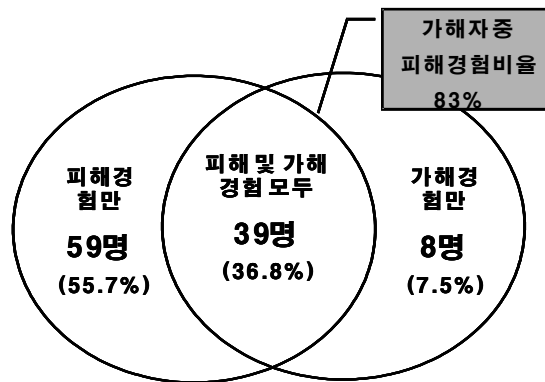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법무관 2명과 군의무관 1명, 설문조사시 방문한 부대의 사단장, 부사단장, 연대장, 인사참모 등을 만나보았다. 또한 군 성교육의 현재 진행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군 성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 4명도 만났다. 군 관계 단체로는 군사상자 유가족 연대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를 만나보았다.

3.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 발생을 및 빈도

본 조사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유효응답수는 671명으로, 이 중 직접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03명으로 전체의 15.4%였다. 직접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전체의 7.2%였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발생을 듣거나 본 경우는 166명으로 전체의 24.7%가 응답하였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병사의 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해 경험만 있는 병사는 64명으로 전체의 57.1%였으며,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병사는 39명으로 34.8%였다. 가해경험만 있는 병사는 9명으로 8%에 그쳤다. 전체 가해건수 중 피해를 입은 병사가 다시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가해자의 8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피해자 103명 중 에서 1회 이하인 경우가 9건(8.7%)이었으며 2회~4회가 42건(40.8%), 5~6회가 13건(12.6%), 수시로가 31건(30.1%)으로 전체 응답자 중 83.5%가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및 가해 현황 및 중복정도 N=106

(2) 발생형태 및 유형

발생장소는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표기하게 하였다. 총 응답수는 151건이었으며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 지목된 곳은 내무반에서가 88건(58.3%)으로 가장 높았다. 2순위 는 화장실이 13건(8.6%), 샤워실이 15건(9.9%)로 나왔다. 발생장소의 특징으로는 샤워실, 내무반 등 반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도가 높으며 행정사무실/초소/야외훈련장/연병장 등 업무수행장소에서도 21.4%의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상황에 대한 피해자 응답을 살펴보면 주로 휴식이나 게임시 58건(50%)에 취침할 때 35건(30.2%)의 강제적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 피해발생상황 (n=94)

피해발생상황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 별 백분율(%)
차별이나 기합을 줄 때	2	1.7	2.1
취침할 때	35	30.2	37.2
샤워할 때	14	12.1	14.9
휴식이나 게임시	58	50.0	61.9
운동할 때	3	2.6	3.2
외박시	0	0.0	0.0
기타	4	3.4	4.3
총계	116	100.0	123.4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피해 유형을 물어본 결과 총 피해건수는 170건으로 나타났으며 포옹 70건(41.2%), 가슴 및 엉덩이 만지기 57건 (33.5%), 성기만지기 22건(12.9%), 키스가 16건(9.4%),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이 2 건(1.2%), 자위행위 강요 1건(0.6%),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가 2건(1.2%) 순으로 응답하 였다. 목격자의 경우 총 373건의 피해 유형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기 만지기가 84건(22.5%)으로 피해자 응답의 2배에 달했으며, 성기삽입시도 또는 성기삽입 은 총 19건(5.1%)으로 피해자 응답의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피해발생상황 [피해자] (N=103) [목격자] (N=161)

	피해자		목격자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키스	16	9.4	29	7.8
포옹	70	41.2	77	20.6
가슴,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	57	33.5	93	24.9
성기만지기	22	12.9	84	22.5
성기 삽입 시도 또는 성기 삽입	2	1.2	19	5.1
자위행위 강요	1	0.6	24	6.4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2	1.2	44	11.8
총계	170	100.0	373	100.0

* 목격자 기타응답 3건(0.9%) 표에서 제외

주목할 점은 강제적 성적 접촉을 듣거나 본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답변에 비해 보다 강도 높은 답변이 나왔다는 점이다. 목격자 응답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심층면접과정에서도 직접 피해자, 직접 가해자 등은 성적 추행과 키스/포옹/성기만지기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을 잘 하는 반면 항문삽입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응답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3) 가해집단 및 피해집단의 계급적 특성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결과 피해자의 71.1%는 가해자로 선임병을 지목하였으며, 이외에도 부사관 7.0%, 장교 3.1%로 총 81.2%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응답했다.

면접인터뷰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 군법무관 속보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었다. 모든 피해자들은 선임병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목격하거나 보고 들은 사례 역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계급 [피해자] (N=98) [목격자] (N=162)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후임병	9	7.0	8	4.2
동기	15	11.7	6	3.1
선임병	91	71.1	156	81.7
부사관	9	7.0	9	4.7
장교	4	3.1	12	6.3
총계	128	100.0	191	100.0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은 피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격자의 시선은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 접촉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의 74.7%가 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응답은 15.4%였으며, 계급이 낮아서 지목되었다는 응답은 4.4%,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워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듣거나 본 경우에는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3%에 달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대답이 21.7%,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는 대답이 18.3%로 피해자의 인식과는 모든 응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해자의 72.9%는 “어떤 사람이 성적 접촉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응답해 가해자의 많은 수가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이 피해자로 지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계급적 신체적으로 취약하거나 남자답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가해자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스럽거나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군대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매사에 뒤쳐져서 6.3%/미움을 받아서 2.3% 등)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변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성

피해자는 가해자가 강제적 성적 접촉을 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난삼아 54.2%, 애정 표현 29% 등으로 응답하여 가해자의 의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자가 괴롭히거나(8.4%), 마음대로 다루려고(4.7%) 혹은 군기를 잡으려고(0.9%) 하는 등의 가해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피해자는 14%에 그쳤다. 가해자 역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해 이유로 '장난삼아'가 42.9%,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가 39.3%로 나타났다. '괴롭히려고'와 '맘대로 다루려고'는 각각 5.4%, '군기를 잡으려고' 3.6%로 나타나 가해자는 후임병에 대한 선임병의 권력행사라기보다는 '장난'이나 '좋아하는 감정 표현'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비해 목격자는 괴롭히기 위해서(20.1%), 마음대로 다루려고(11.9%)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한다고 보는 견해가 32%로 높게 나타났다.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대답은 26.2%를 차지했다.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성폭력 가해시에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는 정도는 성적 접촉의 강제성과 의도성을 보여줄 수 있다. 성폭력 피해가 다른 구타 등의 폭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처벌이나 기합과 같은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 당시 물리적 폭력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 총 22건(21.4%)이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다고 응답했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성은 발생장소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적인 장소에 일어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가해 당시 주변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응답은 가해자의 90.7%로 나타났다. 가해의 공개성에 대한 높은 비율은 키스나 포옹, 신체만지기, 성기만지기 등이 군대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또한 주변 사람들이 보고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71.8%로 가해자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부대 내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해행동을 보고있던 목격자들의 태도는 잘한다고 분위기를 만들거나(18.4%), 가담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5.3%) 등 가해 상황에 공모하는 비율이 23.7%로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2.6%) 비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담담하게 보고있었다(57.9%)'와 '못본 척 했다(10.5%)' 등 가해에 대한 소극적 동의를 합한다면 가해에 공모하는 비율은 91.6%에 이른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담담하게 보고 있었다는 응답이 59.5건(65.7%), 분위기를 조성했다 11건(14.9%), 못본척 했다 8.1건(9%)으로 가해자의 응답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5) 성폭력 발생 이후 과정 및 문제점

성폭력 발생 이후 신고 및 처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의 신고율은 87건 중에서 4건(4.4%)에 그쳤다. 이처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신고율은 극히 낮게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물어본 결과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48건(64.0%)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12건, 16.0%)',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7건, 9.3%), '불이익이 두려워서'(6건, 8.0%)가 그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16건, 31.4%)',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14건, 27.5%)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10건, 19.6%)', '불이익이 두려워서(4건, 7.8%)'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목격자와 피해자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오래 있는 일'이라는 대답은 군대 내 성폭력이 일상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순위 응답 (1순위 N=75, 2순위 N=51)

	1순위		2순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12	16.0	10	19.6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48	64.0	14	27.5
불이익이 두려워서	6	8.0	4	7.8
가해자와의 관계때문에	7	9.3	16	31.4
기타	2	2.7	7	13.7
계	75	100.0	51	100.0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원수리함 등의 공식절차를 통하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혼자서 참고 견디는 것(52.2%), 가해자에게 항의(17.9%), 가해자보다 높은 선임에게 보고(1.5%)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대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도 22.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4. 성의식 실태조사 결과

(1) 성평등의식

성역할의식의 평균점수는 3.02점 (5점 기준으로 점수가 클수록 기존통념수용도가 높음)이고, 성애의식은 2.47점으로 사병들의 성애의식이 성역할의식보다 진보적 성향을 더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 20대 젊은 세대에게 나타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최근 20대의 성의식은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상호적 친밀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혼전성경험의 시작 연령도 빨라지고, 여성의 적극적인 성의 표현이 점점 용인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성개방에 따른 성적 표현과 경험의 증가는 다소 변화되었다고 하나,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성평등의식의 향상과 직접 연결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성애의 측면에서 사병들의 의식이 진보적 성향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개방이 남성중심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위험성은 항상 있기에 성역할의식과 함께 보아야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

(2) 성폭력 통념 수용도

사병들은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높은 문항은 주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원인, 가해자의 특성, 사회구조적인 연관성에 관한 통념이고,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낮은 문항은 성폭력을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성폭력의 발생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통념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병들은 성폭력 문제를 남성의 성충동과 비정상적인 남성이 저지르는 문제로 바라보는 통념을 갖고 있는 편이며, 성폭력의 문제와 구조적 성차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인정하는 응답률이 높은 정도에 비하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정도를 보인다.

(3)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사병들의 57.4%가 군대 내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사병들의 60.6%가 성적 농담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군대생활의 활력을 위하여(64.7%), 습관적으로(25.5%)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런데 사병들의 35.4%가 성적언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34.6%가 부적절한 성적언동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여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군대 내 남성간의 성폭력이나 성적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나(59.5%, 2.50점), 사병들은 주로 '여성적인 남성'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남성간 성폭력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구도에서 인식하고 있다.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남성간 성폭력의 문제를 군대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남성간의 성적 접촉은 군대특성 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며'(77.5%, 1.98점), '성폭력 발생 시 계급에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는'(46.8%, 3.26점) 의견에 높은 동의를 보이는 점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이 조심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보통의 동의를(26.2%, 3.01점) 보임으로, 남성간 성폭력의 성격이나 원인에 관한 사병들의 인지수준은 고르지 못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세 번째 특징은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 사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 군생활에서 많은 사병들은 성적 행위를 허용하고, 남성문화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사병들은 강제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이라 할지라도 신체접촉에 거부감을 느끼고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나, 실제 군대 생활에서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친근감', '장난'의 표현으로 이해하며 허용하고 있다. 둘째, 사병들은 남성간의 성적언동이 군대 생활의 활력소가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성적언동은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즉 남성문화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사병들은 성폭력이 일어날 때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인 성폭력 발생 시에 가해자에게 직접 저항하는 경우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성폭력 발생 시 성폭력의 문제를 사소화하거나 으레적 남성문화로 해석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항들의 응답비율에서 서로 대립되는 답변에 비슷한 비율로게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사병들간의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계급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계급이 높은 상병과 병장이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과 제대병을 비교하면, 제대병이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으며, 군대 내 성폭력이 군대 내 계급의 위계성과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

(4) 성의식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태도와의 상관관계

사병들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성애의식과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성의 측면에서 전통적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약할수록 그리고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 수용 정도가 낮을수록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높다. 또한 강한 남성성의 특성을 수용할수록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고,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낮다.

5. 현행 법·제도·의식 실태와 개선방안

(1) 법·제도적 문제점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발생 이후 법적 사건처리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해결 과정은 법적, 제도적, 의식적 차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 한계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성폭력을 개인적 인권침해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사고'로 보는 관점이다.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은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강제적인 남성간 성행위와 동의에 의한 남성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거의 차별 없이 처벌하거나, 제도적으로는 사고발생이 단결력이나 사기저하를 낳는다는 조직보존 논리 속에서 사건 은폐나 축소보고등의 문제를 나올 수 있다. 교육의 내용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열거하는 것 외에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군기 문란으로 성폭력을 대하는 한계에서 나온다고 본다.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나 육군은 2001년 이후 지침을 통해 성폭력 대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조사에서는 이런 노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거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 신고·처리절차에 대한 사병들의 이용도나 신뢰도도 아주 낮았고, 올바른 성의식형성에 별 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의 성교육 등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단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성폭력 대처를 위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성교육도 열악한 조건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법·제도·의식상의 개선방안

첫째, 법적인 차원에서는 남성간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에 포함시키고 남성간 성폭력에서 강간을 인정해야 한다.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상의 친고죄규정은 군대 내 성폭력 처벌에서 강도 높은 성폭력을 벌하기 힘든 조건을 만든다. 형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군대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 군형법 상에서 합의에 의한 계간 처벌은 삭제해야 하고 남성간 성폭력과 동의에 의한 성행위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낮은 신고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장과 사건에 대한 헌병대 및 군검찰의 개입, 군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군의무관의 검진 체크리스트에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피해자의 성폭력 치료 및 심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며, 민간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해나가야 한다.

셋째, 의식적 차원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성문화 개선을 위해 군대 내 성교육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군대 내 성교육을 위해 예산을 할당하고 외부 전문가와 군대 내 성교육담당자가 군인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공동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점은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군인(공군, 해군, 의경, 전경, 해병대 단기사병 포함)의 성폭력 피해 가해율은 육군보다 높게 나왔다. 직접 피해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26명으로써 27.1 %였고,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명으로 유효응답자 95명 중 10.5%를 차지했다. 듣거나 본적이 있는 경우는 97명중 42명으로 43.3% 였다. 이 중 단기사병이나 의경에서의 피해, 가해, 듣거나 본 경험의 수치가 높게 나왔고, 공군(총 28명)도 피해율 21.4 %, 가해율 17.9%를 보이는 등 높게 나왔다. 표본수가 적어서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성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단지 육군에만 해당하는 일로 한정할 수 없으며, 모든 부대에서 발생하는 일로 판단하고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제목차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가. 문헌 연구	4
나.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5
다. 심층면접	8
라. 보충 면접	11
4. 연구기간	12
5. 연구의 의의와 한계	12
가. 연구의 의의	12
나. 연구결과의 한계	13
II.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선행연구 분석과 개념틀	16
1.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과 연구현황	17
가. 남성간 성폭력의 개념 규정	17
나. 총괄적 연구경향	18
다. 발생빈도	20
라.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성	21
2.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	29
가. 선행연구 분석	29
나.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 발생 형태	31
다. 군대내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특수성	32

III.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	39
1.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	39
가.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 실태.....	39
나.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신체적 피해 및 가해 실태.....	47
2.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유형 및 특징.....	60
가. 피해 및 가해 유형	60
나.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징.....	66
3. 성폭력 발생 이후 과정 및 문제점	87
가. 신고 및 처리 실태 및 낮은 신고율의 원인.....	87
나. 피해 직후 증상 및 후유증 실태	93
4. 소결	103
IV. 성의식 실태	105
1. 성평등의식	106
2. 성폭력 통념 수용도	110
3.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114
가. 군대 내 성적인 언어문화 실태	115
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	118
다.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와 인식의 차이	131
4. 군대 내 성폭력과 성의식 상관관계 분석.....	137
가. 성평등의식과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138
나.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140
5. 소결	142
V.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식 실태와 개선방안	145
1.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	145
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법률상의 실태와 문제점.....	146
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153
2.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제도의 개선.....	154

가. 현행 제도상의 관점의 문제점	154
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신고 절차와 실효성.....	155
다. 군대 내 남성간 신고처리 절차의 개선방향.....	159
3. 군대 내 성교육과 성의식 변화.....	162
가. 성교육 실태와 효과	163
나. 성교육실시에서 관점상의 문제	165
다. 군대내 성교육 개선방향.....	167
4. 소 결	170
VI. 총결론	172

■ 참고문헌

- 부록 1 <국방부 지침 성군기 위반사고의 정의 및 유형, 신고체제, 관련법령>
- 부록 2 <군부대 설문조사지>

<표차례>

<표 1> 현역병 계급현황	6
<표 2> 설문 문항의 구성내용	7
<표 3> 연구 참여 가해자의 가해 현황	9
<표 4> 연구 참여 피해자의 피해 현황	10
<표 5> 2000년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11
<표 6> 보충면접 대상자 현황표	12
<표 7> 피해 및 가해 응답 빈도 및 백분율 [N=106]	49
<표 8> 제대병과 현역병의 피해 및 가해 응답 빈도 및 백분율 (N=106)	50
<표 9> [피해자]의 피해 발생 장소 (N=96)	52
<표 10> [목격자] 발생 장소 (N=161)	52
<표 11> [피해자] (N=94) [목격자] (N=157)	53
<표 12> 제대병과 현역병의 가해자 비율 (N=649, 명(%))	57
<표 13>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장소 (N=44)	59
<표 14>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상황 (N=42)	59
<표 15> [피해자] (N=103) [목격자] (N=161)	61
<표 16> [피해자] 강제적 성적 접촉 피해 유형	62
<표 17> [피해자] 강제적 성적 접촉 피해 유형 계급별 교차분석결과표 (N=29, 현 역병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63
<표 18> [가해자] 성폭력 유형 (N=48)	63
<표 19> [가해자] 복수 응답한 성폭력 유형 (N=48)	64
<표 20> 2003년 속보자료의 가해유형 (N=20)	65
<표 21> [피해자] 가해자가 강제적 성적접촉을 하는 주요이유 (N=93)	66
<표 22> 가해자의 계급 [피해자] (N=98) [목격자] (N=162)	72
<표 23> [가해자] 성폭력 가해 대상 (N=43)	73
<표 24> [피해자] 성적 접촉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 (N=89)	76
<표 25> [목격자] 성적 접촉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N= 164)	76
<표 26> [목격자] 가해자가 강제적 성적접촉을 하는 주요이유 (N=165)	77

<표 27> [피해자] 주변의 태도 (N=67)	86
<표 28> [가해자] 주변의 태도 (N=38)	86
<표 29> [피해자]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순위 응답	88
<표 30> [목격자] 피해자가 보고하지 않은 이유 순위 응답	89
<표 31> [피해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처방안 (N=67)	91
<표 32> [피해자] 피해 후, 경험한 증상 제대병과 현역병 비교 (N=87)	94
<표 33> [목격자] 피해자가 겪었다고 생각되는 점: 계급별 교차분석 (N=156)	94
<표 34> [피해자] 피해 후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점 (N=87)	95
<표 35> [피해자] 피해 후, 경험한 후유증 (N=87)	97
<표 36> [피해자] 피해 후, 경험한 후유증 제대병과 현역병 비교 (N=87)	98
<표 37> 전체 성역할 인정도	107
<표 38> 문항별 성평등의식 (N=664) 빈도 (%)	110
<표 39> 전체 성폭력 통념 수용도 (빈도%)	111
<표 40> 문항별 성폭력 통념에 대한 이해 정도 (N=649) (빈도%)	114
<표 41> 전체 군대 내 성 이야기와 성적농담 경험 빈도.....	115
<표 42> 계급별 군대 내 성이야기와 성적 농담 경험 정도.....	116
<표 43> 전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동의 정도 (N=657)	120
<표 44> 문항별 군대 내 남성간 성적언동 이해 빈도(%)	121
<표 45> 계급별 군대 내 남성간 성적 언동 심각성 정도.....	126
<표 46>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발생 요인에 대한 태도(N=657)	128
<표 47>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방지에 대한 태도 (N=657)	129
<표 48> 계급별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 이해.....	131
<표 49> 계급별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방지에 관한 이해.....	131
<표 50> 군대 내 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 허용도	135
<표 51>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성의식 상관관계.....	138
<표 52> 성역할의식/성애의식과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상관관계.....	139
<표 53> 남성성과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상관관계.....	140
<표 54>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상관관계	142
<표 55> 추행(계간)	148

<표 56> 국방부 지침의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	149
<표 57> 성교육을 받아본 횟수	163
<표 58> 군대 내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63
<표 59> 성교육 내용의 빈도 (N=361)	164
<표 60> 성교육의 유용성 여부 (N=359)	165
<표 61> 성교육 담당자 빈도 (N=360)	167

<그림차례>

[그림 1] 군대 내에서 강제적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N=667) $\chi^2=183.903$, $df= 1$, $p= .000$	42
[그림 2]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N=218) (성경험 말하기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 중)	44
[그림 3] 신체비하나 놀림을 당한 경우(N=667)	46
[그림 4] 피해 및 가해, 목격 현황	48
[그림 5] 피해 및 가해 중복정도 N=106	49
[그림 6] [피해자]의 피해 발생 빈도 (N=103)	51
[그림 7] 전체 응답자 중 가해자 비율 (N=649)	55
[그림 8] 가해자 중에서 피해자 비율 (N=47)	56
[그림 9] [가해자]의 가해횟수 (N=43)	58
[그림 10] 강제적 성적 접촉 시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82
[그림 11] [목격자] 강제적 성적 접촉 시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N=163) ·	83
[그림 12] 피해시 공개여부 (피해자 N=95, 가해자 N=43)	85
[그림 13] 군대 내에서 성적인 대화나 성적 농담을 하는 이유 (N=625)	118
[그림 14] 성적언동의 심각성 정도.....	124
[그림 15] 불쾌한 성적언동은 성폭력이라는 인지도.....	125
[그림 16] 남성간 성적언동과 군대생활의 활력소 여부(N=657)	133
[그림 17] 군대 내에서 성적인 대화나 성적 농담을 하는 이유 (N=625)	134
[그림 18]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저항 가능성에 관한 이해(N=657)	136
[그림 19]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저항하는 경우 (N=67 17.9%)	137
[그림 20] 신고 후 처리 절차	1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들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로 자살한 김모 일병사건¹⁾, 육군 대대장의 성추행 혐의 구속²⁾, 남자 사병의 여자 장교에 대한 성추행 등³⁾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 불거져 나왔다. 이는 군대에 구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와 함께 성폭력이라는 다른 차원에서의 경각심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현안이 존재한다는 공감대를 낳았다. 그 중에서 새롭게 문제로 떠오른 남성간 성폭력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을 무너트리는 저열한 수준의 인권유린이라는 것이다 둘째, 징병제 하에서 남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의 가해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징병제의 규모와 강제성을 고려할 때 많은 수의 젊은 남성이 강요된 형태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무서운 현실을 이야기한다. 셋째,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에서 장교가 사병에 혹은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주로 행사하는 성폭력은 제대 이후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군대내라는 특수한 집단내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군대는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는 등 폐쇄성이 강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위에 서며, 위계와 보안을 주요한 조직원리로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피해사실의 확인, 신고, 대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일반사회보다 어려워 피해자들이 보고를 하든 안 하든 더 많은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2003년 8월 1일 국방부의 종합 대책안을 보

-
- 1) 2003년 7월 13일 한겨레 신문이 육군 김일병의 자살소식을 전했고 다음날부터 모든 신문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 2) 2003년 7월 14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실로 육군 모 부대 대대장(중령)이 당번병을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7월 5일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김모일병 자살사건과 같은 시기에 소식이 알려졌다.
 - 3) 2003년 7월 29일에 알려진 사건으로 여군대위가 자는 텐트에 병장이 침입해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대위가 직접 성추행한 병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해 동시에 여군대위도 입건되어 여군대위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가해자로 볼 것인가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문화일보 2003년 7월 29일, 경향신문 2003년 7월 31일)

면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성적 이상 성향자나 이상 성격 소지자를 조기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대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 관점에서 드러나듯이 군대내 남성간의 성폭력이 동성애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주도되는 폭력으로 오해되어 단순 병리현상으로 이해되거나 반 동성애적 정서만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내 성폭력의 현주소는 2003년 7월에 자살 사건이 보도된 후에야, 온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는 그 사실에 놓여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수준의 반응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인지도가 낮았고 대처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성폭력을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만 이해해왔던 사회적 맥락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군대에서는 2001년 사단장의 여성군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과 신고 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2003년 7월 김모 일병의 자살 이후 이런 지침⁴⁾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다⁵⁾. 그러나 2003년 7월 육, 해 공군을 합쳐서 국방부가 발표한 '2000년 이후 군내 성범죄 관련 실태 및 조사관련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총 32건(이중 남성간은 2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성희롱은 18건이고 성추행은 14건 뿐으로 나타났다⁶⁾.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690,000명의 군인 중 성폭력 피해자는 0.00005 %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유형에서도 비교적 강도가 약한 성희롱이 발생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수치는 군대는 성폭력 발생이 사회와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낮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대는 성폭력이 없는 곳이라고 주장할 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군대 외부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와는 아주 다르다. 지난 2000년 정대철

-
- 4) 이와 같은 사실은 자살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성폭력 대처를 강조하는 지침 뿐만 아니라 본 연구원들이 군대 방문시 지휘관들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5) 2001년 6월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와 성군기 위반사고방지에 대한 지침을 발급하였고, 2003년 7월 14일 김일병의 자살사건이후에는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사고예방 종합대책추진방침이나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특별대책 강구등의 지시를 내렸다
- 6) 국방부가 발표한 '2000년 이후 군내 성범죄 관련 실태 및 조사관련 자료'는 육군이 2003.7.13-7.24(열흘간), 해군은 2003.7.15-7.24(열흘간), 공군은 2003.7.16-8.2(17일간) 실태 조사 후 정리한 것이다. 총 32건의 성폭력 발생건중 육군 24건(성추행: 6, 성희롱: 18), 해군 5건(성추행 5건) 공군은 3건(성추행 3건)이었다. 육군의 경우 총 24건중 22건이 남성간 발생한 것이었고, 성추행은 4건이고 성희롱은 18건이었다.

의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그 해 기준으로 이 전3년 간 군인들의 성폭력, 성희롱 발생수가 666건이고 그와 함께 휴가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5% 가 피해를 인정했다고 나타났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발생률은 9.1%에 달했다. 위 두 기관의 조사뿐만 아니라 2003년 7월에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져 나온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사건들은 군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이 의구심은 군대 지휘부가 과연 성폭력 문제를 주요한 현안으로 인정하고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군인들이 군대 안에서 자신들이 당한 폭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고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의식도 불러일으킨다.

이런 조건 하에서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군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기존의 빈도중심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문제의 진단과 대처 법이나 정책변화를 유도할 만한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군 외부에서 이루어진 본격적인 첫 실태조사이다. 본 연구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발생 빈도와 발생 형태 발생이유, 보고와 대처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또한 더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하여 성의식 조사와 성교육 실시 현황조사를 병행하였다 보조목표로는 군 지휘관이나 군 법무관 등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군대내 사건 처리 해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제시를 하고자 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밝히려 했다 첫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거의 문제화되지 않았던 이유나 낮은 신고율의 배경을 설명하고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장난으로 사소화시키는 집단 문화적 심리적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 둘째, 남성간 성폭력 발생원인과 관련하여서 동성애자들의 일탈적 성행위의 한 종류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며 강자의 약자에 대한 권력과 지배욕구의 행사가 남성간 성폭력 행사의 주요한 원인임을 밝히고자 했다. 셋째, 개인적 공간이 거의 없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공개적, 半공개적 성폭력이 진정한 남성성을 얻는 제 2의 학교라고 여겨지는 그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해 보려고 했다. 넷째, 가해자 집단의 피해경험이나 간접경험정도를 진단하여 피해경험이나 성폭력과 관계된 문화경험이 가해자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고자 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립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은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남성간 성폭력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성폭력을 결합해서 이해해야 한다. 기존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이들 분야의 개념들을 잡기 위하여 이 부분은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우선 남성간 성폭력의 연구현황과 그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피고 이를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접목시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을 분석했다

2)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와 성의식조사

성폭력의 발생빈도, 발생형태, 발생상황, 발생이유, 신고현황 등에 대해 설문지 방법과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집단 내의 공개성 여부와 성폭력 수용도 등을 살펴 군대내 성폭력 발생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보다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언어적 성희롱의 실태 성교육 시행 내용과의 상관관계 가해자 형성에서 피해경험이나 목격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성의식을 세분화하여 성역할 의식, 성애의식,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에 관한 의식과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의식조사를 병행하였다

3)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대의 제도적 의식적인 성폭력 대처방안의 관점과 현황 실효성 등을 진단하고, 군에서의 성폭력 신고절차, 피해자 보호, 성폭력 교육의 개선방향 등을 짚어보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지 조사, 심층면접, 관계자 보충면접 등이다.

가. 문헌 연구

남성간 성폭력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관계된 국내외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연구하여 연구의 방향과 개념을 정립하고, 조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나.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1) 설문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의 예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역군은 연구기간이 짧고 첫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대다수를 접하는 육군⁷⁾에 한정하였으며 부대방문 조사와 휴가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부대방문 조사는 육군 전방 1개 부대와 육군 후방 1개 부대를 국방부의 공식협조를 얻어 직접 방문조사 하였다. 대상자 선별에 연구자는 개입하지 못했으며, 부대의 관할에 맡겼다. 조사는 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에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담당 지휘관등이 배석하였다. 방문조사에 응한 병사들은 총 294명이다.

휴가병은 서울역과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휴가를 나왔거나 부대로 귀환하기 위해 승차를 기다리는 휴가병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조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응낙을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5명의 휴가병들이 조사에 응했으나 해군과 공군 등을 제외한 육군만을 선별하여 총 111명의 설문결과만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제대병은 전국 대학생 중 일반교양을 듣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성의식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포 당시 여성학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등은 제외하였다.

7) 총병력 69만 명 중 육군은 56만 명이다(2000년 말 기준). 해군은 공군은 각각 6만 7000여 명, 공군 6만 3000여명 이다. 월간조선의 군대 종합 가이드 북 (2002년 발간)을 참조.

제대병의 경우 제대 후 3년 이내로(입대 년도 1997이후) 한정하여 가능한 현재의 군대내 상황을 반영하려 했다. 총 362명의 유효한 설문결과를 얻었으나 이중 육군 제대병 266명의 설문결과만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무응답과 신뢰도가 낮은 설문지, 소속부대가 육군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유효참여자 수는 671명이다. 이 중 소속군대별로 나누면 육군전방부대 439명, 육군후방부대 232명이다. 설문에 응답한 현역병은 총 405명, 제대병은 266명이다.

제대병을 제외한 계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현역병 계급현황

	빈도	전체응답자 중 비율
이등병	81 (20%)	12.1 %
일등병	105 (26%)	15.6 %
상병	103 (25.4%)	15.4 %
병장	109 (27%)	16.2 %
무응답	7 (1%)	
합계	405	59.3%

- 8) 설문지 조사는 휴가병과 제대병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었다. 부대 방문조사의 실시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었어서 일단 소속부대와 관계없이 휴가병에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서울역 동서울 터미널에서 만난 휴가병중 4명을 제외한 111명이 육군소속이었다. 제대병은 복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육군이 아니어서 제외된 96명의 설문지중 해군이 11명, 공군이 28명, 상근병이 10명, 의경과 전경이 24명, 기타가 6명이었다. 그러나 부대방문조사가 육군 전후방부대에서 이루어진 후 대부분의 설문지가 육군에 속해있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육군만으로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결과분석에서 제외된 97명의 설문결과는 따로 분석하여 제안부분에 첨부하였다.

2) 설문문항의 구성내용

<표 2> 설문 문항의 구성내용

범주		문항내용
사회인구학적 배경		소속군대, 계급, 입대연도, 연령
성의식	성역할의식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동의도
	성애의식	성과 관련된 역할과 성적특성에 관한 동의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성폭력 통념 수용도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남성간 성적 언동에 대한 이해	남성간 성적언동의 심각성 허용정도
	남성간 성폭력 발생 요인에 대한 태도	남성성과의 연관성 저항가능성
	남성간 성폭력 방지에 대한 태도	저항가능성, 방지방법
군대 내 성문화		군 복무 중 성생활 현황 성적농담과 성에 관한 이야기 빈도
성교육 실태		교육횟수, 교육내용, 교육효과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성폭력 실태 인지도	군대 내 성폭력 사실의 인지도
	듣거나 목격한 실태	강제적 성적 접촉의 내용 상황, 피해자 대상의 특성, 주변인들의 반응, 사건 처리과정과 방식
	피해 실태	강제적 성적 접촉의 내용 상황, 폭력유무, 피해 이유, 주변인들의 반응, 사건 처리 과정과 방식, 후유증
	가해 실태	강제적 성적 접촉의 내용 상황, 폭력유무, 가해이유, 주변인들의 반응
	언어희롱 실태	외모의 성적 비하 성에 관련한 이야기 강요

3) 통계처리방법

휴가병/전방/후방/제대병 집단을 나누어 할당추출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의식과 성폭력실태와 현황분석을 위해서는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값과 표준편차 산출을 이용하였다. 계급별, 현역병과 제대병 집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성의식과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earson 단순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 심층면접

설문조사방법은 다수의 대상자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고 결과를 통계화 된 처리를 통해서 수량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응답이 단순화되어 복잡한 실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특히 성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단순 사실 인정 단계에서도 많은 심리적 장애를 겪는 일이다. 또한 가해동기, 발생상황, 피해정도는 설문지의 간단한 항목으로는 소화하기 힘들다 따라서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다면적인 문제를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이 행해졌다. 이후 연구 결과 분석 시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해사례는 1-N의 형태로, 피해사례는 2-N의 형태로 번호가 매겨졌다.

1) 가해자 심층면접

가해자의 심층면접은 국방부의 공식 협조를 얻어 2003년 12월 29일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행해졌다. 그곳에서 교도소 성폭력 관계 수감자 총 11명중 가해자 8명을 연구자들이 2인 1조를 이루어 오전 4명, 오후 4명을 개별적으로 면접을 하였다.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정도 이어졌다. 면접을 회피하는 가해자도 있을 것으로 염려했지만 면접을 나온 가해자들 모두 면접목적은 밝히자 쉽게 면접에 응했다. 면접자 중 2명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면접에 응했다. 면접내용은 가해자의 사전허락을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음성언어가 서면언어로 옮겨졌다.

<표 3> 연구 참여 가해자의 가해 현황

*(판)은 판결문상의 내용, (기)는 면접기술지상의 내용

	계 급	가해행위		가해 횟수	피해자 수	가해 장소	가해 상황	피해경험
		기술지	판결문					
사례 1-1	병장	성기만지기	성기애무강요 엉덩이·허벅지 ·가슴 등 추행	116회	2명(판)	내무반 휴가중 외부	취침시	
사례 1-2	병장	성기애무강요 성기만지기	성기애무 귀를 핥고 이빨로 코를 물며 입맞춤	13건	3명(기)	내무반 기타	취침시 휴식시	
사례 1-3	상병	성경험 말하기 강요	귀, 가슴, 겨드랑이 등 추행 성기만지기 성기애무강요	수시로	7명(기)	내무반	점호시	성경험 공개강요
사례 1-4	병장	성기만지기 성기받기유도	성기만지기 성기받기유도	2-4회	2명	내무반	취침전	성행위 홍내강요 성경험 공개강요
사례 1-5	병장	성기만지기	성기만지기 및 강제적 성기애무 가슴 등 추행	2-4회	5명(기)			
사례 1-6	중사	볼에 뽀뽀 가슴 꼬집기	입술대기 귀·젖꼭지 등 추행	7건(기)	다수	부대안	일상적	성기만지기
사례 1-7	일병	엉덩이 만지기	성기만지기	2명씩 각 1번	2명	샤워실	샤워시	샤워할 때 만지기
사례 1-8	상병	성기만지기	성기만지기	반복적	2명(기)	내무반	취침전	

2) 피해자 심층면접

피해자의 경우는 총 3명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예측했던 이상으로 무척 어려웠다. 우선 공식협조를 요청 받은 국방부가 면접을 주선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피해자로 드러나면 군대복무에 차질이 빚어질까 연구자들도 공식주선에 의한 피해자 면접요구를 지속하지 못했다. 각종 관련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실효가 없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상담소에 연락한 사람도 이후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고 이 전에 성폭력경험을 비추었던 피해자도 면접을 거부했다. 주변의 추천을 통해 만난 사람들도 성폭력이 있었지만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고, 강간 등의 강한 정도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만나기는 더욱 힘들었다. 그 결과 3명 만을 심층면접 할 수 있었다. 면접내용은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전허락을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서면언어로 옮겨졌다. 또한 피해자 면접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 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사례 중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6명의 상담 사례를 포함하였다.

<표 4> 연구 참여 피해자의 피해 현황

	피해시 계급	피해 유형	피해 횟수	피해 장소	피해 상황	가해 경험	목격 경험
사례 2-1	이등병	성기만지기 언어폭력	1회 이상	내무반 취사장	취침시 업무중	없음	성기애무 강요/ 성경험 공개강요
사례 2-2	이등병- 일병	성행위 재연 강요/ 팬티만 입고 안마	매일	내무반 내무반	취침시 취침시	볼만지기	속옷 안입고 안마 강요
사례 2-3	이등병- 일병	성기만지기	1회 이상	샤워실 내무반	일상적으로	성기만지기	

<표 5> 2000년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

보충사례	피해시 나이	피해 내용 및 후유증
사례 2-4	25세	성추행, 성기능 장애
사례 2-5	23세	강간 피해 등
사례 2-6	24세	강간 피해, 정신과 상담 등 피해후유증
사례 2-7	미상	강간 피해, 자기 혐오
사례 2-8	미상	강간 피해, 성적 수치심
사례 2-9	미상	성추행, 우울

라. 보충 면접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폭력이 어떻게 보고되고 처리되는지를 알기 위해 법적 제도적 과정을 살펴보고, 지휘계통에 있는 관계자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법무관 2명과 군의무관 1명, 설문조사시 방문한 부대의 사단장 부사단장, 연대장, 인사참모 등을 만나보았다. 또한 군 성교육의 현재 진행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군 성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 4명도 만났다. 군 관계 단체로는 군사상자 유가족 연대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를 만나보았다.

<표 6> 보충면접 대상자 현황표

	이름	소속	활동 내용
군인 성교육 관련 전문가	A	경향신문 미디어칸 성문화센터	사병 및 장교 성교육(부대 방문)
	B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병 및 장교 성교육, 군대내 성고충처리담당관 성교육(부대 방문교육)
	C	논산YWCA	논산훈련소 기간병 성교육
	D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군종장교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위탁교육), 영관급 장교 양성평등교육(파견교육), 국방부 여군발전단과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계획
군사상자 및 유가족 관련 NGO 활동가	E	군경의문사진상규 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군인의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군복무중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전화 군인의 전화 운영, 상담
	F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군사상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예방, 의문사 규명활동과 법적 대응 및 유가족의 치유프로그램 개발

4.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03년 10월 27일에 시작하여 2004년 2월 28일까지 4달간 진행되었다.

5. 연구의 의의와 한계

가.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의 자체조사가 아닌 민간인(여) 국방부

- 9)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민간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실시한 연구이다 국가기구에 귀속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민간인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군인에 대별되는 개념으로만 한정하여 쓰였다.

의 공식협조¹⁰⁾를 얻어 처음으로 실시한 첫 성폭력 실태조사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전례가 없는 본격적인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라는 점이다 둘째, 군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정책적, 의식적 전환의 계기가 되는 연구일 것이라고 본다. 군대내 성폭력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마련된 것은 군 정책 결정이나 법개정, 성교육에 대한 예산 마련 등에 자료적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남성의 대부분이 경험하는 군대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성간, 남성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동성애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애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주로 행해진다는 사실의 확인은 성폭력과 관련한 동성애자에 대한 통념과 편견을 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결과의 한계

1) 설문지 응답환경의 문제

가) 군대 안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의 경우

전방부대 방문 후 이어졌던 후방부대의 경우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 있었던 관계로 거의 모든 사병이 일정하게 답변을 기피한 항목이 동일하게 다량으로 나오고 성폭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적 농담도 전혀 안 한다는 답변이 반복되었다. 결국 해당 설문결과지 150부를 폐기하고 이후 국방부에 다시 요청해 서울 근교 다른 후방부대를 방문하였다. 전방부대나 다시 방문한 부대의 경우 문제의 후방부대 수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응답환경에서 몇 가지 문제점은 그대로 노출되었다. 첫째는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지휘관이나 부사관들 선임병들이 지적에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설문지에 응답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과정에서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설문응답자에 대한 선정이 해당부대에 있었다는 것이다. 계급별로 차출하였다는 설명 외에는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정하였는

10) 설문조사, 가해자 심층면접 조사와 군대내 성폭력 대책과 관련한 자료를 협조해준 국방부에 감사드린다.

지 알 수 없었다. 설문응답자의 선정과정에서 연구진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위계와 보안이 강조되는 군대에서 설문지에 대한 답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은 감안한다면 성폭력 실태와 같이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이러한 응답환경상의 한계는 특히 성폭력 피해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발생빈도조사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 설문경험을 토대로 이후 군대를 대상으로 할 조사에 제안을 한다면 국방부의 협조 하에서 행해지는 설문조사의 경우 가능한 한 대상자 선정이나 응답환경을 변화시켜 보려는 노력을 시도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보안 사항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고 조사하는 관점을 군대 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진다면 조사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일정하게 극복되지 않을까 한다.

나) 군대 밖의 휴가병에게 행해진 설문조사의 경우

자유로운 설문지 응답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문제는 휴가병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기차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 이런 것 하면 큰일나요” “군대에서 휴가 나가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교육 받았어요” 라는 것이었다. “이런 것 답하면 우리 영창가요” 라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사병들도 많았다. 조사원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10명중의 9내지 8명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응하건 응하지 않건 간에 부대기밀 누설이나 소속 군대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권유받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이미 형성된 상태였다 이런 부담감은 설문조사의 응답 시 군대내 성폭력 가해나 피해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제대병 연구대상의 한계

제대병의 경우 3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 때문에 접근이 쉬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특수한 학력 이상의 대상만을 조사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여겨진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연구로서의 한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연구라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곧 연구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전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심화시킬 수 있는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 군대의 특수성, 사병들의 성의식을 결정하는 제반 사회적, 문화적 요인, 남성간 성폭력과 동성애와 관련된 통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조사 등을 심도있게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이자 앞으로 이어지는 연구에서 극복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II.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선행연구 분석과 개념틀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남성간 성폭력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이에 대한 개념틀을 정립하려고 한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의 특징은 대부분 그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간 성폭력의 통념을 비판하고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만큼 사회에서 관심을 받으며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주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쉽게 대하는 일반적인 통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7월 김모 일병이 자살 시에 나타났던 ‘남자가 남성을 성추행한다고’¹¹⁾라는 반응과 맥락을 같이하는 통념이다. 남성간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특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남성간 성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한창 혈기왕성한 때 남자들을 그렇게 가둬두고 모아놓았으니’라며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폐쇄된 공간에서 성욕을 풀 길이 없어 일어난다는 통념이다. 이는 일반적인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원인을 성욕 과잉자들에 의한 우발적 일탈행위로 보는 통념이다. 셋째, 남성간 성폭력은 동성애자가 주로 가해자이거나 동성애자에게서 주도되거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일종이라는 통념이다. 실제, 육군 참모총장이 2003년 7월 성폭력에 인한 김모 일병의 자살사건 이후 내린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체계 제도적 보완 대책 중 첫째는 ‘성선호 장애자(동성애 등) 입영 통제’ 이다. 이는 군대내 성폭력이 동성애자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통념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새로운 개념틀을 제시하기보다는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통념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남성간 성폭력이나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남성간 성폭력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성폭력을 결합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남성간 성폭력의 연구현황과 그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피고, 이에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접목시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왜 여성간의 성폭력²⁾을 포함하는 ‘동성간 성폭력

11) ‘남성이 남성을 성추행한다고’는 김모일병 자살 사건 후 주간조선의 심층 보도기사 제목이다. (2003년 7월 31일 주간조선 1764호.) 한겨레 21의 경우도 ‘어떻게 군대에서 남성끼리 성추행이 일어나느냐 며 들끓는 여론을 묘사했다. (2003년 7월 24일 한겨레 21 제 469호)

이나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이 아니라 '남성간 성폭력' 또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써야하는지도 밝히려고 한다.

1.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과 연구현황

가. 남성간 성폭력의 개념 규정

성폭력의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인 성적 폭력을 말한다¹³⁾. 성폭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권력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성차별적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⁴⁾. 그러나 남성간 성폭력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은 기존의 성폭력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성차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성폭력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남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상에 나타난 강간의 정의에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강제적 성적 행위이며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고 위계를 동반한 성적 강요 행위 성역할을 고정시키고 그에 맞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강간개념이 아닌 새로운 강간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피해 대상을 부녀자에 한정하고 피해를 여성성기에 대한 남성성기삽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형법상 강간 개념으로는, 남성간 강간 피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언급되는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기삽입을 의미하며 구강성교 강요, 성기에 이물질 삽입, 항문에 강제적 성기삽입 등의 상황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12) 한국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했다.

13)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할 몇 가지 것들>

14) 민경자, 2000, 『한국여성인권운동사』, “반성폭력운동사”, 한울아카데미

나. 총괄적 연구경향

남성간 성폭력은 그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왔다. 가해자로서 인식되어 온 남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면서도 특별히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은 첫째, 여성이나 아동이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대다수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남성피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알리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여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었다. 셋째, 남성간 성폭력을 남성동성애자 사이에서 빚어지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일종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도 있었다. 넷째, 남성성기의 여성의 질에 대한 강제적 삽입행위로 강간을 한정하고, 그 강간행위 중심으로만 성폭력을 이해해온 기존의 법체계⁵⁾나 사회통념도 무관심의 원인이다. 이런 제한된 규정은 남성이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일 수 있다는 의식의 발생 자체를 힘들게 해왔다.

남성간 성폭력에서 그나마 알려진 것은 남자 아동들이 겪은 피해정도이고, 성인남성의 경우는 성폭력의 대상으로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모아 정책변화까지 유도했던 사건은 남성간 성폭력에 관련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남성간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도 낯설게 여겨지는 현실은 그와 관련한 문제의식, 제반 연구, 정책, 제도 마련이 미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무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는 여성에 성폭력을 가한 남성가해자에 대한 연구⁶⁾는 있지만 남성간 성폭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70년대 말 이후 여성운동

15) 현재 강간죄의 규정을 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심영희는 이 법조문의 성기 중심적 사고와 특정 성을 명시하고 여성중에서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만으로 한정하여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않는 등의 문제를 비판했다.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pp.278-280.

16) 권수현은 석사논문(1998)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를 통해서 사회 성문화, 젠더문화가 어떻게 성폭력을 행사한 청소년의 성의식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1998)의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가해자의 성의식을 조사한바 있다 또한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2003년 ‘남성적 관계와 성문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권수현은 남성들의 성인식과 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성폭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교도소등에서 일어나는 남성간 성폭력이 남성인권문제로 떠오르면서 교도소 성폭력문제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1975년 수잔 브라운밀러(Susan Brownmiller)¹⁷⁾는 처음으로 교도소의 남성간 성폭력 문제를 성적욕구의 해소가 아닌 권력행사의 방편으로 보면서 성폭력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후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 후유증 치료와 관련해서 심리학과 가해자의 가해심리를 분석하는 범죄학 등에서 다루어오거나, 발생빈도 중심의 양적 조사에 머물러 왔다¹⁸⁾. 이런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연구경향은 후유증의 정도가 큰 강간과 개인과 개인의 행태 분석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남성들 사이에 성폭력을 규명하는 사회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해석이나 타 사회와의 비교 문화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비교 문화적 분석이 부재하다는 것은 우선 남성간 성폭력을 연구하는 한계이자 성폭력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역별 국가별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교문화적 이해 없이 일반적인 남성간 성폭력의 경향이나 군대내 남성성폭력을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에 대한 규명 없이 영·미중심의 연구를 개념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문화적 특수성을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 비교문화적 접근이 부족한 것은 성폭력연구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실제 남성간 성폭력이나 기타 성폭력 연구에서 각 국의 법적 제도적 차이를 살피는 연구는 있지만 비교 문화적 접근의 연구는¹⁹⁾ 활성화되지 않았다. 또한 각 사회의 연구 결과에 대해 각 국의 성폭력 관련 연구자들은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물론 법적·제도적 장치나 성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의

17) Susan Brownmiller,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Schuster.

18) Michael Scarce, 1997, 『Male on Male Rape, The Hidden Toll of Stigma and Shame』, Peresus Publishing, pp.12-14

19) 한국의 경우는 심영희의 위험사회와 성폭력이라는 주제하에 성폭력을 근대화의 산물로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바라본 연구한 논문이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성폭력이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사회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한국의 경우 그 근대화의 진행속도의 급격함과 그로 인한 수단으로서의 성폭력이 드러나는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위의 책, pp. 33-39.

해 발생빈도나 피해자, 가해자의 보고율의 차이, 피해 및 가해유형의 차이는 크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녀간의 권력 차 성적 욕망의 남성 중심적 구축, 성에 대한 남녀 차별적 이중 기준 동성애 혐오증 등 성폭력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들은 여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발생원인이나 성폭력의 개념을 잡기 위한 비교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군대라는 집단의 연구는 각 사회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²⁰⁾ 각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군대내 성폭력의 개념들을 잡는데 영미 연구의 개념들을 이용하였다. 이는 한국적 상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공통의 개념들을 더 발전시키고, 남성간 성폭력을 군대라는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다른 사회에서도 이용 가능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도 동시에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 발생빈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발생률 조사를 보면 대략 발생한 강간의 5-10%의 희생자를 남성이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²¹⁾ 포드 힉슨(Ford C. I.

20) 예로 Deborah Harrison 과 Lucie Laliberte의, 1994, No Life Like It : Military Wives in Canada, 에서의 캐나다 군인의 부인의 연구는 그 기본적 실태에 있어서 한국의 군인부인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 홍두승이 한국군대의 사회학(1996)에서 밝힌 군인가족의 현실과 닮은 문제, 1. 지역적 이동이 빈번하다. 2. 격오지에 고립되어 근무할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들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남편 또는 아버지 부재현상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4. 직장(군)과 가족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5. 사회적 기회의 박탈과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p.227).를 공통적으로 나눈다.

21) 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 2000, 'The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male sexual assault', 『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 Oxford Press p.8, Michael Scarce가 위의 책에서 정리한 발생률 연구를 보면은

-1982년 University of South Dakota, School of Medicine의 Dr. Bruce Forman의 연구에 의하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212 강간피해생존자의 5.7%가 남성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간치료센터의 1990년 528명 환자중 9.8%가 남자였다.

-1992년 코네티컷주 핫포드의 Sexual Assault Center의 4058의 전화중 400통의 전화가 남자로 부터 왔다고 한다.

-1993년 북 캐롤라이나 오렌지 카운티의 강간위기 센터의 책임자인 Margaret Henderson에 의

Hickson)등이 1994년 영국에서 행한 연구에서는 남성간 성폭력의 빈도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930 명의 남성 중 257 명 (27.6%)의 응답자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당한 적이 있고 그중 247명이 남성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였다고 대답했다²²⁾. 2000년 마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가 3142명의 영국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히슨 등의 연구보다는 낮은 빈도 수를 보고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16살 이전 5%의 남성이 성추행²³⁾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고, 이중 75%는 남성에게 당한 경우였다고 한다. 또한 3%의 성인남성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²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는 남성간 성폭력 발생률 또는 남성의 성폭력 피해발생률에 대한 연구는 없다. 다만 2002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발표한 상담건수를 보면 남성이 80건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중 2.7%에 머물렀으며 이 중 아동 성폭력은 48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70%, 여성이 30%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76%), 성희롱(13%), 음란전화 및 사이버성폭력(10%)등으로 나타났다.

라.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성

남성간 성폭력은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는 폭력행위이며

-
- 하면 147명의 기관이 도운 피해희생자중 7%가 남자였다고 한다.
 - 오하이오주 성추행연합이 1994년 관련주전체의 위기센터를 종합해본 결과 도움을 준 피해생존자중 7%가 남자였다고 한다.
 - Beth Israel Hospital이 매년 250명 정도의 강간피해생존자를 대하는데 그중의 10%가 남자이다.
 - 1994년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ry 국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강간 피해생존자중 5%가 남성이라고 한다.
 - 22) Ford C.I Hickson, Peter M. Davies, Andrew J. Hunt, Peter Weatherburn, Thosmas J. McManus, Antony P.M. Coxen, "Gay Men as Victims of Nonconsensual Sex",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23, No.3 1994, p286.
 - 23) 이들 성추행은 성기 만지기 자위행위 강요하기 성기 빨기,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하기, 항문에 물건을 집어넣기, 강간하기, 성적인 사진 찍기등이다 위의 책 p.9
 - 24) 저자들은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non-consensual sex)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데도 강제적 힘이나 수단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것들을 하게 하였을 때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것들을 강제적 힘이나 수단을 사용해서 하게 했을 때'라고 정의했다. 위의 책 p.7.

주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고유의 특수성을 지닌다.

1)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통념과 동성애 혐오증에 관계된 문제들이다. 남자가 성욕을 참지 못해 여성에게 강간 등의 성폭력을 가한다는 통념과 비슷한 선상에서 남성간의 경우 남성동성애자가 성욕을 참지 못해서 같은 동성의 남성을 강간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이 통념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린 정도를 잘 보여주는 예로 영어로 동성애자인 남성이 남자아이를 성추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동성애(homosexual)이란 단어와 pederast(lover of boys)와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²⁵⁾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 남성의 경우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미국의 Human Rights Watch가 가장 빈번하게 남성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교도소 성폭력을 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것이라는 공식은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 가해자라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 강간의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이성애자로 보고 있으며 감옥을 벗어나면 이성애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다른 수인들보다 훨씬 더 성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크지만 성적 확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²⁶⁾ 심층면접 등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Michael Scarce)는 남성을 강간하는 남성은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결론지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거의 모든 연구는 남성은 다른 남성을 성적 욕구나 열정 욕망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욕보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다고 본다”²⁷⁾고 분석한다. 이런 원인은 곧 동성애자가 성폭행을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클 스카스(Michael Scarce)는 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소수자이면서 차별 받는 입장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

25) D.J. West, Homophobia: covert and overt, 2000, p.22.

26) Human Rights Watch United States, Predators and Victims, No Escape male Rape in U.S. Prisons, 2001, hrw.org

27) Scarce, op.cit, pp,17-18.

을 관계 속에서 가지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²⁸⁾

오히려 동성애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그룹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 마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이 남성과의 성적 접촉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 혐오증도 큰 원인이다. 동성애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성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²⁹⁾ 엠마뉴엘 레이노(Emmanuel Reynaud)는 남성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 내지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성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특정형태의 동성애이다 ‘능동적인’ 동성애는 남성을 반드시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다 ... 보통 동성애자라고 하면 실제로 다른 남성에 대해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아니라 수동적인 남성을 가리킨다 ‘계집애 같은 남자’ ‘호모’ ‘동성연애자’ 등 간단히 말해서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한다. 남성에게 ‘능동적’ 동성애는 그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동적’ 동성애는 굴욕의 상징이다”³⁰⁾. 히슨 등도 동성애 혐오증과 성폭력에 관한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동성애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이 대부분 이성애 남성에게서 저질러지고 보통 동성애 혐오적인 욕설과 함께 진행된다고 분석했다.³¹⁾ 마이클 스카스는 이성애 남성은 동성애 남성을 남성성에 대한 배반자로 보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성폭력은 여자와 같이 행동한다면 여자가 되는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처벌의 의미를 강하게 띤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같이 동성애 혐오증은 남성간 성폭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 남성간 성폭력의 두 번째 특성은 낮은 신고율이다.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것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피해생존자보다 훨씬 보고율이 낮다는 것이다.³²⁾ 미국 국방부가 1995년에 행한 대규모 군대내 성폭력 조사에서도 성폭력을 경험한 여

28) Scarce, op.cit. p.75.

29) Ibid, p.11.

30) 엠마뉴엘 레이노, 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 pp. 86-87.

31) Hickson 등 Ibid, p.292

32) Scarce Ibid, p.16

성의 40%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보고하는 반면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17%만이 보고를 했다고 나왔다. 남자아동과 남자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연구한 빌 와트킨슨과 아론 벤토빔(Bill Watkins & Arnon Bentovim)도 소년들은 소녀들보다 성폭행 등에 대해서 보고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³³⁾ 한국의 경우는 여성의 강간 신고율은 2%에서 6%로 추정되고 있다³⁴⁾. 남성은 강간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신고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같은 법적인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성간 성폭력의 낮은 신고율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① 강간의 경우

강간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자로 나설 경우에 여러 종류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첫째, 남성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존 프레블과 니콜라스 그로쓰(John M. Preble & A. Nicholas Groth)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사회는 남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독립심 자립심을 최고의 가치로서 놓게 된다. 남성은 약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배운다. 위협에 처하면 남자들은 스스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배웠지 남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기대받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날 소년이 성적으로 이용당했을 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복되지 말아야 할 그의 신체 한 부분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후 동반되는 이런 심리적 기재들은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³⁵⁾고 했다. 즉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는 것은 남자임을 포기하는 수준의 의미를 띄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로 나설 경우 동성애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

33) Bill Watkins & Arnon Bentovim, 'Male Children and Adolescents as Victims: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p.40

34) 법무부, 1998, 『범죄백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6,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는 여성의 강간 및 성추행 신고율은 6.1%로 밝혔다.

35) John M. Preble 과 A. Nicholas Groth, Male Victims of Same-Sex Abuse: Addressing Their Sexual Response, 2002, p.4.

움이 크다는 것이다. 군대의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넬슨(T.S. Nelson)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동성애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낮은 신고율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분석도 함께 제출했다.³⁶⁾ 임상심리학자인 존 프레블과 니콜리스 그로쓰의 경우도,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내가 겪은 일이 남성적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나는 게이인가요?” 또는 “나는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동성애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지적한다.³⁷⁾ 기존의 통념상 남자에게 성행위를 당하는 것은 곧 동성애적 행위를 하게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엠마누엘 레이노의 지적과 같이 성폭력을 당하는 남자는 곧 여자 같은 남자, 여성과 다를 게 없는 남자라는 해석이 겹치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남성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도 의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로 낙인찍힐 지도 모른다는 부담감까지 극복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것이다.

셋째, 브루사드와 바그너(Broussard & Wagner)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남성 피해자에 더 비판적이며 벌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남성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훈련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³⁸⁾. 피해자는 약자라는 등식 속에서 어떤 경우든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남자들의 관계를 맺는 유형인 수직적 위계관계에서 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더구나 남성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성폭력 피해자가 되면 다른 남성의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남성으로 재훈련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이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릴 경우 자신의 활동제약을 염려하기도 한다. 소년들은 보통 소녀들에 비해서 많은 자유와 독립된 생활을 누린다. 또한 금지된 성적 접촉이나 잡지나 포르노영화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피해자로서 보고를 했을 경우 자신의 금지된 행동을 했던 것이 드러나거나 이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독립된 생활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36) T.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rasment in the U.S. Military*. p.43. 진짜 강간 (Real Rape)의 저자 수센 에스트리도 같은 의견을 이야기한다. “감옥의 | 상황외에는 남성간간의 문제가 별로 가시화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범죄와 관련 치육이 강렬하고 동성애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동성연애 혐오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남성간간 생존자가 처한 상황이 2세기전쯤에 여성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24).

37) 위의 책 p.39

38) 위의 책에서 재인용, pp.41-42

다.³⁹⁾ 이런 것들은 남성피해자가 겪거나 예측 가능한 보고 후의 대우를 나타내는 특징으로서 남성 피해자의 낮은 보고율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인다

넷째, 남성이 보고를 안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성폭력을 당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 특수성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들은 성기발기를 경험하는데,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가 아닌데도 발기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신의 성적체성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일어난 성적 폭력이 아니라 자신도 참여한 성행위로 간주해 버리기도 한다⁴⁰⁾.

② 강간이 아닌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강간을 제외한 성폭력을 구성하는 기타 행위들 성기 만지기, 자위행위 강요, 포옹이나 키스등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면서 성폭력으로 신고나 보고를 안 하게 된다. 이 경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김현영은 군대에서 남성들이 남성간에 일어나는 성기 만지기 같은 성폭력에 대해서 주로 장난으로 무마하거나 합리화시켜 버린다고 했다⁴¹⁾. 남성들의 경우 성기 만지기 같은 행위가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서 강제성을 띤 경우도 사소한 일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는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으려 하는 자기 방어적 기제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은 여성 피해자의 경우도 나타난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1996년 전국 설문조사에 기초한 성폭력실태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이 가해자로서 강간 등을 했다고 하는 경우는 8.2%에 이르는 반면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경우는 1.4 %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침해정도가 심한 성폭력⁴²⁾(강제 키스 애무)의 경우 여성은 3.1%가 겪었다고 한 반면, 남성은 11.2%가 심한 성폭력을 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5.7%의 여성이 가벼운 성폭력(성적 괴롭힘이나 가벼운 추행, 음란전화)을 입

39) Preble 과 Groth의 위의 책 pp.6-7

40) 위의 책 pp.40-41

41) 김현영, op.cit. p.100.

42) 이 보고서는 성폭력 행위유형들을 여성피해자 관점에서 정의한다고 하면서 강간(질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포함),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남성이,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성적 괴롭힘, 성기노출, 음란전화, 어린 성추행, 아내강간으로 분류했다. pp.55-56

었다고 한 반면, 가벼운 성폭력을 행한 적이 있다고 한 남성은 27.9%였다. 즉 강간이나 심한 성폭력에서는 가해자가 행위를 더 많이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더 적게 인정하고, 가벼운 성폭력의 경우는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이렇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정도가 달리는 경향은 성폭력의 피해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남자들의 경우 그 경향성이 한층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피해자라는 위치가 가지는 취약함이 곧 남성성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남성간 성폭력의 세 번째 특징은 지배적 남성성을 지키고 스스로 그 남성성에 자신을 맞추려는 욕구와의 관계가 깊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성적 욕구가 아닌 권력욕, 지배욕구를 반영하는 폭력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거의 모든 연구에서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런 성폭력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남성간 성폭력이고, 남성성의 문제가 구체적 행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실제 남성 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유형은 동성애 혐오증의 정도가 깊은 이성애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남성성에 대한 성적인 공격을 성적 욕구에 기반한 폭력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남성에게 있어서 성적 공격을 하는 남성과 당하는 남성사이에서는 지배/종속, 남자다움/남자다움의 잃음(여성화), 권력의 획득/ 권력의 상실 등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동성애자에 대한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함에 대한 처벌적 의미를 강하고 띤다. 결국 남자답지 못한 것을 이용한 권력의 행사이다 이성애자가 이성애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남자를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여성의 역할에 맞추어 피해자를 여성화함으로써 지배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발생동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⁴⁴⁾ 마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과 동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남성과 동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이는 남성간 강제적 성행위에 대한 의미규정이 처벌과 위계질서의 확립 주류의 남성성의 재확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게 여겨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 위의 보고서, pp.111-114

44) Scarce 위의 책 pp.76-78

45) 위의 책, p.10

4) 네 번째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성은 그 자체의 특수성이라기 보다는 사회에서 남성간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타 성폭력에 비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실제 많은 사회에서 남성간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일탈행위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는 남성간 성폭력을 동성애자간 성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사회통념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런 면은 법제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기존의 법 실행과 태도의 문제는 피해여성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가해남성을 용인하는 가해자 중심주의에 있다. 반면 남성간 성폭력의 경우는 법은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부터 건전한 사회와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이성애자의 남성성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에서 있다.⁴⁶⁾

실제로 한국의 법 체계에는 성인 남성간 성폭력 행사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강간은 부녀자 강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도 1994년까지 강간은 남자성기의 여성의 질에의 강제적인 삽입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며(King, 2000:1),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 10여개 주에서 강간을 질 삽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Scarce, 1997: 198). 또 남성간의 성폭력이나 남성간의 성행위를 동일하게 보고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문제이다. 남성간 성행위는 많은 사회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남성간의 성행위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주들⁴⁷⁾ 있어 상호동의 하에 행한 항문 성교 등과 강제적인 삽입이 형량 상에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 대한 삽입 중심의 한정된 개념과 남성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동의에 의해 행해진 성행위와 동의 없이 강제로 행해진 성폭력과의 명확한 구분을 방해한다 즉 남성간의 성행위는 강제적이든 강제적이지 않든 일탈행위라는 기준으로만 분석되어온 것이다.

2.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

가. 선행연구 분석

46) Mezey와 King, 위의 책, Preface,x

47) 텍사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미주리의 경우는 구강과 항문 성교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앨라배마, 플로리다, 아이다호, 루지애나,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버지니아는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6월 27일)

군대 내 성폭력문제는 실태나 문제진단 사회 문화적 해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군대라는 조직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내부의 문제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10여 년 전 일어난 테일 폭(해군, 해병 기관사들의 정례모임에서 여성장교에 대한 성 희롱사건 사건(1991) 이후 폭발적으로 터진 군대 내 성폭력문제를 다루는데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뉴스 등에 의한 실태보고는 자주 되어왔지만 그를 따르는 심층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구나 관심의 초점이 군대 내에서 주로 여성의 성폭력피해에 맞추어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특별한 조사나 분석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군대내 성폭력과 관련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는 1995년 미 국방부에서 한 성폭력에 대한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1988년의 실태조사결과와 이후 다양한 성폭력 방지 정책들이 시행된 후인 1995년의 상황을 비교한 연구, 둘째는 성폭력 행위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행위리스트를 작성한 연구 셋째는 성행위 보고 해결과정에 대한 사병들의 숙지 능력에 관한 연구 등이다. 미군 90,000 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미 국방부와 개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 조사 단위가 커서 신뢰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결과도 고무적이다. 성폭력에 대한 많은 방지 정책과 교육이 입안되고 실행된 7년 간 성폭력수의 현격한 감소를 나타내 정책과 교육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성폭력 보고 절차에 대한 인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짐을 보여 노력에 따라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볼 수 있는 영역임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설문조사 관련연구는 앞서 언급한 2000년 정대철 의원의 조사발표와 2002년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한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있다(48). 이외에 지난 2003년 2월 한겨레 신문이 법무부에서 공식확인하였다고 보도한 교도소 성폭력의 발생빈도도 중요한 관련연구로 꼽을 수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각종 교정시설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 당한 남성 재소자들이 90-100여 명에 달한다고 나타났다(49). 교도소 성폭력 연

48) 정대철 의원의 경우는 11% 정도의 사병이 신체 애무, 성 경험담 말하기, 자위 행위, 성기 애무 등을 당했거나 보고들었다고 했지만 간단한 수치를 제시하는 데서 그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사업이었던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연구도 성폭력에 한 항목만이 할당되어 응답자의 9.1%가 복무시 성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는 간단한 실태조사에 멈추었다

49) 한겨레 신문, 2003년 2월 13일.

구는 군대와 동일한 집단특성을 가진다. 폐쇄성, 남자만의 공동기숙, 조직기반의 확보나 범행 정도나 형량정도에 따른 폭력적 위계질서가 강한 구급시설에서 일년에 100여 명 정도의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것은 수치의 정확성을 떠나 예상가능한 일이며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성폭력의 원인이나 대처방안을 추정하는데 유의미한 비교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연구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군대와 관련한 연구들은 군 행정이나 군대교육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군의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홍두승의 경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군인장교들의 의식이나 군대가족을 주제로 점검했지만 군대문화 혹은 군대범죄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동훈의 연구⁵⁰⁾는 군대문화를 남성성과 연관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이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노현진⁵¹⁾은 군대사회학적 관점에서 탈영이나 폭력에 의한 부상 사고 등에 관해 군대 위치나 계급간의 관계를 분석한 ‘군대에서의 일탈에 관한 일 연구’라는 석사논문을 발표했으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 연구들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조성숙²⁾이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들의 남성성이 군대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연구 속에서 간략하게 성매매나 성에 대한 담론이 군대 내의 획일화된 남성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수단이 됨을 밝혔고, 장필화·조형⁵³⁾이 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보인다. 김현영은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이라는 논문⁵⁴⁾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통해 만들어지는 집단적 남성성이 한국사회의 국민정체성을 대표한다⁵⁵⁾고 주장했다. 이 중 김현영의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한 동성간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연구로 보여진다. 김현영은 군대내에서 남성들이 동성간 성폭력을 “남자끼리 있어서 욕구를 풀데가 없어서” 사병들이 반 장난 또는 좀 불쾌한 장난을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를 군대의 남성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주제로만 다루어져 있어 실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는 부족하다.

50) 이동훈, 2001, 『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 노현진, 1996, 『군대에서의 일탈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52) 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 1997.

53) 장필화와 조형,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1991.

54) 김현영, 2002,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55) 김현영 위의논문, p.1

나.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 발생 형태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은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광범위한 발생형태를 보인다. 특히 전시(戰時)에 일어난 남성간 성폭력 사건들 - 1990년 무너져가는 소비에트연방군 내부에서 인종갈등이 악화되면서 남성군인간에 강간 집단적인 괴롭힘, 살인 등을 한 사건, 보스니아 전쟁에서 남성군인 3000-5000명이 성적인 공격을 당한 사건, 1990년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후퇴하는 정부관료나 저항군들 중 일부가 강간을 당한 사건 등은 강간 등의 성적 공격이 인종이나 민족 갈등, 또는 전쟁 시 남성 군인간의 보복형태의 하나로 기능해 왔음을 말해준다⁵⁶⁾.

그러나 이런 전시나 내부 갈등이 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1995 미국 국방성 인력관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35% (여: 70%)정도의 남성이 원하지 않는 성적 농담이나 이야기 휘파람, 시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성차별적인 행동이나 코멘트 등은 15%(여자 63%)정도의 남성이 경험했다. 성적인 만짐이나 애무, 키스나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데이트나 술이나 저녁을 마시자고 요구하는 것) 등의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8%(여자 41%)가 경험했다고 밝혔다. 전형적으로 직업상의 승진 혹은 보복 등을 놓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남자의 2%(여자 13%)가 경험했다고 했다. 강간이나 강간미수행위와 관련해서는 남자는 1%가 여자는 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동료나, 상급직에 있는 군대내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남자군인이 전체군인의 86%를 차지하고 대부분 상위직종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남녀의 숫자가 거의 같은 일반사회에서 남성에게 대한 성폭력의 경우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70% 가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남성이 겪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비율도 대다수 남성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남성간 성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74%의 여성과 68%의 남성 군인이 군대 안에서 성폭력을 경험했고 77%의 여성과 68%의 남성이 근무시간에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56) Michael Scarce, 위의 책, pp.1-2.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참을 수 없는 성욕 때문이라는 통념이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이다. 미국 군대의 경우 여성군인의 숫자가 전체군인의 14%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여성군인이 존재한다. 근무 외 외출 또는 외박이 자유로운 미국군대는 성욕이 억제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설명도 적절치 않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간 성폭력 가해자는 이성애자이다. 이런 환경에서 남성군인이 대략 여성군인의 1/6 비율로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 이성애자들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을 다루면서 인종간 민족간 갈등의 격화된 시기, 즉 특수상황에서의 보복적 도구로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도 발생하지만 미국의 1995년 조사결과는 남성간 성폭력이 특수상황이 아닌 부대 내에서 근무시간에 일상적이면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런 일상성과 광범위함은 성폭력이 일정하게 문화로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대문화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다. 군대내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특수성

1) 권력행사와 통제의 욕구의 발현으로서의 성폭력

군대내 남성간이나 이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해온 넬슨은 이런 빈번한 성폭력 발생은 성적욕구의 표현이 아니라 폭력적 기능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성욕을 풀기 위한 욕구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주려는 폭력적 지배욕구에서 나온 행위로 본 것이다⁵⁷⁾.

남성간의 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도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보인다. “교도소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군대의 남성간 강간은 남성의 우월함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안에서 내부 권력갈등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다⁵⁸⁾”고 한다. 남성간의 성폭력에서 권력과 통제의 욕구부분은 핵심적인 원인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57) 위의 책, p.67

58) 위의 책, p.47

동의하는 부분이다. 군대에서 이 상관관계가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군대가 명령체계에 따른 위계질서가 극대화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휘와 복종의 단순형태로 계급에 따른 명령질서가 주요한 조직논리인 공간에서 성폭력의 이런 내재적 요소는 더욱 완충막 없이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인 교도소를 보면 이 권력과 통제의 욕구와 성폭력의 밀접한 관련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Human Rights Watch가 인터뷰한 많은 수인들은 성폭력 발생⁵⁹⁾에 대해서 권력, 통제, 복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를 분석하면서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는 성적인 욕구를 채울 기회를 박탈당한 것보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결정한 권리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상실감이 성폭력 발생의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교도소의 수인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결정들, 무엇을 먹고, 입고, 언제 일어나고,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살 것인가의 문제를 스스로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런 심리적인 무력감은 힘이 있는 인간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장하고 싶은 강한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한다. 힘이 있는 인간, 뭔가를 통제하는 인간이 되고 싶은 욕구가 일부 남성에게는 성폭력으로 분출되는데, 강간 등의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당하는 이를 성적 대상화(여성화)함으로써 남성적 힘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행사와 통제의 욕구와 성폭력의 관계는 미국의 경우 규율이 강하고 억압적인 교도소에서 보다 많은 수의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이런 상태를 군대와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사병들은 2년 내지 3년의 긴 기간을 이제까지의 성장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들어와 새로운 위계질서에 편입되어 가장 말단에서 시작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군대조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직적 측면은 동질성을 갖는 대규모의 군 조직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동질성을

59) 미국 교도소의 성폭력 발생빈도는 아주 높게 나온다. 조사마다 수인들의 성폭행등에 대한 개념이해나 조사 조건의 의해 차이가 있지만 1989년 Tewksbury 가 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0%의 남성수인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했고(A Coxell and M. B. King, Behind locked doors: Sexual assault of men in custodial environments, pp80-86, 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 14%의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 2000년에 나온 조사는 21%의 남성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의 경험이 있고 7%의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왔다(Human Rights Watch 보고서).

유지하기 위해 조직상의 강력한 질서를 요구하며 이러한 질서유지는 엄격한 계급구조에 근거하는 수직적 관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신적 측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 조직원간의 강력한 결속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목적이념, 주의 등”을 절대 신뢰하고 “고도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요구한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군조직의 특수성은 군인, 특히 국민의 의무에 따른 징집을 통해 입대한 병사들이 입대 전에 살아왔던 사회와 달리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한다⁶⁰⁾는 것이다.

이 자율성의 제약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작된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부분 하나 하나가 완전히 통제 대상이 되는 공간이 군대이다. 자기 존재의 이유가 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만 가치 지워지고 훈육의 대상으로서, 주로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서만 위치 지워지는 조건은 교도소와 정도는 다르지만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일반사회에 비교해서 권력과 통제를 많은 면에서 박탈당한 상태이고 이를 보충하고 싶은 욕구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남을 지배하는 욕구의 수단으로써 군대에서도 성폭력은 동원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도소에서는 몸이 크고 완력이 센 사람이 그런 가해자적인 위치를 보통 차지할 수 있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서는 계급차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양 사회의 공통점은 반항이나 저항이 교도소는 내부의 무법지대적 속성 때문에 군대는 계급의 절대성 속에서 불가능하고 반항이나 저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즉 가해자의 행위결과에 대한 책임이 적은 편이다.

2) 남성성의 경쟁을 위한 성폭력

성폭력은 권력과 통제의 수단뿐만 아니라 앞에서 남성간 성폭력의 특성에서 짚었듯이 일탈하는 남성성에 대한 견제, 지배적 남성성에 대한 확인욕구도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동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1998년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남성은 더 이상 남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성’의 대상(object)으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공격당하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로 대체된 남성’이라는 육체이다”⁶¹⁾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피해남성의 여성화와 가장 남성

60) 위의 보고서 pp.28-29

스러운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군대와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군대는 남성에게 있어 '제2의 학교', 또는 '군대 갔다 와야 어른되지'라고 일컬어 지는 공간이다. 이는 소년이 성인남성으로 재 탄생하는 공간으로 규정되고, 성인이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남성성을 교육받고 체득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군인출신 연구자인 이동훈은 군대를 남성성이 경쟁하는 장으로 규정했다. "개인의 가치는 남성성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며 남성답지 못한 것은 군인답지 못한 것이고 무능한 인간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군인은 불안해하며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⁶²⁾ 는 것이다. 김현영은 군대의 남성성에 대하여 "군대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거나 불만을 가진 자들은 군대를 먼저 경험했던 남성에게 호된 질책을 받으면서 '남자도 아니다(여성이다)', '남성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모욕적인 의미에서 듣게 되는 것이다"⁶³⁾라고 주장한다. 군대에서는 남자답다는 것이 가치있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모욕당하거나 심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는 문화코드를 내면화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남성성의 성취정도는 계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신병은 '남성이전의 존재'로 취급되고 병장은 남자가 되기 위한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배적인 남성성을 획득한 존재이다" 라는 김현영의 분석은 군대에서 계급과 남성성과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동훈은 이 남성성이 위계질서를 확보하고 훈련의 한 방법으로 쓰인다고 분석했다. 남성성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장교가 부하를, 또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다루는 효율적인 방법의 수단으로 쓰이고, 그를 위해 남성성을 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⁶⁴⁾. 남성군인들은 군대에서의 과장된 남성성 이미지와 자신의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왜소한 남성성 사이에서 긴장하고 위축된다. 이런 심리적 긴장관계를 동반하는 남성성의 경쟁은 남성성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의 처벌을 통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다른 남성을 여성화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적 남성적 지위를 확보하기도 한다.

다른 남성의 여성화는 성폭력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성폭행은 성폭행

61) 형사정책연구원 p.37

62) 이동훈, 위의 논문, p.30

63) 김현영, 논문 개요 ii.

64) 위의 논문, p.31

을 당하는 이를 두 가지 의미에서 여성화시킨다. 사회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겪는 성적 대상으로 환원시키고, 폭력을 당하는 약자라는 의미를 더하면서 여성화시킨다. 결국 성폭행을 당하는 이는 남성성이 없거나 손상당한 존재가 된다 이 속에서 위계 질서를 확인되고 자신들의 공격적 남성성을 확인하는 집단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남성성의 확인과 위계질서의 문제는 비슷한 집단의 문화에서도 발견된다 남성만이 구성원이거나 남성이 주류인 집단의 성폭력을 다루면서 마이클 스카스는 군대, 교도소, 고등학교 등의 체육부, 여성배제적인 전통이 있는 대학의 남학생 사교클럽(college fraternities)에서 성폭력이 지배육구와 남성성의 경쟁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된다고 밝혔다. 이들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집단적인 놀림의 수단으로 발가벗기기 성기 만지기가 동원되기도 하고 신입식의 도구로서도 성폭력이 이용된다. 미국 고등학교 한 체육부에서 신입생선수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 다른 학교의 경우 레슬링 연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선배 레슬러들이 때리고 강간하고, 엉덩이에 밀대를 집어넣은 폭행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나체로 눈과 팔을 묶어 연습용 매트 위에 남겨두기도 했다. 다른 곳의 고등학교 축구팀에서는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도중 다른 동료들에게 끌려나와 수건걸이에 테이프로 성기가 붙여진 채 남녀학생이 보는 앞에서 전시되어 있기도 했다. 성폭행이 훈육과 위계질서의 확립의 수단으로 어떻게 남성들 사이에서 이용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나는 사례들이다. 이런 과정은 여성화된 피해자를 만들면서 이루어진다.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의 교도소의 피해자 남성은 “양성애자, 동성애자, 예쁜 소년, 게이, 작은 소녀, 여왕이라고 라벨이 붙게 된다. 삼입이나 구강섹스가 있고 나면, 마치 썩은 나무, 동성애자(queer), 겁쟁이라도 된 듯이 그런 라벨이 등에 붙은 자켓을 입고 있게 된다”⁶⁵⁾라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현재의 여성적 위치를 확인시키고 자신이 결별한 것이 무엇인지 취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숙지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스카스의 책에 인용된 글을 보면 “예로 미국 중서부의 큰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참가자들은 곧 상급생이 될 ‘형제들(brothers)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폭행을 당한다. 그런 성폭행 중에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언어폭행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사교클럽에 들어간 신입 참가자들은 1주일

65) Human Rights Watch, V. Rape Scenarios

정도의 기간도안 “작은 여자애”, “소녀들”, “여자같은 겁쟁이”라고 불린다. 그동안에는 이 신입생들은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과장되게 보여줄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연속되는 폭행 후에, 남성성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가 너희에게 한 것을 여자들에게 하라는 말을 듣는다⁶⁶⁾. 후임병이나 신입멤버의 여성화와 성폭력이 진정한 남자를 만들고 집단의 균질화된 남성성을 얻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폭력행위와 성폭력과의 상관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의 2002년 군대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군인의 60.32 %가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했고 65.69%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했다⁶⁷⁾. 이 결과는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집단적 폭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목표인 집단적 특수성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군대라는 공간이 구성원간의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대인폭력과 성폭력과의 연구결과는 군대의 성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성폭력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구타경험과 성폭력이 유의미한 관련을 맺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구타경험도 성폭력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즉 타인에 대한 구타경험이 있는 남성일 수록 강간, 심한 성폭력, 가벼운 성폭력 경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에 대한 구타경험이 있는 남성의 절반 정도가 가벼운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⁶⁸⁾고 발표했다. 물론 여기에서 성폭력은 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말한다. 그러나 폭력과 성폭력의 깊은 연관성은 두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폭력이 결국 타인에 대한 통제나 지배욕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계질서가 강하고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빈번한 군대는 또한 성폭력도 배양할 수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교도소의 비교에서 억압적인 교도소일수록 더 많은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한다

66) Michael Scarce, p.54

67) 위의 보고서, pp.89-92

68)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위의 보고서, pp.207-208.

4) 남성간 성폭력과 동성애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성은 동성애에 대한 군대의 방침과 성폭력이 혼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 있다. 한국⁶⁹⁾은 동성애자의 군대 입대를 금하고 있고 동성애자의 군대 내에서의 성행위는 성추행의 일종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즉 일반사회보다 제도적, 집단 문화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불인정과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동성애 혐오증이 깊게 자리 잡힌 공간이 군대이다. 이런 군대의 특수성은 앞에서 언급한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성에서 동성애와 연결된 부분의 특성을 더 강화시킨다.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T.S. Nelson이 설명했듯이 동성애자로 낙인찍히거나 남성성을 손상당하고 여성화된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현영은 이에 대해 “이런 행위의 기저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앞에서 동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남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아직 남성이 아닌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동성간 성폭력은 남성 대 남성간의 성행위가 아니라 남성 대 비남성간의 폭력으로 읽혀진다⁷⁰⁾. 군대라는 공간에서 남성적 정체성을 잃고 동성애자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반 사회에서 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남성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나 동성애혐오증뿐만 아니라 공간이동의 자유가 없고 수년 정도의 기간을 동거의 형식으로 비슷한 구성원과 계급원리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대내 성폭력피해자 중에서 동성애자의 비율은 확실치 않지만 이들 피해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극복해야 할 사소한 장난 정도로 여기고 싶은 심리적 기제는 분명해 보인다⁷¹⁾

69)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도입한 정책인 Don's Ask Don't Tell을 유지하고 있다. 공론에 부치지 말라는 이 정책은 동성애 군인에 대한 차별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70) 위의 논문, p.99

71) 미국 교도소의 성폭력 발생빈도는 아주 높게 나온다. 조사마다 수인들의 성폭행등에 대한 개념이해에 의한 차이든 조사 조건에 의한 차이든 차이가 있지만 1989년 Tewksbury 가 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0%의 남성수인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했고(A Coxell and M. B. King, Behind locked doors: Sexual assault of men in custodial environments, pp80-86, 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 14%의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 2000년에 나온 조사는 21%의 남성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의 경험이 있고, 7%의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왔다(Human Rights Watch 보고서).

Ⅲ.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 조사는 총 671명의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실태의 빈도 및 발생장소와 상황 등을 묻고, 강제적 성적 접촉의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건 당시 계급과 발생당시의 주변의 태도,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피해 정도와 후유증을 조사하였다. 또한 군대내 성폭력의 공개적 반공개적 특성을 고려하여 듣거나 본 경우도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첫째,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의 실태와 인식 태도를 조사하여 군대 내에서 어느 정도 언어적 성희롱이 일상화되어있는지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실태조사와 군대내 성문화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 및 가해의 발생빈도와 발생상황 및 장소 등 일반적 실태를 조사하여 어떤 상황에서 성폭력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집단별 특성 및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및 가해 유형, 행동 등을 분석하여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발생구조와 원인을 진단하였다. 이 장을 통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 실제 실태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폭력 발생 이후의 과정을 조사하여 신고 및 처리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성폭력 발생 직후의 증상 및 후유증, 성폭력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변화와 대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

가.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 실태

문화는 특정한 사회집단이 가치와 규범, 신념과 태도, 그 집단이 공유하는 역사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군대내 언어적 성문화에 대한 조사는 군대라는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성에 대한 가치와 규범, 신념과 태도를 역추적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군대라는 위계질서에 기반해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계급이 높은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언어문화가 강요되고 있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온다면 군대 성문화 자체가 폭력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 하에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에서 성적 언동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적 농담과 욕설 등이 강요 혹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경험 공개, 신체에 대한 비하나 놀림, 성적 욕설 등 성적인 대화나 농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32.7%가 강요에 의해서 성적인 경험을 말하게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같이 위계질서가 결합된 형태의 강요된 성경험 말하기 신체 비하 및 욕설 등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이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⁷²⁾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⁷³⁾, 아동복지법⁷⁴⁾에서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⁷⁵⁾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기준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과 아동에 대한 성희롱이 법률의 적용대상이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법률적인 처벌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사적인 처벌대상은 아니다.⁷⁶⁾

군대에서의 성희롱 역시 균형법상 추행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국방부의 성군기 위반사고방지 지침도 성군기 위반사고의 정의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 '성을 암시하는 언어를 성관련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군대에서 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나 성적인 농담이 모두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야기의 내용, 하게 된 경위, 강제여부 등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에서 후임병들에게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신체비하나 놀림 등이 성희롱적

72) 제2조 제2항(정의), 제13조(성희롱 예방교육), 14조(발생시 조치), 23조(상담지원), 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73) 제2조 2호(정의),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제28조(시정조치)

74) 제29조 2호(금지행위), 제40조(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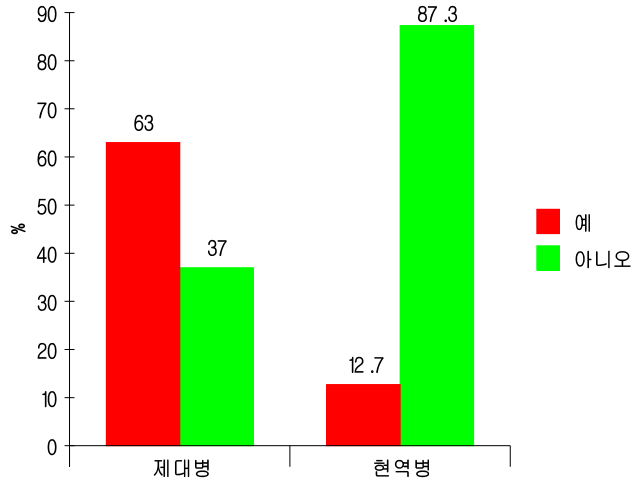
75) 제17조(고용평등)

76)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제29조 2호에서 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0조 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소가 많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성희롱적 언어문화 실태

‘군대 내에서 성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유효응답 667명 중 32.7%가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제대병과 현역병을 비교해보았을 때 제대병은 63.0%(167명), 현역병은 12.7%(51명)가 응답하여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역병이 제대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요받은 비율이 적게 나타났는데, 현역병 중에서도 휴가 중인 병사는 20.7%가 긍정적인 반면 부대에 직접 가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9.6%에 그쳐, 현역이면서 부대에 있는 경우 설문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 군대 내에서 강제적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N=667)
 $\chi^2=183.903$, $df= 1$, $p= .000$

<사례 1-6>에 의하면 새로운 병사들이 들어올 때 마치 자기소개 하듯이 성경험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사례 1-6>은 신입병이나 전입병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여자친구하고 몇 번 자봤으며(성관계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관계를) 했는지를 묻는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험 말하기는 주로 선임병에 의해 주도되어 성희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사례 2-1, 2-2, 2-3>은 모두 군대 내에서 성경험 말하기는 선임병에 의해 주도된다고 답했다

“이등병 때도 딱 갔을 때 여자친구 있냐 물어봐요. (중략)... 그 부분은 저희 때는 안 갔다고 하면 막 놀렸어요. 왜 그러냐면 **병신이라고. 남자 구실도 못 한다고.** 예를 들어 여자친구 있으면 왜 그런 거 안 하고 왔냐 꼬치꼬치 캐묻고. 또 어쩔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런 사소한 거까지 말해 달라고 하고. 저녁에 잘 때 야한 얘기 하고 자잖아요.” <사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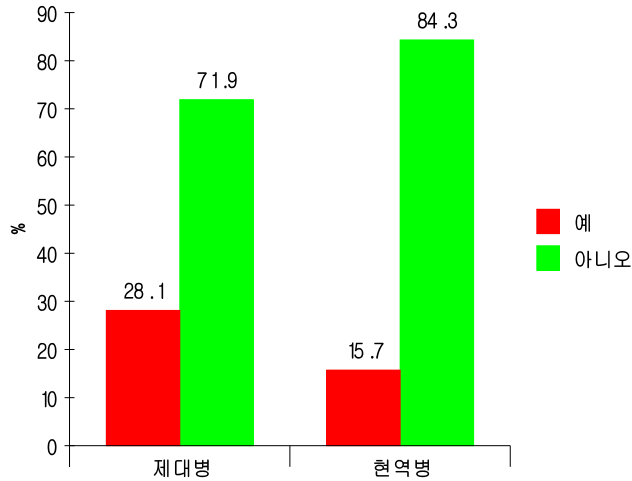
<사례 2-3>의 경우 성경험이 없다고 하면 '남자구실도 못하는 병신'이라고 취급되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할 것을 강요받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성경험을 말하는 것은 선임병에 의해 주도되며 이에 저항할 경우 남자답지 않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등 강요와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같은 성희롱적 언어문화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성경험 공개 강요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성희롱을 말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병사는 총 218명으로 전체의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병과 현역병의 응답을 비교한 [그림 2]를 보면 제대병은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당했던 167명 중 47명(28.1%)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였으며, 현역병은 51명 중 8명(15.7%)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설문조사과정에서 '강요'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도 32.7%가 강요당했다는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성문화의 일환으로 알려진 성경험 공개가 상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불쾌한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이 중 28.1%가 성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노출된다고 답해 성경험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행동의 1/4 이상이 위계질서와 권력에 의한 성희롱으로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N=218) (성경험 말하기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 중)

<사례 2-2>는 휴가에서 돌아오면 선임병들이 집중적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지를 물어보는 군대내 문화가 있으며, 말하지 않으면 새벽 1시까지 계속 물어보는 등의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자대 들어가면, 처음에 딱 물어보는 게, “여자랑 잤냐”, “여자친구 있냐?”, 그리고 “어디서 하나?” 이런 것들밖에 안 물어봐요. 만약에 이등병이 백일 휴가 가잖아요 근데 그 애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물어봐요. “너 여자친구랑 잤냐?” 안 자고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거의 안자고 오는데, 막 시켜요. “이번엔 꼭 성공하고 와라, 그래야 여자가 안 도망간다.”(라고)...휴가 복귀하고 들어가면 물어봐요. 성공했냐고, **고참들이 새벽 한시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중략)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계속 (말)하게 하고, **딴 사람한테 소문까지 다 내고,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는데...뒤에서 막 수군수군 거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고참하고 관계가 더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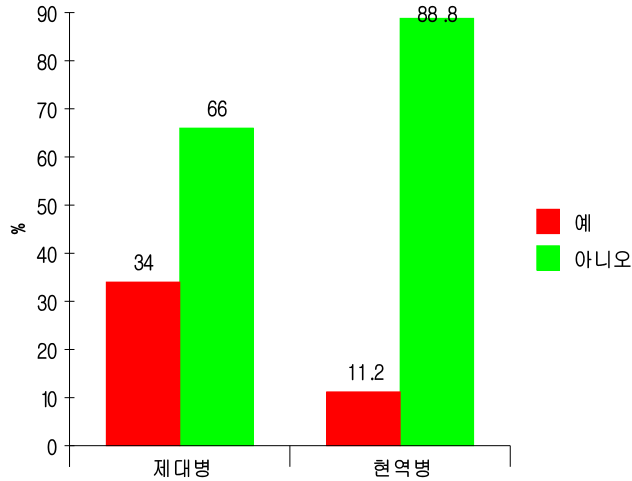
나.) 물론 더 있죠. 얘기를 많이 할수록 많이...(“별 일 없었습니다” 그러는게 낫지 않을까요?) ...고참을 즐겁게 해야되니까, 예전에 사귀던 여자하고 그런 (성경험) 얘기를 하면 고참들이 달라져요 좀, 잘해주고..“ <사례 2-2>

<사례 2-2>는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을 때 다른 병사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만 고참을 즐겁게 해주고 고참이 잘해주기 때문에” 성경험을 말하게 된다고 한다. <사례 2-2>의 말처럼 후임병과 고참 사이에는 성경험 공개에 따른 보상기제가 숨어 있다. 성경험을 공개할 경우 선임병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군대생활을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이같은 보상기제는 <사례 2-2>가 이같은 불쾌함을 피해로까지 인식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사례 2-2>의 여자친구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성경험이 공개되고 다른 군인들에 의해 성적 대상화된 시선을 받게 되는 등의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경험 공개 강요는 군대 내에서 병사들간의 불쾌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성희롱적 문화를 유지하는데 일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신체비하 및 놀림

성경험 공개 강요가 주로 이성애적 성관계를 묘사하면서 사병들의 포르노적 상상력을 충족시키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성희롱적 문화라면 사병들간의 신체비하나 놀림은 후임병에게 선임병의 신체적 우월성, 다시 말해 남성적 우위를 확인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군대 내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비하를 당하거나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림 3]을 보면 20.2%가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다. 제대병은 34.0%, 현역병은 11.2%가 긍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51.287$, $p=.000$) 계급별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신체비하나 놀림은 성경험 말하게 하기와 마찬가지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할 수 있는 것이며, 후임병이 선임병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농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계성이 결합된 언어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신체비하나 놀림을 당한 경우(N=667)

<사례 1-6>는 뚱뚱한 후임병에 대한 신체 비하 혹은 놀림이 기합 등으로 이어져 그 후임병이 한달 만에 30kg 이상 줄어들어서 신체적으로 급격히 허약해지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한다. 이처럼 신체비하 혹은 놀림은 군대내 인권문제인 가혹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뚱뚱한 병사가 오면은 중대장이나 고참이 잡고 “너 일루와, 내가 너 백일 위로휴가 나가기 전까지, 아니면은 일병이나 상병 달 때까지 내가 너 몇킬로 까지 만들겠다” 그러면은 싫든 좋든 데리고 가서 연병장에서 몇 십바퀴를 도는 겁니다.” <사례 1-6>

신체 비하나 놀림을 당하는 것은 주로 후임병이며 선임병은 후임병들에게 “귀엽다” “(성기가)얼마나 컸나 보자”는 등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같은 신체비하·놀림은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할 수 없는 발언이며, 일반적으로 표준적 남성 신체를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놀림을 당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라고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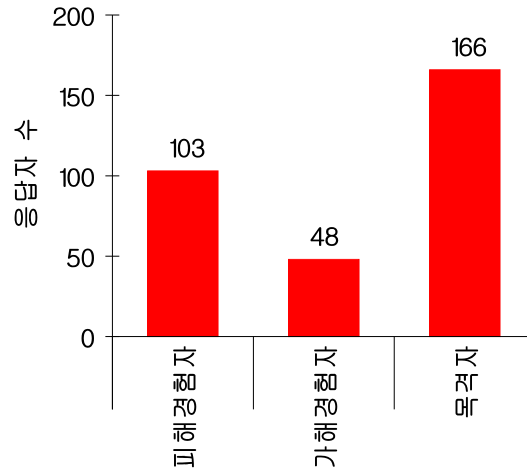
남성간 성폭력 피해를 위한 상담지침을 개발한 존 프레블과 니콜라스 그로쓰⁷⁷⁾는 남성들은 남성간 성행동이 폭력적이라는 점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로는 인지하지 않고 피해자 역시 스스로를 남성들간의 성문화에서의 공모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대 내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나 성적 농담 신체 비하나 놀림 등은 별다른 죄책감이나 긴장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대 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은 신체적 성폭력보다 가해사실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로서도 자신을 피해자화 하지 못하거나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신체적 피해 및 가해 실태

1) 피해 및 가해 실태 개요

본 조사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유효 응답 수는 671명으로, 피해와 가해, 목격빈도를 조사한 결과 직접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03명으로 전체의 15.4%, 직접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전체의 7.2%, 듣거나 본 경우는 166명으로 전체의 24.7%가 성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77) John Preble & Nico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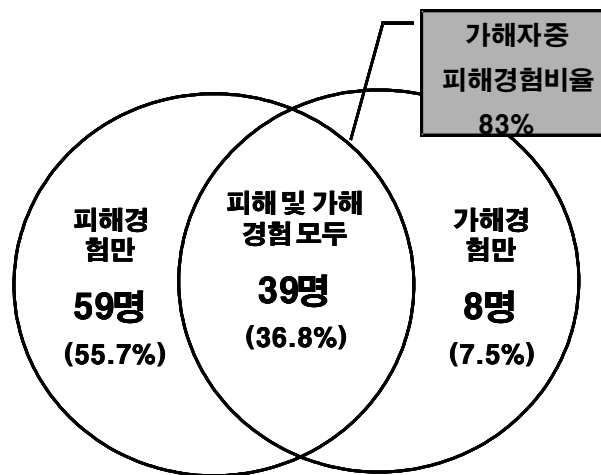
[그림 4] 피해 및 가해, 목격 현황

목격자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와 가해를 경험한 병사는 총 10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5.8%가 성폭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병사의 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해 경험만 있는 병사는 59명으로 전체의 55.7%였으며,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병사는 39명으로 36.8%였다. 가해경험만 있는 병사는 8명으로 7.5%에 그쳤다.

<표 7> 피해 및 가해 응답 빈도 및 백분율 [N=106]

	응답빈도	피해 및 가해 경험자 중 비율	전체 응답자 중 비율
피해 경험만 있는 사람	59	55.7	8.8
가해 경험만 있는 사람	8	7.5	1.2
피해와 가해 모두 경험한 사람	39	36.8	5.8
총계	106	100.0	15.8

전체 가해건수 중 피해를 입은 병사가 다시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가해자의 8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가해자가 이전에 피해경험이 있었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피해 및 가해 중복정도 N=106

<표 8> 제대병과 현역병의 피해 및 가해 응답 빈도 및 백분율
(N=106)

	제대병	현역병	총계
피해경험만 있는 사람	44 (57.9)	15 (50.0)	59 (55.7)
가해경험만 있는 사람	5 (6.6)	3 (10.0)	8 (7.5)
피해와 가해 모두 경험한 사람	27 (35.5)	12 (40.0)	39 (36.8)
총계	76 (100.0)	30 (100.0)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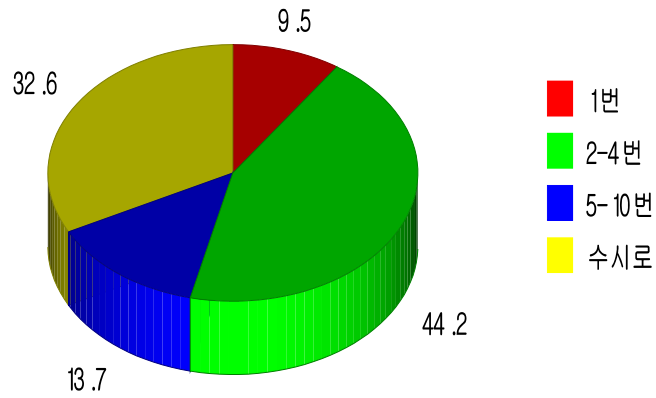
피해와 가해 경험에 대한 제대병과 현역병 비율을 살펴본 결과가 <표 8>이다. 이 표에 따르면 제대병이 44명(57.9%)으로 현역병에 비해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경험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와 피해 모두 제대병의 비율이 현역병사에 비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역병이 군부대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선임병이나 지휘관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설문에 응하거나 거리에서 응답을 한 반면, 제대병의 경우 수업시간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응답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대병이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복무기간을 모두 완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군복무 후에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긴 것 역시 이같은 차이를 보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 실태

가) 피해 발생률 및 빈도

전체 피해 발생율은 총 유효 응답 수 671명 중 103명으로 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경험만 있는 사람은 59명, 피해와 가해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은 39명이었다. [그림 6]에서 성폭력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피해자 103명 중에서 1건 이하인 경우가 9건(8.7%)이었으며 2회~4회가 42건(40.8%), 5~6회가 13건(12.6%), 수시로 당했다는 응답이 31건(30.1%)으로 전체 응답자 중 83.5%가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분율 (%)



[그림 6] [피해자]의 피해 발생 빈도 (N=103)

나) 발생장소 및 상황

발생장소는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표기하게 하였다. 총 응답수는 151건이었으며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 지목된 곳은 내무반에서가 88건(58.3%)으로 가장 높았다. 2 순위는 화장실 이 13건(8.6%), 샤워실이 15건(9.9%)로 나왔다.

<표 9> [피해자]의 피해 발생 장소 (N=96)

	빈도(건수)	백분율(%)	응답건별(%)
내무반	88	58.3	91.7
화장실	13	8.6	13.5
샤워실	15	9.9	15.6
행정사무실	7	4.6	7.3
초소	7	4.6	7.3
야외 훈련장	8	5.3	8.3
연병장	8	5.3	8.3
기타	5	3.3	5.2
총계	151	100	157.3

<표 10> [목격자] 발생 장소 (N=161)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별(%)
내무반	126	46.7	78.3
화장실	35	13.0	21.7
샤워실	31	11.5	19.3
행정사무실	12	4.4	7.5
초소	42	15.6	26.1
야외 훈련장	7	2.6	4.3
연병장	2	0.7	1.2
산속	6	2.2	3.7
부대밖 숙박시설	2	0.7	1.2
기타*	7	2.6	4.3
총계	270	100	167.7

* 기타 : 이발소, 취사장, 옥외건조장, 소각장 등

<표 9>에 나타난 발생장소의 특징으로는 샤워실 내무반 등 半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도가 높으며, 행정사무실/초소/야외훈련장/연병장 등 업무수행장소에서도 21.4%의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의 응답에서도 역시 내무반이 4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화장실이 13%, 샤워실이 11.5%가 응답했다. 목격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피해자 응답에 비해 높았던 장소는 초소인데 초소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42건으로 15.6%가 응답했다.

<표 11> [피해자] (N=94) [목격자] (N=157)

발생상황	피해자		목격자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처벌이나 기합을 줄 때	2	1.7	18	7.9
취침할 때	35	30.2	114	49.8
샤워할 때	14	12.1	33	14.4
휴식이나 게임시	58	50.0	46	20.1
운동할 때 근무 중 *	3	2.6	11	4.8
기타	4	3.4	7	3.0
총계	116	100.0	229	100.0

* 운동할 때 : 피해자, 근무 중: 목격자

<표 11>는 발생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 응답을 비교한 표이다. 발생상황에 대한 피해자 응답을 살펴보면 주로 취침할 때 35건(30.2%)과 휴식이나 게임시 58건(50%)의 강제적 성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 응답에서는 휴식이나 게임시에 강제적 성적 접촉이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드러난 반면, 듣거나 본 경우의 응답에서는 휴식이나 게임시의 비율이 20.1%에 그치고 취침할 때의 비율이 49.2%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벌이나 기합을 줄 때 성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은 피해자 응답에서는 1.7%였으나 듣거나 본 경우에는 7.9%로 응답률이 높아졌다. 성폭력을 듣거나 본 경우에는 휴식이나 게임시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목격자들이 휴식이나 게임 시에 일어나는 강제적 성적 접촉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건수별로 보면 발생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휴식이나 게임 시에 발생한다고 한 경우는 61.9%에 달하는 반면 목격자는 29.3%에 그쳤고, 취침할 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37.2%였던 반면 취침시 성폭력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72.6%에 달했다. 또한 처벌이나 기합을 줄 때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답한 피해자가 2건(1.7%)에 그쳤던 것에 비해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18건(7.9%)이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와 목격자의 응답의 결과가 차이를 보인 것은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강제적 성적 접촉을 장난의 일종으로 생각하려고 하며 처벌이나 기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주변인들은 강제적 성적 접촉이 일어난 장소로 주로 취침시 내무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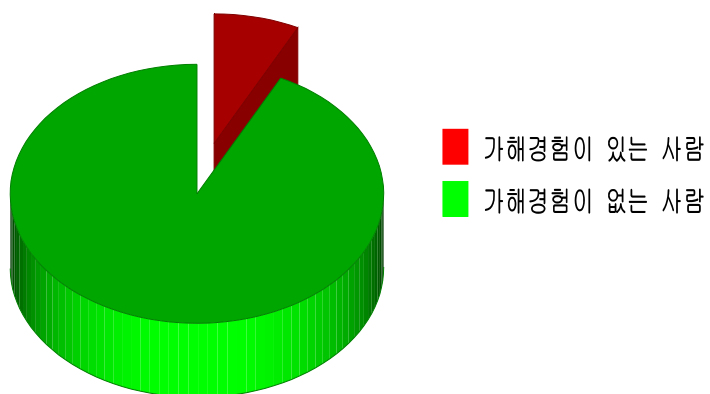
지목하고 있고 처벌이나 기합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차이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처벌이나 기합을 받는게 아니며, 자신이 입은 피해는 장난의 일종으로 사소화(trivialization)하려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피해의 사소화와 부인(denial)은 군대내 위계질서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후임병들이 선임병들의 성폭력을 남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으로 인식하면서 가해자의 정당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3) 가해 실태

가) 가해 발생률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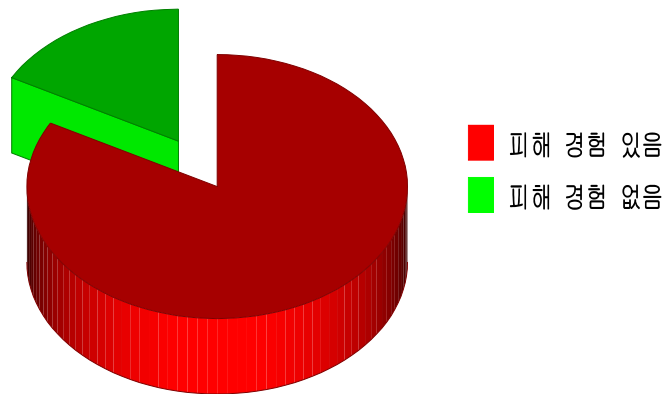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병사는 전체 응답자의 7.2%(48명)이었다. [그림 7]. 또한 가해자 중에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해자의 81.7%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8]. 면접에 참여한 가해자 8명중에서도 4명이 피해경험이 있었고 면접에 참여한 피해자 3명 중에 2명 역시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 중 피해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중 피해자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이 다른 성폭력과 달리 가해와 피해가 악순환되어 경험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가해자 비율 (%)



[그림 7] 전체 응답자 중 가해자 비율 (N=649)

가해자 중 피해자 비율 (%)



[그림 8] 가해자 중에서 피해자 비율 (N=47)

현역병과 제대병을 구분해 볼 때 현역병 중 가해 비율은 4.1%(16명), 제대병 중 가해자 비율은 12.4%(32명)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피해자에서 보여진 제대병 현역병 비교표와 마찬가지로 현역병의 설문 응답시 환경과 현재 군복무 중이라는 사실이 응답에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제대병이 현역병에 비해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인식의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⁷⁸⁾. 특히 2003년 7월 성폭력 피해로 인해 한 사병이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와 육군 본부를 비롯한 각 사단별 군 지휘계통에서 성 군기 문란사고 발생에 대해 군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이 가해를 했다고 응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78) 성의식 실태조사(p)를 보면 성평등의식에서 제대병이 현역병보다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설문조사과정에서 서울역에서 휴가병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같이 있던 병장이 자신을 곧 나갈 거니까 관계없지만 후임병은 앞으로 군생활을 계속 할 건데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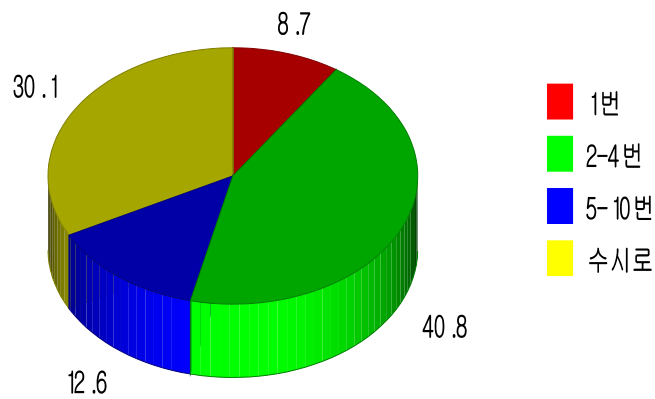
<표 12> 제대병과 현역병의 가해자 비율 (N=649, 명(%))

	제대병과 현역병		합
	제대병	현역병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	32(12.4)	16(4.1)	48(7.4)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	226(87.6)	375(95.9)	601(92.6)
총계	258(100)	391(100)	649(100)

$\chi^2=15.676$, $df=1$, $p=.000$ * 괄호안 숫자는 %

[그림 9]를 보면 가해자의 성폭력 반복성 정도를 알 수 있다. '1회'에 멈추는 경우는 16.3%, '2~4회'가 25.6%, '5~10회'의 반복성을 갖는 경우가 11.6%로 나타났고, '수시로' 행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해의 반복성은 매우 높았다. 성폭력 유형과 발생빈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특히 '키스', '성기 만지기는 한 번으로 멈추는 경우가 없고 '포옹'과 '신체 만지기'의 절반 이상이 5회 이상의 반복성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회 이상 강제적 성적접촉을 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7%에 이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적 성적 접촉은 부대 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 (%)



[그림 9] [가해자]의 가해횟수 (N=43)

나) 발생 장소 및 상황

가해 장소는 내무반이 54.4%, 샤워실이 8.8%로 부대 안 공동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63.2%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사무실(8.8%)과 연병장(4.4%), 초소(2.9%), 야외훈련장(2.9%)등은 각각의 비율은 낮지만 근무수행 장소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산속(2.9%)이나 부대 밖 숙박시설(2.9%)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해 장소는 내무반 등 공개적인 장소(63.2%)에 비해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해자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성폭력 발생 상황은 피해자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장소 (N=44)

가해 장소	빈도(건)	백분률(%)	응답건수별 백분율(%)
내무반	37	54.4	84.1
화장실	6	8.8	13.6
사위실	6	8.8	13.6
행정사무실	6	8.8	13.6
초소	2	2.9	4.5
야외훈련장	1	1.5	2.3
연병장	3	4.4	6.8
산속	2	2.9	4.5
부대밖 숙박시설	2	2.9	4.5
기타	3	4.4	6.8
총계	68	100	154.5

<표 14>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상황 (N=42)

강제적 성적 접촉을 한 상황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별 백분율(%)
처벌이나 기합을 줄 때	2	3.8	4.8
취침할 때	9	17.3	21.4
샤워할 때	6	11.5	14.3
휴식이나 게임시	24	46.2	57.1
운동할 때	4	7.7	9.5
기타	7	13.1	16.7
총계	52	100	123.8

가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휴식이나 게임시'가 46.2%로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취침할 때'가 17.3%로 나타나는데 피해자가 '취침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30.2%로 나타나고 목격자가 49.2%라고 응답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집단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접촉이 일어난 장소는 내무반을 지목한 가해자 중 23명(65.7%)이 '휴식이나 게임시'로 답했고 9명(25.7%)은 '취침할 때'라고 답하고 있다. 피해자는 내무반에서 휴식이나 게임이라고 답한 사람이 51명(60.7%), 취침

할 때라도 답한 사람이 34명(40.5%)으로 역시 가해자에 비해 휴식시간보다는 취침할 때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격자의 경우 취침할 때의 비율은 더욱 증가한다. 가해자 면접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총 10건 중 휴가 중에 일어난 <사례 1-5>의 사건을 제외하면 전체 8사례 중에서 5건이 내무반에서 일어났고 5건 모두 가해 상황은 취침시 라고 말했다. 나머지 3건 중에서 두 건이 샤워실과 부대 안 공개적인 장소인 것을 고려할 때 가해자 모두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폭력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유형 및 특징

가. 피해 및 가해 유형

1) 피해 유형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피해 유형을 물어본 결과 총 피해건수는 170건으로 나타났으며 포옹 70건(41.2%), 가슴 및 엉덩이 만지기 57건(33.5%), 성기만지기 22건(12.9%), 키스가 16건(9.4%),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이 2건(1.2%), 자위행위 강요 1건(0.6%),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가 2건(1.2%) 순으로 응답하였다. 목격자의 경우 총 373건의 피해 유형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기만지기가 84건(22.5%)으로 피해자 응답의 2배에 달했으며, 성기삽입시도 또는 성기삽입은 총 19건(5.1%)으로 피해자 응답의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기타 피해 사례 목격으로는 견봉으로 항문삽입, 옆에서 끌어안고 자기, 볼에 뽀뽀 등의 응답이 나왔다.

<표 15> [피해자 (N=103) [목격자 (N=161)

	피해자		목격자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키스	16	9.4	29	7.8
포옹	70	41.2	77	20.6
가슴,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	57	33.5	93	24.9
성기만지기	22	12.9	84	22.5
성기 삽입 시도 또는 성기 삽입	2	1.2	19	5.1
자위행위 강요	1	0.6	24	6.4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2	1.2	44	11.8
총계	170	100.0	373	100.0

* 목격자 기타응답 3건(0.9%) 표에서 제외

주목할 점은 강제적 성적 접촉을 듣거나 본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답변에 비해 보다 강도 높은 답변이 나왔다는 점이다. 목격자 응답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성폭력 피해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심층면접과정에서도 직접 피해자, 직접 가해자 등은 성적 추행과 키스/포옹/성기만지기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을 잘 하는 반면 항문 삽입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응답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100회 이상의 성추행과 자위행위 강요, 성기만지기, 신체접촉 및 애무 등으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는 <사례 1-3>의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볼에 뽀뽀나 공개적 성적 농담을 한 것 이외에는 가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응답의 차이와 피해자, 가해자 심층 인터뷰를 살펴볼 때 남성들간의 일상적 성문화로 인지될 수 있는 키스, 포옹, 성적 농담 등에 대해서 말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응답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며, 보다 강도 높은 성폭력에 대해서는 응답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표 16> [피해자] 강제적 성적 접촉 피해 유형
: 제대병과 현역병 교차분석결과표 (N=103)

	제대병	현역병	총계
키스	12 (9.3)	4 (9.8)	16 (9.4)
포옹	51 (39.5)	19 (46.3)	70 (41.2)
가슴,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	43 (33.3)	14 (34.1)	57 (33.5)
성기만지기	19 (14.7)	3 (7.3)	22 (12.9)
성기 삽입 시도 또는 성기 삽입	2 (1.6)	0 (0.0)	2 (1.2)
자위행위 강요	1 (0.8)	0 (0.0)	1 (0.6)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1 (0.8)	1 (2.4)	2 (1.2)
총계	129 (75.9)	41 (24.1)	170 (100.0)

* 괄호안 숫자는 %

제대병과 현역병의 비교에서는 제대병이 75%로 현역병에 비해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병과 현역병을 교차분석한 결과에서 제대병이 현역병에 비해 신체만지기, 성기만지기, 성기삽입시도 등 비교적 강도높은 성적 추행 사례들이 보고된다. 특히 성기삽입시도, 자위행위 강요 등의 유형은 현역병에서는 1건도 응답하지 않았다.

[표 17]은 어떤 계급에서 피해에 대한 응답을 보다 편안하게 하느냐를 측정해보기 위해 응답 당시의 계급과 피해유형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 따르면 이등병이 7.3%, 일등병이 53.7%, 상병이 14.6%, 병장이 24.4%로 나타났다.

<표 17> [피해자] 강제적 성적 접촉 피해 유형 계급별
교차분석결과표 (N=29, 현역병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총계
키스	0(0.0)	2(9.1)	2(33.3)	0(0.0)	4(9.8)
포옹	3(100.0)	11(50.0)	1(16.7)	4(40.0)	19(46.3)
가슴,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	0(0.0)	7(31.8)	3(50.0)	4(40.4)	14(34.1)
성기만지기	0(0.0)	1(4.5)	0(0.0)	2(20.0)	3(7.3)
성기 삽입 시도 또는 성기 삽입	0(0.0)	1(4.5)	0(0.0)	0(0.0)	1(2.4)
자위행위 강요	0(0.0)	0(0.0)	0(0.0)	0(0.0)	0(0.0)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0(0.0)	0(0.0)	0(0.0)	0(0.0)	0(0.0)
총계	3(7.3)	22(53.7)	6(14.6)	10(24.4)	41(100.0)

* 괄호안 숫자는 %

2) 가해 유형

가해자의 가해유형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포옹'으로 48.1%를 차지했고 '가슴·엉덩이 등 신체 만지기'가 31.2%, '성기 만지기가 11.7%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위행위 강요'가 2.6%, '성기 삽입 시도 또는 성기 삽입에 답한 경우가 1.3%였다. '성기 등 신체 애무 강요'를 한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보고되지 않고 면접 조사과정에서만 밝혀졌다.

<표 18> [가해자] 성폭력 유형 (N=48)

가해유형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별 백분율(%)
키스	4	5.2	8.3
포옹	37	48.1	77.1
가슴,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	24	31.2	50.0
성기만지기	9	11.7	18.8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	1	1.3	2.1
자위행위 강요	2	2.6	4.2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0	0	0
총계	77	100	160.4

<표 19> [가해자] 복수 응답한 성폭력 유형 (N=48)

	키스	포옹	가슴·엉덩이 등신체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	자위행위 강요	성기 등 신체애무강요
키스	100%	100%	75%	100%	0	0	0
포옹	10.8%	100%	40.5%	18.9%	0	0	0
가슴·엉덩이 등신체만지기	12.5%	62.5%	100%	25%	0	0	0
성기 만지기	44.4%	77.8%	66.7%	100%	11.1%	11.1%	0
성기삽입시도 또는성기삽입	0	0	0	100%	100%	100%	0
자위행위강요	0	0	0	50.0%	50.0%	100%	0
성기등 신체 애무강요	0	0	0	0	0	0	0
	4	37	24	9	1	2	0

<표 19>은 어떠한 가해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9>에서 나타나듯이 '키스'와 '포옹', '가슴·엉덩이 등 신체 만지기', '성기 만지기 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가해지기도 하지만 보통 두세 가지의 성폭력과 함께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키스'와 '포옹', '신체 만지기'는 대부분 함께 가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성기만지기를 기준으로 성폭력의 강도가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성기 만지기를 하는 가해자는 또한 '성기삽입 및 '자위행위 강요'에도 응답해서 '성기만지기가 삽입이나 자위행위 강요 등의 가해와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기삽입 시도 및 성기삽입과 '자위행위 강요'가 '성기 만지기를 동반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기 만지기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시사한다

“주로 이제 내무실에서 자지 않습니까? 자면은 제 옆에 눕고... 휴가를 갔다가 오면 보통 애인을 만나서 어떻게 놀았는가... 그렇게 ... 손으로 만지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참 앞에선 어쩔 수 없이... 속옷을 안입고....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까..." <사례 1-1>

“(그럼 그때 당시 추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8월 달이었는데, 취침하기 전에 저하고 후임 병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후임병 성기를 툭툭 치면서 ‘내가 이런다고 받기 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병장님이 여자도 아니고 남잔데 그런다고 커지겠습니까’ 그러고 계속 3분 가량 손을 대고 다른 하나는, ○일병이 TV보고 있었는데, 저도 TV 보려고 침상 위에 인제 깎지끼고 누웠는데 후임병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었는데 제가 그 위에 누워 가지고 손등이 성기부분에 닿아가지고 그렇게 두 개 성추행.” <사례 1-4>

또한 <사례 1-1>과 <사례 1-4>의 사례는 공개적 성경험 강요, 성기만지기 등 강제적 성적 접촉 행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례 1-5>의 경우 “이병(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20분간 만진 후 1회 2분씩, 3회 6분에 걸쳐 상하로 빼는” 행위를 16회에 걸쳐했으며 1회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반복적 지속적 복합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2003년 속보자료의 가해유형 (N=20)

가해유형	빈도(건)
성기만지기	14
성기애무 강요	11
자위행위 강요	5
성기 삽입 시도	1
성기 삽입	1
키스	4
기타 강제추행	7
항문에 기타 이물질 삽입	1
총계	44

또한 2003년 군대 내 속보자료에 따른 성폭력 사례를 가해 내용별로 살펴보면 성기만지기는 70%인 것으로 나타나 총 20건의 사건 중에서 70%는 성기만지기를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가해 유형으로 드러난 것은 성기애무 강요 55%, 기타 강제추행 34%, 자위 행위 강요 25%, 키스 20%, 성기삽입시도 5% 성기삽입 5%, 기타이물질 삽입 5% 등이다. 또한 군교도소에 방문한 가해자 8명의 사례 모두 1회 이상의 반복적인 성폭력이었으며 그 중 특히 <사례 1-1>는 116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징

1) 친밀감으로 사소화되는 성폭력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피해의 사소화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드러낼 때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시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신고나 탈출과 같은 행동보다는 피해 자체를 사소화하거나 부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표 21> [피해자] 가해자가 강제적 성적접촉을 하는 주요이유 (N=93)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별 백분율(%)
애정의 표현으로	31	29.0	33.3
괴롭히려고	9	8.4	9.7
마음대로 다루려고	5	4.7	5.4
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3	2.8	3.2
장난삼아	58	54.2	62.4
군기를 잡으려고	1	0.9	1.1
총계	107	100.0	115.1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사소화하고 상대화하려는 경향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표 21>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폭력을 가하는 이유를 '장난삼아'라고 응답한 것이 58명(54.2%), 애정표현이었다는 것이 31명(29%)이 응답했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은 곧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피해 자체를 친밀감이나 장난과 같은 행동으로 이해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피해를 사소화

하고 상대화하려는 경향은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폭력이 지속적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관계가 명백해서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울 경우에 드러나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행동이기도 하다⁷⁹⁾.

설문조사와 면접인터뷰에서 만난 피해자들 역시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고 친근감의 표현으로 사소화하는 경향을 띄었다.

“저 때 다른 고참들이 했을 때는 그렇게 싫기까지는 안 하고, 너무 심하게는 안 하고, 남들처럼 그냥 성기 딱 치는 식 있잖아요. 그런 식이었거든요. 저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무실 가면 그렇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처럼 생긴 애 있다 그러면 껴안고 자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럼 어떤 때는 물어봐요. 싫냐고. 그럼 **고참 똥**을 떠나서 **진짜 잘 따르는 후임병이 있고 싫어하는 후임병이 있는데** 일단은 잘 따라주고 또 내가 그만큼 그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솔직히 그거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거든요.” <사례 2-3>

79) 이성간 성폭력 사례 중 이와 같이 피해를 사소화(피해가 아니라 나를 좋아해서)하고 상대화(남들도 참고 사는데)하는 경향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특히 자주 발견된다. 아내구타 피해 여성이 가족을 떠나지 않으면서 생명이 위협할 정도의 폭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하는 폭력을 남들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상대화, 사소화해야 한다. 피해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이 자신을 위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 줄 알지만 그러한 인식이 탈출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아내 구타는 아내로서는 참아야 하는 폭력이라는 식의 사회적 통념이 지지하고있는 폭력인 데 이 경우 아내는 폭력 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스스로에게 설득하기도 한다.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학습된 희망(learned hopefulness)으로 폭력 상황을 견딘다. 아내는 자신이 당한 폭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폭력을 폭력이라고 직면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남편과 가족을 떠나야 하는 더 큰 문제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을 분열과 혼란, 끝없는 고민과 질문 속으로 밀어 넣고 폭력에 순응하거나 폭력 자체를 사소화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려는 방어기제를 발동하게 된다.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역시 이와 비슷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탈영이라는 극단적인 행동 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신고인데 이럴 경우 피해자로서의 낙인과 신고 이후 벌어질 군대내에서의 내무반 생활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다. 아내구타 피해자와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사이에서 한가지 다른 점은 아내 구타의 희생자들은 남편이 언젠가 나아지리라는 기약없는 희망에 매달려있는 반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희생자들은 1년 이내의 시간만 견디면 후임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현재의 피해를 사소화하고 상대화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논의는 정희진, 2001,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 문화, Richard J.Gells, 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Sage Publication,inc. 참조

강제적 성적 접촉 유형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드러난 키스 혹은 포옹 등의 행위에 대해 <사례 2-3>은 껴안는 등의 행동은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며, 성폭력 이라기보다는 선임병이 가지는 관심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사례 2-3>은 후임병일 때 선임병의 그런 행동을 친밀감으로 인식했었기 때문에 자신도 역시 선임병이 되었을 때 후임병에게 성적 접촉을 친밀함의 표현으로 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피해의 사소화는 비교적 강도가 약한 성적 추행을 용인하는 군대내 성문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런 친밀감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선임병에게만 주어졌다. 강제적 성적 접촉을 통해 구성하는 친밀감은 다시 말해 계급적 우위에 있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귀엽다” 혹은 “너를 잘 봐주고 있다”는 위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계속, 처음에는 싫어하는 거 같았는데 나중에는 다 좋아하더라구요, 진짜. 저도 뭐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니라, 군대에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와라, 오빠가 한 번 안아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막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하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더 친근감도 보여주고 싶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임병이 이등병인데 저하고 4살 차이가 나더라구요. 처음에는 엉덩이 같은 거 만져주잖아요. 그랬다가 성기를 잡아줬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애가 좀 싫어하더라구요. (웃음) 잡아줬는데 애가 싫어하더라구요. (그러면) 미소는 유지하면서(웃음) “형이 대학교 때 너 뭐였지?” 물어보면 개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형이 만져도 돼? 안돼?” 저는 왜냐면 제대도 얼마 안 남았었고 어떻게든 애들 데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때울까. 때우다가 제대하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례 2-3>

<사례 2-3>은 “오빠가 안아줄게 이리와”라고 말하며 후임병들을 여성으로 취급하고 선임병인 자신을 남성으로 위치지우면서 성별권력관계를 군대 계급 질서 안에 재배치한다. 후임병이 거부하거나 싫은 눈치를 보이면 나이와 계급을 언급하기도 한다. 친근함의 표현이자 장난이라는 말은 가해행위의 의도성을 희석시킨다기보다는 타인

의 몸을 마음대로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가해자의 권력욕을 반증하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사례 2-3>의 경우는 자신 역시 피해자였고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지만 곧 여기에도 적응해야 군대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본인이 선임병장이 되었을 때 후임병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사례 2-3>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근감의 표현이었으며 자신 역시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까지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친밀함의 표현이었거나 장난이었다는 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의 11.7%가 가해자가 자신을 가해한 이유를 '친밀감의 표시'로 이해하고 있고, 연구 참여 가해자 중에서도 가해 대상을 친한 후임병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1-4>는 가해 대상으로 친한 후임병을 지목하고 있고 <사례 1-6> 또한 피해자와 무척 친했음을 강조한다. <사례 1-8>도 자신이 고발된 이유는 피해자인 친한 후임병들 때문 이라기 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인 것 같다고 말한다.

“(추행의 대상이 되는 병사들이 특징이 있나요?) 간단한 성추행 같은 경우에 **다 자기들이 친한 후임병**이나 좀더 챙기는 후임병을 성추행하죠 밖의 사람들(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성추행이 예쁘장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례 1-4>

“저는 병사하고 너무 친하고 술도 같이 나눠서 먹고 .. 진짜 장난도 잘치고 하는 그런 허물없는 사이에서 저는 병사들하고 너무 친해지고 이게 좋아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걸로 했는데...” <사례 1-6>

“친하다고 지냈다면 **친하다고 생각되는 후임병**과 장난 좀 친다는 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후임병들에게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기 이렇게 만지다가 딴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여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후임병들이 싫은 내색을 한다거나 좀 그런 거를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한 두 번 그럴 때는 가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 댐에는 같이 장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례 1-8>

뿐만 아니라 가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인 <사례 2-2> 등의 연구 참여자들은 친하지 않으면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정작 더욱 친한 동기들에게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친밀함은 철저히 선임병의 위치에서의 친밀함이다. 자신의 통제권에 있으면서 군대 경험이 적은 후임병들은 선임병이 챙겨주는 정도에 따라 군대 생활이 좌우된다. 후임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정해진 서열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에서 고참과 친해지는 것은 적응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참이 주는 관심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군 생활이 풀리고 안 풀리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싫다고 표현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냥 툭툭 건드리고, 처음에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 말고, 일병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하고 일으켜 세우더니 점호시간에 그 여장남자랑 사는 거 한번 행동으로 재현하라고 (신임병한테요?) 네. 저하고, 저한테 한 다섯 달 고참한테요 그냥 처음엔 너무하다 싶었는데, 그러면 **고참들이랑 친해지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냥 나쁜 감정 안 갖고, 고참들 미워하지도 않았죠.” <사례 1-4>

“그때 장난하는 상병도 웃으면서 “아, 이러시면 안됩니다, 하하하” 이래가지고 **개가 인상 짝 쓰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러시면 안됩니다. 막 장난 식으로 그래가지고** 모 그때도 장난인 줄 알고..(후임병이 선임병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함부로 싫은 표정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좀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그리고 그 **후임병이 저를 무서워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난치는데 인상을 짝 써버리면 좀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1-2>

그러나 “장난 혹은 친근감”은 피해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가해자 입장에서 언어이다. 후임병인 피해자가 장난 혹은 친근감으로 선임병 가해자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심층면접에서도 가해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가해이유에 대해 일단 장난이었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일관되게 자신의 가해를 설명하는 언어로 선택하는 “장난”이라는 용

어는 군대의 위계성과 상명하복의 절대적 명령체계 안에서 가해의도의 불가해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피해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효과를 거둔다. 가해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해자는 강제적 성적 접촉을 수평적 관계에서의 장난으로 인식하기 힘들며 군대의 상명하복의 규율에서 후임병은 선임병의 행동을 저지하기 어렵다. <사례 1-2>는 자신의 행동을 계속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처벌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은 장난으로 했지만 후임병의 입장에서는 무서우니까 참자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들은 <사례 1-2>와 같이 무서운 고참이거나 자신의 군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해자일 경우에 가해자의 접촉을 거부하기 어려우며 <사례 2-3>와 같이 선임병의 말을 잘 듣고 친해지는데 군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친밀감 혹은 장난이라는 언어는 가해자의 의도를 희석시키면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처럼 불공정한 성적 계약을 맺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임병의 성폭력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피해사실을 은폐하는데 동참하기도 하는 것이다.

“제가 이등병 때나 일병 때는 고참들이 잘 때는 엉덩이 만지고, 장난으로 만졌지만, 아무튼 쫘 그랬는데, 아, 고참이 좋아서 그러는구나, 아까 말했듯이 어쩔 때는 잘 때 거의 이등병 인자 거의 일병 달 땐가 거의 밤마다 고참 팔베개하고 잤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누가 옆에서 그러고 자면 저는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싫다 말할 수도 없고” <사례 2-1>

<사례 2-1>는 고참들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팔베개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은 "쫘 그렇지만(이상하지만)" 고참이 좋아서 그러는 구나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사례 2-1>, <사례 2-2>, <사례 2-3> 등의 피해자들은 심층면접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제적 신체접촉에 대한 불쾌함을 항의해서 군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고참에게 잘 보여서 군대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거나 저항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2) 계급별 위계질서에 따른 성폭력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결과 피해자의 71.1%는 가해자로 선임병을 지목하였으며, 이외에도 부사관 7.0%, 장교 3.1%로 총 81.2%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응답했다. [표 22]

<표 22> 가해자의 계급 [피해자] (N=98) [목격자] (N=162)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후임병	9	7.0	8	4.2
동기	15	11.7	6	3.1
선임병	91	71.1	156	81.7
부사관	9	7.0	9	4.7
장교	4	3.1	12	6.3
총계	128	100.0	191	100.0

면접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 군 법무관 속보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으로 나타났다. <사례 2-3>를 비롯하여 모든 피해자들은 선임병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목격하거나 보고 들은 사례 역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성폭력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후임병이 선임병한테 할 수도 있나요?) 후임병은 (선임병에게) 못 해요. 일단은 그런 할 생각 자체도 안 할걸요. (동기들끼리는?) 동기들끼리는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동기들끼리는 원래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밑에서부터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싫다고 얘기할 수 있다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는 서로 못 하네요?) 그니까 (당하는 사람은) 거의 후임병들이죠.” <사례 2-3>

피해자의 응답에 비해 가해자의 가해대상은 후임병 53.3%, 동기 26.8%, 선임병 19.6%인 것으로 나타나 후임병의 비율이 피해자 응답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가해자 응답비율에서 선임병 및 동기비율이 높은 것은 강제적 성적 접촉 자체를 친근감 혹은 장난으로 사소화하려는 가해자의 입장이 대변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서 선임병을 지목한 비율은 71.1%이고, 가해자가 가해대상으로 후임병을 지목한 비율은 53.3%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가해자가 가해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임병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3> [가해자] 성폭력 가해 대상 (N=43)

가해 대상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별 백분율(%)
후임병	30	53.6%	69.8%
동기	15	26.8%	24.9%
선임병	11	19.6%	25.6%
부사관	0	0.0	0.0
장교	0	0.0	0.0
총계	56	100	130.2

이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폭력은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통제아래 놓일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군대 성폭력이 군대가 가진 위계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해자인 <사례 2-3>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서열이 올라감에 따라 가해자의 지위가 되었는데,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계급적 서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위행위 강요, 신체애무 강요 등의 성군기위반으로 군교도소에서 6개월째 복역중인 <사례 1-4>는 피해자들과 편지도 주고 받으며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고참이 잘한다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까지 추행이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사례 1-4>는 자신 역시 후임병 시절 고참이 성행위를 흉내내라는 요구를 받고 '너

무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내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례 1-4>는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며 받기를 해보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로 죄가 확정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런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을 칭찬하는 행동으로 용인되는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기도 한다.

“군대 내에서 성추행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끼리든 성추행 일어날게 뭐 있냐 그랬는데 군대외서 보니까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이제 추행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자기 고참은 애가 잘 하고, **열심히 하니까 쓰다듬어 준걸 간부들이 보면 추행이라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후임병들도 그래요 이런 것까지 성추행이라 얘기하니까 너무 군대가 삭막해 지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해요” <사례 1-4>

고의적 망각과 부인 그리고 최소한의 시인을 통해 가해행동은 군대를 잘 유지하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친밀한 행동으로 진술된다. 또한 후임병 시절 강제적 성적 접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례 1-4>는 군대의 질서유지를 위해 후임병의 인내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스스로없이 상대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오직 계급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군대의 특징상 문제가 생기면 소속부대원 전체가 소위 ‘피곤해지는’ 상황, 공적인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생활을 함께 하는 현 사병들의 생활양식 등을 고려할 때 군대내 성폭력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상대화하고 사소화하려는 경향은 한국의 특수한 남성문화와 군대라는 집단 질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군대를 유지하는 전체주의 질서는 군대내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주의(totalitarianism)란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강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군대규율의 핵심은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칭하는 “군기”로 요약된다. 성폭력 역시 “성 군기 문란 또는 위반”으로 이해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군대 조직의 특성상 성폭력과 같은 개인의 권리보다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지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될 개연성이 높으며 개인의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3)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편견으로 은폐되는 성폭력

일반적으로 이성간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저항했는지, 혹은 피해를 입을 만한 신체적 특성을 지닌 것은 아닌지에 대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불안해한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결백함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편견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는 것은 군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공감의 정도가 낮은 것과도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인식차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편견이 가해지는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은 피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목격자의 시선은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 접촉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에 대해 <표 24>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74.7%가 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응답은 15.4% 였으며, 계급이 낮아서 지목되었다는 응답은 4.4%,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워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표 24> [피해자] 성적 접촉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 (N=89)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별 백분율(%)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여서	1	1.1	1.1
학벌, 지역 등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	1	1.1	1.1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워서	3	3.3	3.4
별 이유 없이	68	74.7	76.4
친근감 표시	14	15.4	15.7
계급이 낮아서	4	4.4	4.5
총계	91	100.0	102.2

목격자의 경우 >표 25>를 보면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 대상으로 주로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럽기 때문이라고(51.3%)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대답이 21.7%, 신체적으로 연약해보이는 사람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는 대답이 18.3%로 피해자의 인식과는 모든 응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5> [목격자] 성적 접촉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N= 164)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별 백분율(%)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	126	46.5	76.8
학벌, 지역 등으로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	8	3.0	4.9
매사에 뒤쳐진 사람들(고문관들)	22	8.1	13.4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	57	21.0	34.8
특별한 이유없이 대상이 됨	58	21.4	35.4
총계	271	100.0	165.2

또한 가해자의 72.9%는 “어떤 사람이 성적 접촉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응답해 가해자의 많은 수가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이 피해자로 지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계급적 신체적으로 취약하거나 남자답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가해자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스럽거나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군대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매사에 뒤쳐져서 6.3%/미움을 받아서

2.3% 등)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변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표 26>에서 목격자는 가해자가 가해행동을 하는 주요원인으로 친근감의 표현(31.2%), 괴롭히기 위해서(20.8%), 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19.0%), 마음대로 다루려고(15.8%) 순으로 응답했다. 목격자 응답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성충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에 가까운 낮은 응답율(피해자 0%/가해자 1.8%)을 보인 것에 비해 목격자는 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가해를 한다는 대답이 1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목격자 응답에서는 피해자/가해자 응답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응답인 동성애자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응답도 5.4%가 나왔는데, 목격자의 이와 같은 인식은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남성답지 못하거나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남성간 성폭력의 원인을 성욕과 동성애자간들의 행동으로 보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26> [목격자] 가해자가 강제적 성적접촉을 하는 주요이유 (N=165)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별 백분율(%)
친근감의 표현으로	87	31.2	52.7
맘대로 다루려고	44	15.8	26.6
괴롭히려고	58	20.8	35.2
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53	19.0	32.1
동성애자이므로	15	5.4	9.1
군기를 잡으려고	8	2.9	4.8
별 이유 없이*	1	0.4	0.6
기타	13	4.7	7.9
총계	279	100.0	169.1

* 응답자 중 “별 이유없이”라고 주관식으로 답한 경우를 항목에 추가함

그러나 설문 결과 가해자의 70%이상이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을 지목한 것과 달리 심층면접 가해자 8명중에서 가해 대상이 “여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단지 2명(<사례 1-1>, <사례 1-3>)에 불과했으며, 이 두 사례조차 모두 직접 가해한 대상의 외모와는 관계없이 가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1>가 “생각하는” 가해대상은 ‘하는 짓도 여자 같고 얼굴 외모도 좀 여자 같은’ 사람이었지만, 실제 <사례 1-1>의 가해대상은 여자 같은 후임병이 아니라 고문관 등 선임병이 통제할 필요가 있는 후임병이었다.

“군대가 남자들만 있는 세계고 특별하게 딱 봤을 때 하는 짓도 여자같고 얼굴 외모도 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참들도 그런 식으로 건드렸습니다. 소위 그렇게 가혹행위를... (괴롭히려고?) 매번 때리지는 못하고.. 장난도 아니면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외모가) 예쁘장한 후임병들을 골랐나요? 아니면 고문관들 뭐 주로 이런 사람들인가요? 일단 고문관들이.... 기를 죽여서.” <사례 1-1>

<사례 1-3> 역시 가해 의도에 대해 “귀여운 애기 보면 뽀뽀하듯이” 뽀뽀를 한다고 말해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상대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을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자신의 실제 가해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군기를 잡기 위해 악역을 맡았다”며 신병이 들어오는 시기에 내무반에서 군기를 잡는 상병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강제적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면접자들의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 통계를 비교 분석해볼 때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여성스러운 외모나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는 가해자와 목격자의 응답은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부인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해자의 가해 대상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점은 외모나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라는 점뿐이다. 그럼에도 가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대상이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후임병의 위치 자체가 가지는 취약함을 곧 여성스러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남성신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성폭력

가해자 면접인터뷰과정에서 군대내 성폭력의 가해 특성으로 발견된 것은 성폭력이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군대내 성희롱적 언

어문화를 분석하면서 신체비하나 놀림이 곧 신체에 대한 통제·가혹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았다. 신체에 대한 통제권은 군대조직의 위계질서를 확인하는데 더없이 좋은 방식이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 성적 접촉 중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성기만지기(22건, 12.9%)에 대해 <사례 2-1>는 사회에서는 나이나 학벌, 계급 등에 따라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군대에서는 이등병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제가 이등병 할 때는 가면 갖고 놀려는 그런 게 있어요. 신병들을 사회에서는 못하니까 사회에서는 학벌도 있을테고 신분의 차이도 어느 정도 갭이 존재하니까...(중략)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등병이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밖에선 못하지만 **군대에서는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한마디로 성기를 만진다든지 이리 와 보라 해가지고. 성폭력까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등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임병한테 대들 수는 없고” <사례 2-1>

반면 <사례 2-3>는 성기만지기는 일상적인 남성문화라며 성적행동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라고 부인한다. 성기만지기가 남성들의 일상적 성문화라는 점에는 <사례 2-2>역시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런데 왜 굳이 엉덩이나 성기를..) 그니까 남자들은 그렇더라구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애들 만났을 때도 그냥 우리 다 잊자고..(웃음) 그런 게 있었어요. (성적인 뉘앙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개들은 **성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게 아니라 **좀 일단 친근감이니까**. (성적인 뉘앙스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남자는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만 좋아하지” <사례 2-3>

(성기만지는 게 친근감의 표시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식으로 장난 안칠건데요. 제 위의 고참 중에 그렇게 장난 친 고참들도 있었어요. **거의 일반적일거예요** 아마.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례 2-2>

그렇다면 왜 어깨를 툭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이 아니라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는 걸까?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신체에 대한 권리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일까? 이에 대해 엠마뉴엘 레아노⁸⁰⁾는 남성들간의 관계에서 성기는 힘의 상징으로 인식된다고 말한다. 남성의 성기는 신체기관의 일부나 성욕의 도구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계질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남성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곧 힘의 우위를 확인하는 행동일 개연성이 높다. <사례 2-1>과 <사례 2-3>은 이와 같은 가설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이 성기를 만지는 것은 성적 충동 때문이라기보다는 후임병에 대한 통제권을 확인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⁸¹⁾ 한스 페터 뒤르⁸²⁾는 특히 전쟁시에 상대편 남성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표시로 성기를 절단하거나 전시하는 풍습이 많았으며 남자의 신체 중에서 성기는 권력과 힘의 상징이므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굴복하게 할 때 성기를 폭력으로 빼앗는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몸은 타자의 침입에 대해 자기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개인성을 확보하는 영역이다. 디트리히 슈바니츠⁸³⁾는 개인은 몸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 자체이며 사람들은 서로의 몸에 대해 개인적 구역을 인정하므로서 상호존중을 배워간다고 말한다.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무기력함을 눈앞에 직시하게 하여 상대를 굴복시키고 피해자가 무력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시키며 피해자의 신분은 존경받을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행동이라는 것이. 이처럼 남성에게 있어서 성기는 곧 힘과 권력의 상징이므로 성기에 대한 놀림과 강제적 접촉은 곧 상대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5)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강제적이고 의도적인 성폭력

80) 엠마뉴엘 레아노, 2001, 『강요된 침묵 - 폭력과 지배의 남성문화』, 책갈피,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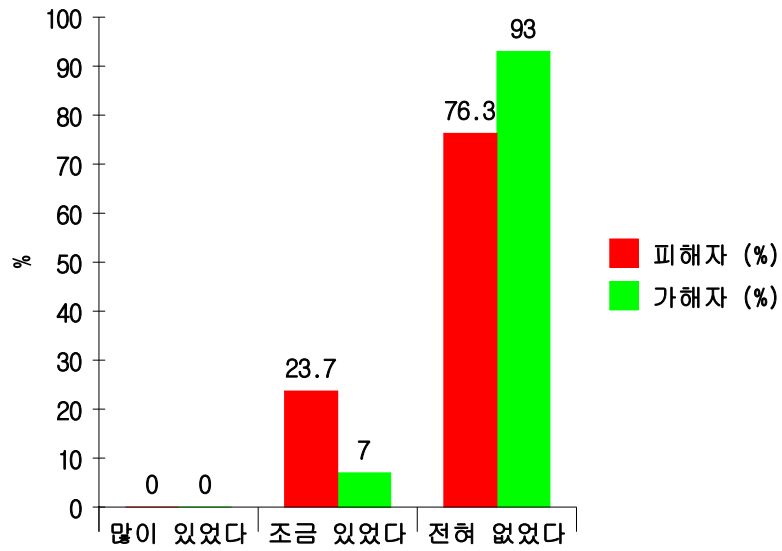
81) 성기는 남성신체중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 묘사되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취약한 신체기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기가 성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타인의 손에 쥐어졌을 때 성기를 잡는 사람과 잡힌 사람의 위계는 명백해진다 이렇게 성기만지기는 대단히 성적인 행동인 동시에 전혀 성적이지 않은 행동이기도 하다. 성기를 만지는 강제적 성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이 명백한 강제추행을 성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되므로 일반적인 남성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순응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82) 한스 페터 뒤르, 2003, 『음란과 폭력』, 한길 히스토리야, p 301-351

83) 디트리히 슈바니츠, 2003, 『남자』, 들녘, p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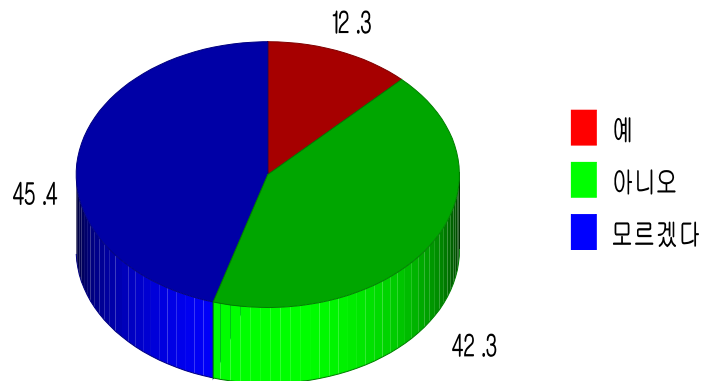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성폭력 가해 시에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는 정도는 성적 접촉의 강제성과 의도성을 보여줄 수 있다. 성폭력 피해가 다른 구타 등의 폭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처벌이나 기합과 같은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 당시 물리적 폭력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 총 22명(21.4%)이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다고 응답했다. 듣거나 본 경우에는 12%가 물리적 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44%가 모르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보고된 103명의 피해 중 2명(총 21.4%)이 물리적 폭력을 동반했다고 응답한 것은 성폭력의 강제성 및 의도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편 가해자에게 가해 당시 물리적 폭력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7%만이 '조금 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피해자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더 폭력에 민감하고 가해자가 더 허용적인 결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폭력성에 대한 허용도와 민감도의 차이를 드러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0] 강제적 성적 접촉 시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피해자 N=93, 가해자 N=43)

백분율 (%)



[그림 11] [목격자] 강제적 성적 접촉 시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N=163)

또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례 1-1>의 경우처럼 구타를 대신할만한 행위로 성폭력이 사용되기도 한다 <사례 1-1>는 ‘매번 때리지는 못하고, 장난이 아니면서도 상대를 기분나쁘게 하는 수단’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이용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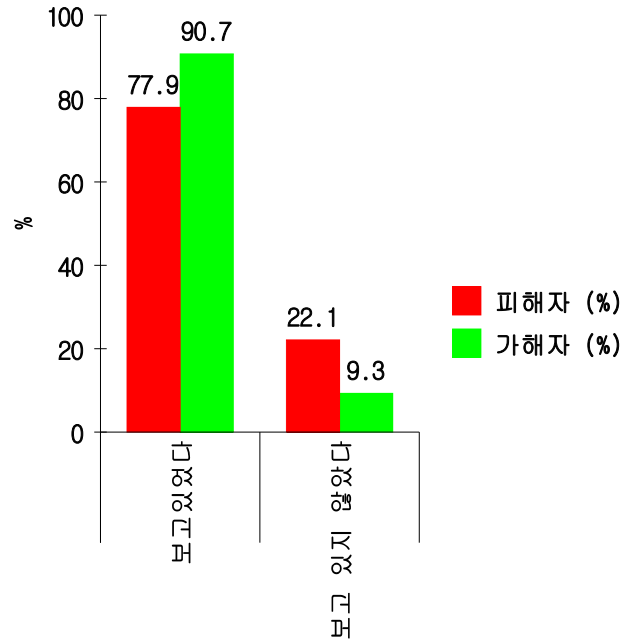
“(괴롭히려고 그런 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매번 때리지는 못하고... 장난도 아니면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하는... 그런 만약에 청소를 계속 반복해서 시킨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략) 강 : 군대 오고 집이 잘살고... 또 자기도 많이 배우고... 고참은 자기보다 군대만 일찍 왔다 뿐이지...솔직히...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보면 자기한테 좀 무섭게 하는 고참한테는.. 잘하고,,, 자기가 봤을 때 좀 만만하다 이려고 좀

개기고 어떻게 때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군대에서 합법적이면서 갈굼 수 있는 방법...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례 1-1>

<사례 1-1>은 내무반 내에서 소위 “군기반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구타를 제외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후임병 길들이기의 방편으로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사례 1-1>의 말대로 군대를 몇 개월 일찍 왔다는 것만으로는 후임병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군지휘체계에서는 동일한 계급인 사병집단들 끼리 소위 “짬밥”만을 가지고 지배와 복종의 질서를 잡기는 무리이다. 이때 성폭력은 구타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한 훈육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6)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또 다른 특성은 앞서 나온 발생장소에 대한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적인 장소에 일어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가해 당시 주변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응답은 가해자의 90.7%로 나타났다. 가해의 공개성에 대한 높은 비율은 키스나 포옹, 신체만지기, 성기만지기 등이 군대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또한 주변 사람들이 보고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71.8%로 가해자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부대 내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12] 피해시 공개여부 (피해자 N=95, 가해자 N=43)

이러한 공개성은 남성성의 과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권수현⁸⁴⁾은 남성은 성경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남성들 사이에서 공개적 자랑과 승인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남성적 자아를 확인한다고 말하며, Duncan과 Chappell⁸⁵⁾은 공개적으로 강간을 하는 남성들의 심리에는 집단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함으로서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과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남성적 욕구의 반영이라고 설명한다. 남성 문화 안에서 성적 우월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곧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승인 받는 과정이며 이런 의미에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공개적일 때에 보다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가해자 개인의 가해 행동과 함께 가해에 공모하는 집단 문화는 남성성의 승인과 무관하지

84) 권수현, 1998,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85) 권수현(1998:87)에서 재인용.

않다.

실제로 주변에서 가해행동을 보고있던 주변사람들의 태도는 잘한다고 분위기를 만들거나(18.4%), 가담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5.3%) 등 가해 상황에 공모하는 비율이 23.7%로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2.6%) 비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담담하게 보고있었다(57.9%)'와 '못본 척 했다(10.5%)' 등 가해에 대한 소극적 동의를 합한다면 가해에 공모하는 비율은 91.6%에 이른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담담하게 보고있었다는 응답이 59.5건(65.7%), 분위기를 조성했다 11건(14.9%), 못본척 했다 8.1건(9%)고 하는 등 가해자의 응답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27> [피해자] 주변의 태도 (N=67)

	빈도(명)	백분율(%)
가담하여 함께 성적 접촉 시도	1	1.5
분위기 조성	11	16.4
담담하게 보고 있었다	44	65.7
못 본 척 했다	6	9.0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3	4.5
기타	2	3.0
총계	67	100.0

<표 28> [가해자] 주변의 태도 (N=38)

	빈도(명)	백분율(%)
가담하여 함께 성적 접촉 시도	2	5.3
잘한다고 분위기를 만들었다	7	18.4
담담하게 보고있었다	22	57.9
못 본 척 했다	4	10.5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1	2.6
기타	2	5.3
총계	38	100

이처럼 주변에서 가해 행위를 인지한 비율이 높은데도 묵인하고 공모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사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부대원 절대 다수의 암묵적인 동의는 가해 행위를 저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만큼 가해자의 죄책감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목격자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목격자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나눔으로써 가해 행위의 합리화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의 선임병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 잘 적응해서 무사히 제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병들에게 있어서 선임병의 가해 행동에 대한 저지는 곧 군대내 위계질서에 대한 위반이 되기 때문에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군대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묵인과 공모, 은폐의 구조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신고 및 처리 실태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3. 성폭력 발생 이후 과정 및 문제점

가. 신고 및 처리 실태 및 낮은 신고율의 원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신고율이다. 성폭력 발생 이후 신고 및 처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의 신고율은 87건 중에서 4건(4.4%)에 그쳤다⁸⁶⁾. 이처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신고율은 극히 낮게 나타났다. 낮은 신고율은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모두 성폭력을 첫째, 일상적 군대문화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는 점, 둘째, 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점, 셋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으면 된다는 의식, 넷째, 신고하거나 당할 경우 동성애자로 낙인찍히는 것의 두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1) 일상적 군대문화의 일부로 수용

일상적 군대 문화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경향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복수응답을 허용하

86) 설문결과의 듣거나 본 경우 유효응답 중 신고된 비율은 117건 중 39건(33.3%)이었다. 보거나 들은 경우와 피해자의 신고율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보거나 들은 사건의 경우 대부분 성군기문란사고로 접수되어 처리와 결과가 공개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고 물어본 결과 첫 번째 이유는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48건 (64.0%)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12건, 16.0)',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7건, 9.3)', '불이익이 두려워서'(6건, 8.0%)가 그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16건, 31.4)',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14건, 27.5%)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10건, 19.6%), '불이익이 두려워서(4건, 7.8%)'로 나타났다.

<표 29> [피해자]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순위 응답
(1순위 N=75, 2순위 N=51)

	1순위		2순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12	16.0	10	19.6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48	64.0	14	27.5
불이익이 두려워서	6	8.0	4	7.8
가해자와의 관계때문에	7	9.3	16	31.4
기타	2	2.7	7	13.7
계	75	100.0	51	100.0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으레 있는 일'이라는 대답은 군대 내 성폭력이 일상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2-1>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군대니까 후임병으로서 선임병의 행동 중 참을만한 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 많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으니깐. 단순하게 장난삼아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후임병들을 갖고 놀기 위한 선임병들이 그런 모습일 수 있으니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보통 그런 장난을 건다든지 그런 대부분은 선임병이 후임병한테 하는 경우이고. 그런 후임병이 당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고참도 후임병한테 나는 할 수 있다 선임병이니깐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선까지는 해도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사례 2-1>

2) 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한 불신

한편, 목격자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불이익이 두려워서’(1순위 37.1%, 2순위 32.2%),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1순위 8.6%, 2순위 33.9%)로 꼽아 신고를 할 경우 부대 내 생활과 관계에서 피해자의 불이익이 우려스러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30> [목격자] 피해자가 보고하지 않은 이유 순위 응답
(1순위 N=70, 2순위 N=59)

	1순위		2순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소용이 없어서	19	27.1	13	22.0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19	27.1	5	8.5
불이익이 두려워서	26	37.1	19	32.2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6	8.6	20	33.9
기타	0	0.0	2	3.4
총계	70	100.0	59	100.0

신고해도 소용이 없거나 신고하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신고 절차와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군대내의 성폭력에 관한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군대 조직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군대는 병영생활을 하는 곳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함으로써 반복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앞서 피해자 실태에서 본 것과 같이 군대 내의 성폭력이 지속적 반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계속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가해자의 성폭력을 용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 조금 그렇다(149건, 22.7%), 매우 그렇다(89건, 13.5%)고 답했다. 이는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심하면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조심은 저항이라기보다는 소극적 거부(사표현)에 가깝다 이러한 소극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후임병에게는 선임병의 성폭력을 저지할 수 있는 무력하지만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등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임병한테 대들 수는 없고 한번으로 끝내겠지 어느 정도 저항을 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만두니까요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저항을 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무실이 있어요. 내무실에 일렬로 양쪽으로 자게 되는데 이등병은 가장 꼬트머리에서 자요 안쪽 꼬트머리에서. 문에서 가장 먼 자리에서 자게 되는데 그 반대편 침상에 최고 선임병이 있어요. 그 선임병이 제 침상으로 넘어온다든지 해서 이등병 같이 왔으니까 갖고 놀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게 혐오스럽거든요. 밀쳐내고 그러다 보면 이 자식이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요. 계속 어쩔 수 없이 저항을 하죠 저로서는 혐오스러우니까. 몇 번 하다가 제 풀에 지쳐서 그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죠” <사례 2-1>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원수리함 등의 공식절차를 통하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표 31>을 보면 혼자서 참고 견디는 것(52.2%), 가해자에게 항의(17.9%), 가해자보다 높은 선임에게 보고(1.5%)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대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도 22.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피해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처방안 (N=67)

대처방안	빈도(명)	백분율(%)
혼자서 참고 견디었다	35	52.2
가해자에게 항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12	17.9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5	22.4
가해자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에게 보고	1	1.5
기타	4	6.0
합계	67	100.0

이러한 결과는 남성간의 성폭력의 가해자의 대다수는 선임병 피해자의 대다수는 후임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경우 군인의 신분으로서 계급이 높은 가해자의 폭력에 저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처하기보다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애써 혼자서 참고 견디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군대내 성문화가 피해자에게 지지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낮은 신고율과 지속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⁸⁷⁾.

4) 동성애자로 낙인찍히는 두려움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하게 되냐는 항목에는 응답하지 않고, 목격자만이 5.4%가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나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성애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군교도소에서 가해자로 수감된 8명의 사례 역시 모두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동성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향으로 본인을...?) 제가 그때 당시 그 사건 경황으로 봤을때... 제 자신을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여자를 좋아하지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례 1-1>

87) 법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제안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사례 1-1>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단호하게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연구자를 경계해서 이같이 대답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지만 “동성애자도 아닌데 들어와서 억울”<사례 1-3>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동성애자라고 인정한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다고 해도 동성애자라고 취급받고 싶지는 않다<사례 1-8>며 강한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를 드러내기도 한다. 면접에 응한 가해자들은 성적 충동이 아니라 성적인 지배욕 때문에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스 페터 뒤르⁸⁸⁾는 남자만 골라 폭행을 하는 범인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한 결과 폭행의 일차적인 목표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데 있으며 특히 이성간의 성(heterosexul)을 기본으로 삼는 범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동성애자의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가해자들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성폭력과 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 혐오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상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성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례 1-1>⁸⁹⁾와 <사례 1-2>⁹⁰⁾, <사례 1-3>⁹¹⁾은 성적인 방법으로 후임병을 통제하고자 했다고 한다.

“내가 오로지 친근감의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인 것 같아요. 내가 일단은 뭐 했다고 그러면 내가 피해 볼까 봐. 그거인 거 같아요.(내가 피해본다는 거는.. 이상하게 볼까봐?) 네. 솔직히 그러잖아요. 남자가 남자 성기 만진다고 그러면.. 이 사람 게이 아냐? 그리고. 일단은 내가 한 건 친근감의 표시고 내가 당한 거는 성폭력의 피해를 얻었다 그러는 거 같아요” <사례 2-3>

<사례 2-3>은 이러한 강제적 성적 접촉을 친근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해의 의도를 성적 욕망으로부터 희석시켜야 동성애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례 2-3>의 말은 가해자들이 어째서 성폭력을 단순히 친밀감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지를 설명해준다.

88) 한스 페터 뒤르, 2003, 『음란과 폭력』, p331, 한길히스토리아

89) ‘군대에서 합법적으로 갈굴 수 있는 방법 <사례 A>

90) ‘군기잡고. 제가 악역을 맡아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례 B>

91) ‘누군가 한 명은 나쁜 사람이 되야 한다 그게 제가 된 거예요’ <사례 C>

“어릴 때부터 자위같은 거 할 때 내 항문을 자극하고..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항문에 뭔가를 넣고 했었다. 이런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다. 당했다고 생각하면 더 비참해져서..합리화하려고..고참이 처음 당하는 것 치고는 삽입이 용이하다며 너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아니지? 내가 변태나 동성애자는 아닌지..(물어서) 당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했다. ..” <사례 2-8>

<사례 2-8>의 경우, 남성에 의해 강간 피해를 입은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상담을 하게 된 사례인데, 그는 피해과정에서 자신이 혹시라도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당하면서도 떳떳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했다고 하면 더 비참해지니까 차라리 같이 즐겼다고 생각하는게 낫기도 하다는 것이다. <사례 2-8>은 변태나 동성애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동성애 혐오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 린다 레드레이지⁹²⁾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서처럼 벌을 주거나 지배하고자 할 때 남성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남성 피해자들은 동성애자로 비난받거나 진짜 남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남자들은 수치와 치욕을 부인하고, 남자다움을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같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실제로 이성애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 가해를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동성애자에게로 돌려 자칫 군대내 성폭력의 구조와 원인을 위계질서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만의 문제로 잘못 인식하게 하도록 만들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나. 피해 직후 증상 및 후유증 실태

1) 피해 후 증상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들은 아무 증상 없음(32건, 28.1%), 모욕감과 수치심(각 17건, 14.9%), 분노(16건, 14%), 체념과 짜증(각 7건, 6.1%), 불안과 긴장 혼란(각 5건, 4.4%)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대답했다. 제대병이 분노와 짜증, 우울증, 혼란, 모

92) 린다 레드레이지, 1995, 『나의 몸, 나의 길 - 성폭력의 예방과 극복』,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58-275

욕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의 경우에는 제대병에 비해 긴장과 체념,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제대병에 비해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공간적 시간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분노와 체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2> [피해자] 피해 후, 경험한 증상 제대병과 현역병 비교 (N=87)

	제대병	현역병	합계
불안감	2(2.3)	3(11.5)	5(4.4)
긴장감	3(3.4)	2(7.7)	5(4.4)
우울증	2(2.3)	0	2(1.8)
분노	11(12.5)	5(19.2)	16(14.0)
체념	4(4.5)	3(11.5)	7(6.1)
혼란	4(4.5)	1(3.8)	5(4.4)
모욕감	16(18.2)	1(3.8)	17(14.9)
수치심	15(17)	2(7.7)	17(14.9)
아무 증상 없음	24(27.3)	8(30.8)	32(28.1)
짜증남	6(6.8)	1(3.8)	7(6.1)
기타	1(1.1)	0	1(0.9)
총계	88(77.2)	26(22.8)	114(100)

* 괄호 안 숫자는 백분율

<표 33> [목격자] 피해자가 겪었다고 생각되는 점: 계급별 교차분석 (N=156)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제대병	계
주변 사람들에게 집단	0(0.0)	0(0.0)	2(22.2)	0(0.0)	6(3.6)	8(3.9)
긴장감 불안감 등으로	3(50.0)	2(20.0)	3(33.3)	3(23.1)	54(32.1)	65(31.6)
적응을 하지 못하고	1(16.7)	5(50.0)	1(11.1)	6(46.2)	66(39.3)	79(38.3)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	0(0.0)	0(0.0)	0(0.0)	0(0.0)	8(4.8)	8(3.9)
변한 것이 없다	2(33.3)	3(30.0)	3(33.3)	4(30.8)	33(19.6)	45(21.8)
모르겠음*	0(0.0)	0(0.0)	0(0.0)	0(0.0)	1(0.6)	1(0.5)
총계	6(2.9)	10(4.9)	9(4.4)	13(6.3)	168(81.6)	206(100.0)

* 괄호 안 숫자는 백분율

목격자들에게 피해자가 겪었다고 생각되는 피해 후 증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군대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9건(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에 시달렸고(65건, 31.6%), 주변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8건, 3.9%) 집단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고 2차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 후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전체 피해자 중 3명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것은 실제로 치료와 상담 등이 필요없다고 보다는 피해를 사소화하려는 피해자의 전형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후의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도 피해자들 중 75%은 변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군생활도 전과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81.2%로 나타났고 군대 밖 대인관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95.2%를 차지했다.

<표 34> [피해자] 피해 후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점 (N=87)

	빈도(건)	백분율(%)	가해내용별 백분율(%)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에 대해 회의하게 되었다	4	4.3	4.6
후임병에게 강제적 성적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	3	3.3	3.4
다른 여자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	1	1.1	1.1
동성애자를 혐오(가해자가 동성애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8	8.7	9.2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5	5.4	5.7
변한 것이 없다	69	75.0	79.3
기타	2	2.2	2.3
총계	92	100.0	105.7

피해 직후 증상에 대한 응답에서 피해자들이 변한 것이 없으며, 대인관계나 군대생활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은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에 자신의 피해를 직면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군대문화가 성폭력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는 혼란을 겪다가 이등병과

일등병 기간을 잘 넘기면 피해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다 피해 후 증상을 더욱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해자 중 피해경험율이 81.7%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경험은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피해 후 증상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군대 내 성폭력의 악순환은 점점 끊어지기 어렵게 된다. 초기에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야 이후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신고율이 낮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자각의 정도 역시 낮은 상태는 초기에 성폭력 피해를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하여 이후 더 오래고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성간 성폭력 피해 역시 1997년 2%에 머물렀던 신고율이 사회적 변화와 함께 피해에 대한 의식이 변하여 2004년 현재 13%까지 올라가고 있다⁹³⁾는 점을 감안하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대적인 의식변화라고 보여진다.

2)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피해 후유증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피해 사례는 대부분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류였다. 이들의 경우 특별한 후유증을 겪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⁹⁴⁾. 전체의 80.2%가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외 응답으로 나온 것은 대인 기피증(7.7%), 불면증 및 악몽(각 3.3%), 기타 응답으로 자살욕구, 자해시도, 근무지 이탈시도, 가해자에 대한 분노 순으로 대답했다. 피해 증상 및 후유증에 대해 피해자들이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고 한 조사결과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과 연관된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서 피해자를 입

93)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상담통계”, www.sisters.or.kr

94) 이성간 성폭력의 경우에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인한 후유증은 신고나 고소절차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차별을 경험하면서 억울함과 분노 등의 감정이 쌓이는 것이다.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피해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피해라고 명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남성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취약함을 드러내야 하고 군대라는 조직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부담 때문에 피해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인정하더라도 피해로 인해 자신이 겪는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현역병과 제대병을 비교해보면 현역병 26명 중 피해 후유증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총 30.7%였으며 제대병 65명 중 15%가 피해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표 35> [피해자] 피해 후, 경험한 후유증 (N=87)

	빈도(건)	백분율(%)	가해내용별 백분율(%)
자살욕구	1	1.1	1.1
자해시도	1	1.1	1.1
근무지 이탈시도	1	1.1	1.1
불면증	3	3.3	3.4
대인기피증	7	7.7	8.0
악몽	3	3.3	3.4
기타	1	1.1	1.1
특별한 후유증이 없었다	73	80.2	83.9
가해자에 대한 분노	1	1.1	1.1
총계	91	100.0	104.6

<표 36> [피해자] 피해 후, 경험한 후유증 제대병과 현역병 비교 (N=87)

* 괄호 안 숫자는 백분율

	제대병	현역병	총계
자살욕구	0(0.0)	1(3.8)	1(1.1)
자해시도	1(1.5)	0(0.0)	1(1.1)
근무지 이탈시도	1(1.5)	0(0.0)	1(1.1)
불면증	2(3.1)	1(3.8)	3(3.3)
대인기피증	3(4.6)	4(15.4)	7(7.7)
악몽	1(1.5)	2(7.7)	3(3.3)
기타	1(1.5)	0(0.0)	1(1.1)
특별한 후유증이 없었다	55(84.6)	18(69.2)	73(80.2)
가해자에 대한 분노	1(1.5)	0(0.0)	1(1.1)
총계	65(71.4)	26(28.6)	91(100.0)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강간⁹⁵⁾ 피해

① 숨겨진 강간피해

본 연구에서 인용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의 대부분은 남성에 의해 강제적으로 항문에 성기가 삽입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피해를 찾을 수 없었던 반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에서는 4건의 강간피해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피해발생시기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⁹⁶⁾. 이처럼 남성간 강간 피해는 철저하게 은폐되어왔다. 이렇게 철저하게 남성간의 강간에 대해 은폐되는 이유에 대해 <사례 2-3>는 남자가 당했다고 하면 남성사회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 말하기

95) 현행 형사법 상 강간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개념이나, 본 연구에서는 강간을 이성간의 강제적 성기삽입 뿐만 아니라 남성의 항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성기삽입 구강성교강요, 강제적인 이물질 삽입 등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 (19-20p)에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 참고.

96) 상담을 요청했을 때의 나이는 상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어렵다고 지적한다.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왜냐면 남자잖아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이 되게 심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창피하다고.. 그니까 대부분 자기가 당했어도 그런 말 자체를 꺼내지 못해요. 오히려 그 얘기를 꺼내면 친구들한테 병신취급 받고 욕만 먹는거고. 친구들이 더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사례 2-3>

수잔 에스트리치⁹⁷⁾는 남성에 의해 강간피해를 입은 남성은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다고 한다. 존 프레블과 니콜라스 그로스⁹⁸⁾는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흔드는 수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폐되어왔다고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⁹⁹⁾의 2차 피해 연구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 역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남성 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성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비난받는 피해자가 된다고 보고한다. 특히 남성들은 성폭력의 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는 다른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강간피해의 경우에는 남성성에 손상을 입어 피해를 드러내지 않고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근무를 교대로 하다보면 일주일에 2번씩 그 고참과 함께 있게 된다. 처음 들어갔을 때 심하게 기합을 줘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든 다음 한달 전부터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몸을 애무하고 최근에는 항문 삽입까지 했다.” <사례 2-5>

“군대있을 때 상사에게 피해를 당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6개월 정도의 주기로 많이 힘들다. 신체부위가 썩어가는 것 같고 썩는 냄새도 난다. 취직을 해야하는데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피하게 된다.” <사례 2-6>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비참해지니까 내가 당한게 아니라고, 내가 직접 (상대에

97) 수잔에스트리치, 1993, 『진짜강간』, 교육과학사, p24

98) John preble & Nicolas Groth, 2002, 『Male Victim of Same Sex Abuse』, Sidran Press

99)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p80

게)그 단어를 써본 적은 없지만..나도 원해서 했다, 나도 즐긴다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거 같다. 당한 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처음에는 아팠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익숙해져서 그게 아프지가 않다..고참이 처음 당하는 것 치고는 삽입이 용이하다며 너 이거 처음 해보는거 아니지? 내가 변태나 동성애자는 아닌지.(물어서) 당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했다.” <사례 2-7>

<사례 2-5, 2-6, 2-7>은 모두 강간피해를 입고 난 이후 고민 끝에 상담을 하게 된 경우이다. <사례 2-5>의 경우 고참이 자신을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강간을 했다는 점 때문에 분노와 좌절감을 겪고 있었다. <사례 2-4, 2-5, 2-6>은 강간피해 후 성기능장애, 정신과 치료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비난받을 것으로 두려워했다. <사례 2-6>의 경우 긴급한 의사의 처방과 진단,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비난이 두려워 병원에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2-8>은 피해자로 자신을 정의하면 ‘비참해지고’ 그렇다고 자신이 즐겼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자니 자신이 혹시 변태나 동성애자는 아닌지 고민하기도 한다.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편견과 비난은 더욱 남성강간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남성강간피해자의 이처럼 깊은 수치심은 항문성교가 남성성(masculinity)을 훼손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남자가 항문에 강간을 당하면 체면만 잃는 것이 아니라 ‘여성화된 자’로서 시민적 권리까지 박탈당했다¹⁰⁰⁾. 남성강간피해자들은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 사회에서 여성화된 자, 남성이 아닌 자, 혹은 동성애자로 낙인을 찍혀 공감이나 지지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례 2-5, 2-8>처럼 혹시 자신이 즐긴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는 혼란에 휩싸이거나 <사례 2-6>와 같이 취직을 못할 정도로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남성간 성폭력의 강간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공감과 이해, 지지가 없이는 피해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강간 피해에 따른 후유증

100) 한스 페터 뒤르, 2003, 위의 책, 321p, 한길히스토리

남성간 강간의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은 여성 피해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 성경험 자체가 비난의 원인이 되는 반면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적인 성경험이 아니라 강제적이었다고 말하기를 더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존 브레블과 니콜라스 그로스¹⁰¹⁾는 남성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며 오히려 성경험을 즐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비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피해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강박증, 저항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무력감에서 비롯한 자기혐오와 우울증, 성폭력 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지도 모른다는 수치심과 죄책감,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침해한 폭력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등의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다¹⁰²⁾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은 육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고유의 개인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피해자들은 성적인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성적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서 발기부전과 조루 등의 성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고 분노나 적개심을 잘못된 대상에게 투사(projection)하면서 성폭력 가해행동을 모방하기도 한다. <사례 2-4>의 경우 군대내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성기능 장애를 앓고 있다. <사례 2-6>는 4년전 군복무시절 상사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 6개월에 한번씩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환각적 망상(delires hallucinatoires)과 형사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편집 망상(delires paranoiaques)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강간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들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손상을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 Stress Disorder)로 대인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군대있을 때 상사에게 피해를 당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6개월 정도의 주기로 많이 힘들다. 신체부위가 썩어가는 것 같고 썩는 냄새도 난다. 취직을 해야하는데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피하게 된다. 죽이고 싶다, 보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종이에 글을 썼었는데 그 종이가 없어진 후부터는 형사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친구들이 자세히는 얘기 못했는데 보복할려면 하든지 혼자 왜 이중 삼중으로 괴로워하냐고 한다. (군대내에서 고참에 의해 피해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

101) John Preble & Nicolas Groth, 2002, 위의 책, p 65

102) 채규만, 2000, 『성폭해 심리치료』, 학지사,

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의사가 나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비난하지 않을까?” <사례 2-6>

<사례 2-7>와 <사례 2-8>는 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자신 역시 즐겼다고 생각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 2-7>은 호기심에 가만히 있었다고 하다가 나도 좋았다고 하다가 후회된다고 하는 등 감정의 변화가 극심하고 초기에 자신이 대응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사례 2-8>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동성애 혐오와 자기 혐오를 반복하는 신경증을 앓고 있다. <사례 2-7>은 자신이 이성애 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 2-7>와 <사례 2-8>은 모두 선임병에 의해 위력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 피해를 입었으며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하지만 피해가 반복되면서 자신 역시 즐겼을 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사례이다. 군대와 같은 폐쇄된 계급 사회에서 소극적 저항 이외에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당했다’는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 ‘나도 즐겼다’는 합리화를 선택하기도 한다.

“잠을 자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선임병이 배를 만지고 젖꼭지를 만지더니 성기를 만져서 충동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나도 좋아진다. 어떻게 하나. 그 당시에는 호기심에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나도 좋아진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도 된다. 왜 처음에 거절 못했는지. 자는척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볼 걸 그랬나. 아니면 옆으로 피해볼 걸 그랬나..” <사례 2-7>

“당한 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처음에는 아팠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익숙해져서 그게 아프지가 않다. 사실은...목이 메어 말도 잘 못하겠네..제가 여자친구 있거든요. 여자친구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그 고참이 내 여자친구를 겁탈하는 꿈도 꾸다.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로써 자격이 있는지..강간...내가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면...보통의 학교 커플이었다. (중략) 여자친구는 나를 남자친구라고 믿고 있는데 왜 보통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들킨하계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그 일 이후로 여자친구랑 성관계 잘 안되고 피하게 된다. 또 한가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례 2-8>

<사례 2-7>은 고참이 여자친구를 겁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데 이 꿈은 <사례 2-8>은 여자친구는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할 존재인데 자신 역시 강간을 당했으므로 여자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을 반영한다. 군대 생활 유지에서부터 대인관계의 문제, 자기 존중감의 하락과 성기능 장애 등의 피해후 유증에도 불구하고 남성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왔다. 남성 피해자들은 정체성과 자신의 욕망과는 별개로 피해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이며 자신이 겪은 것이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험 공개 강요 등 성희롱의 발생비율이 높고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성경험 공개 강요, 신체비하 및 욕설 등과 같은 행동은 군대 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취급되어왔으나, 실제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의 문제는 사병간의 문제를 넘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등 여성 비하적 문화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체적 성폭력의 경우, 지속성과 반복성의 정도가 높고 가해자 중 피해경험이 있는 자가 8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와 가해가 악순환되고 가해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일시에 근절될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여진다.

셋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계급별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성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피해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발생률과 발생빈도 상황 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와는 모순되

게 드러났다. 사병들은 성폭력을 사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능하면 문제삼고 싶지 않아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몸에 대한 권리의식에서 출발하는데, 이같이 권리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대가 인권교육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해주는 일이다.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이해와 교육, 법 제도 및 신고 절차 상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조사에서 새롭게 주목할 것은 기존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통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첫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 동성애자가 지목되지 않았다.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통념은 실제와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고율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성과로 보여진다. 둘째,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성충동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난다고 인식되어 온 것 역시 통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가해 이유에서 '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는데, 이 같은 낮은 수치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젊은 남자들이 성욕을 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잘못된 통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셋째, 남성간에는 강간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남성간 강간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남성간 강간 피해자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성의식 실태

성폭력 관련 경험연구들은 성의식이 성폭력 실행 가능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최근 국내 연구들은 차별적인 성역할을 인정할수록 성폭력을 허용하는 태도가 높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성폭력 실행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⁰³⁾.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성의식이 성폭력을 유발하고, 허용하며,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성폭력은 생물학적인 기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남성간 성폭력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¹⁰⁴⁾ 미국 내 남성간 성폭력 연구들¹⁰⁵⁾ 남성간 성폭력이 단순히 성적욕구의 발산이 아니라 남성의 우월함 극단적 남성성의 표출, 지배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남성간 성폭력의 문제도 성관계(gender relations), 성문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성의 사회적 구성과 성폭력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가 남녀관계의 평등성 성폭력에 대한 이해, 남성문화와 군대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탐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조사 분석한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의 결과를 보면서 성폭력의 실태와 이에 대한 사병들의 의식과의 관련성도 주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병들의 성의식 실태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1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의 상업화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2000; 이재경,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학논집」 1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2.

104) 남성간 성폭력 가해자들의 심층면접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인줄 몰랐다’, ‘군대에서 남성끼리 많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와 남성문화에 관한 이해가 남성간 성폭력의 실행과 관련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가해자들의 태도는 성의식이 성폭력을 어떻게 유발시키고 정당화하는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이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105) Human Rights Watch United States, *Predators and Victims: No Escape male Rape in U.S. Prisons*, 2001; T.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rassment in the U.S. Military*, NY, London: The Haworth maltreatment and Trauma Press, 2002; M. Scarce, *Male on Male Rape*, Cambridge, Massachusetts: Perseus Publishing, 1997.

에 관한 사병들의 성의식 파악에 일차 목적을 두고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첫째는 성평등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태도에 관한 인정도를 측정한다. 이는 성역할 의식과 성애의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이성간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보기 위해 성폭력에 관한 통념 수용도를 측정한다 내용은 주로 가해자의 특성, 성폭력 원인, 성희롱, 부부사이의 강간에 대한 통념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태도를 파악한다 이는 남성들 간의 성적언동, 남성간 성폭력 발생 요인, 남성간 성폭력 방지에 관한 이해를 포함한다 넷째는 앞에서 살펴본 성평등 의식, 성폭력 통념 수용도,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의 조사결과(평균값)를 가지고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가 나머지 두 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그래서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적 부분이 무엇인지 그 시사점을 읽고자 한다. 이로써 사병들의 성의식을 파악한다는 것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남성 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한 단서를 모색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1. 성평등의식

성평등의식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성역할의식과 성애의식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¹⁰⁶⁾. 여기서 성역할의식은 가정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태도에 관한 고정관념을 의미하고 성애의식은 성애적 태도와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국한하여 사용하였다 크게 보면, 성애의식 부분은 성역할의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성애의식을 따로 편의상 분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을 인정하는 정도가 높고, 성평등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의미화 하였다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이면 성평등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3점 이하이면 성평등적 성향이 있

106) 각 문항의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법조인 의식 설문조사', 한국여성개발원의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 개발' 등에 사용된 질문지를 참조하였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7> 전체 성역할 인정도

		빈도	전체	성역할의식	성애의식
전체응답자		664	2.79	3.02	2.48
현 상태	현역병	400	2.84	3.08	2.51
	제대병	264	2.71	2.93	2.41
계급	일등병	81	2.82	3.05	2.52
	이등병	104	2.82	3.06	2.50
	상병	101	2.83	3.05	2.52
	병장	107	2.89	3.15	2.54

응답 조사결과, 사병들의 전체평균 점수는 2.79점으로 성평등의식은 보통보다(3점) 조금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현역병(2.84점)이 제대병(2.71점)보다 성평등의식이 낮고 계급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병장의(2.89점) 성평등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역할의식의 평균점수는 3.02점이고, 성애의식은 2.47점으로 사병들의 성애의식이 성역할의식보다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 20대 젊은 세대에게 나타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최근 20대의 성의식은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상호적 친밀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혼전성경험의 시작 연령도 빨라지고, 남성의 외도에 대하여 더 이상 관용하지 않으며, 여성의 적극적인 성의 표현이 점점 용인되는 분위기이다¹⁰⁷⁾. 비록 성개방에 따른 성적 표현과 경험의 증가는 다소 변화되었다고 하나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유지됨으로 성평등의식의 향상과 직접 연결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성애의 측면에서 사병들의 의식은 진보적 성향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개방이 남성중심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위험성은 항상 있기에 성역할의식과 함께 볼 필요

107) 함인희,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제13집 2호, 2001; 이선희 외,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 관련 요인 분석」 「보건교육」, 보건증진학회지, 제17권 2호, 2000년 9월호.

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병들의 상반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성역할의식에서, 가족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4.05점)에 대해서는 강한 보수적인 성향을, 호주제의 폐지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2.94점) 보이는 반면, 가정 내의 여성의 위치(2.20점)와 역할(2.89점)에 대해서는 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성애의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성적으로 강하고 적극성을 가지도록 기대되어왔는데, 사병들은 이러한 전통적 남성역할에 강하게 동의하는 반면(3.19점),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었던 피임문제(2.06점)와 전통적으로 부재하다고 여겨왔던 여성의 성적욕망(2.17점)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표 78).

이렇게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높으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변화하는 성문화에 대한 남성들의 현실적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성격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진출이 증가하고, 성담론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와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면서 남성들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있다. 남성들은 급진적인 성의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자신도 진보적인 성의식을 따라잡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성적 특권으로 작용해왔던 전통적인 성역할과 태도를 쉽게 버릴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인 응답자들은 가장으로서의 남성 역할과 강하고 적극적인 남성성에 관하여 강하게 지지함으로써, 남성의 전통적 정체성을 고수하는 반면 여성의 변화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해서는 덜 전통적인 양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병들의 태도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성의식 변화에 대한 남성들의 불가피한 대응에서 비롯된다. 한 예를 들면, 최근 20-30대의 미혼남성들이 맞벌이 부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 그 이유는 남성들의 높은 성평등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력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있다. 남성들의 71.2%가 일하는 여성배우자를 원하나,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남성 또한 71.8%이라는 조사연구¹⁰⁸⁾ 이러한 현실을 입증한다. 성의식에 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연구도 한국남성이 여성보다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제적 성별

108) 한겨레신문 2003년 7월 22일자.

위계 의식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¹⁰⁹⁾.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사병들의 상반된 태도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의 상업화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2000

<표 38> 문항별 성평등의식 (N=664)

구분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평균 점수
성역 할 의식	1)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36.1	41.1	15.5	5.6	1.7	100.0	4.05
	2)여성은 사회적 출세보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4.2	20.9	40.5	28.2	6.2	100.0	2.89
	3)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12.7	13.6	47.6	19.3	6.9	100.0	2.94
	4)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한다**	28.3	34.3	27.4	8.0	2.0	100.0	2.21
성애 의식	5)남성은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강해야 남자답다	10.7	27.0	37.0	20.9	4.4	100.0	3.19
	6)피임은 여성의 일이다	1.7	6.3	16.0	48.8	27.3	100.0	2.06
	7)성적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은 여자답지 못하다	1.7	6.9	23.0	43.8	24.5	100.0	2.17

*빈도 (%)

**3), 4)문항은 통계과정 처리에서 '매우그렇다'를 1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전환시킨 경우이다.

2. 성폭력 통념 수용도

사범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인 통념을 중심으로 9문항을 구성하였고¹¹⁰⁾,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의식은 3점 이상이면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은 편이고, 3점보다 낮으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110) 성폭력통념수용도의 각 문항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통념 내용을 참조하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2.71점으로
서 성폭력의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보통보다 조금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역병(2.78
점)이 제대병(2.60점)보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자세한 내용은 <표 39> 와 같다.

<표 39> 전체 성폭력 통념 수용도

문항	총 평균 (649)	현재 상태		현역병의 계급별			
		현역 병 (388)	제대 병 (261)	이등 병 (79)	일등 병 (101)	상병 (97)	병장 (104)
1)성폭력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1.82	1.82	1.80	1.68	1.82	1.81	1.95
2)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2.35	2.39	2.30	2.28	2.45	2.51	2.32
3)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2.55	2.69	2.36	2.48	2.66	2.90	2.67
4)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	2.77	2.79	2.75	2.84	2.82	2.86	2.64
5)성폭력은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3.02	3.08	2.92	3.05	3.26	3.13	2.88
6)성폭력은 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	3.02	3.07	2.94	3.24	3.12	2.96	2.98
7)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3.14	3.32	2.88	3.28	3.20	3.38	3.39
8)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성적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2.90	2.94	2.84	2.85	2.99	2.97	2.96
9)부부사이에 강제로 발생한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2.81	2.96	2.60	2.94	2.87	3.10	2.91
총 평균	2.71	2.78	2.60	2.74	2.80	2.85	2.74

*빈도 (%)

**7)번과 9)번 문항은 통계과정 처리에서 평균점수를 전환시켜 처리하였으므로, 설문지의 문
항 표현을 부정적으로 바꾸었다.

문항별로 보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수용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성폭력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1.82점)이며, 성폭력 통념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3.14)는 내용이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보통보다 높은 문항은 주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사회구조적인 연관성에 관한 질문이다 5) '성폭력은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3.02점), 6) '성폭력은 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 (3.02점), 7)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3.14 점). 특히 남성의 성충동을 성폭력의 원인으로 보는 응답자는 42.1%이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성폭력을 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40.1%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사병들의 성폭력에 관한 이해가 깊다고는 볼 수 없다 비록 '성폭력은 사소하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강한 동의를 보이거나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나 가해자의 특성에 있어서 사병들은 성폭력의 문제를 개인 남성의 이상적인 성문제로 돌림으로써 비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두는 사람들은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성폭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병들의 응답은 이러한 통념을 그대로 보여준다. 성폭력을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의식은 성폭력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연관시키는데 실패하기 쉽다 이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연관시키지 못한 채 가장 높은 통념 수용도를(3.14점) 보인 사병들의 응답에서도 나타난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은 성폭력을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통념에 관한 것이다 1) 성폭력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1.82점). 2)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2.35점). 3)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2.55점). '4)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 (2.77점).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은 문항의 성격과 비교해본다면 사병들은 남성과 관련된 통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는 반면 여성과 관련된 통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 수용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성평등의식의 결과와 유사한데 응답자가 남성인 사병들에게 남성과 관련된 문항에 있어서는 보다 남성으로서의 입지가 강하게 개입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표출하게 된

다.

눈길을 끄는 점은 부부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응답률이(45.5%, 수용도 평균점수 2.81점) 높다는 점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가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못하는 현실에 비하면 사병들의 이러한 응답은 다소 진보적인 성향에 기울어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성희롱에 관한 인식은 부부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 정도를 보인다(36.3%, 수용도 평균점수 2.90점). 성희롱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성희롱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인지도가 낮을수록 성희롱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다¹¹⁾. 사병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이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다른 문항의 수용도와 비교하면 성희롱에 관한 인식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의 응답비율의 고른 분포를 보아 사병들간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빈도 수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의 자세한 내용은 <표 40>과 같다.

111) 직장 남성과 여성 425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실태조사(이재경 외, 2002, 80-82쪽)와 남녀 직장인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72-78쪽)는 남성들이 여성과 비교할 때 성희롱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인정도도 낮음을 보여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 연구 보고서에서 다른 변수의 요인보다는 그냥 '남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이의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표 40> 문항별 성폭력 통념에 대한 이해 정도 (N=649)

문항	총 평균 N649)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성폭력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1.82	0.6	5.5	9.7	43.0	41.1	100.0
2)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2.35	2.6	14.3	18.8	44.1	20.2	100.0
3)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2.55	6.2	15.3	22.3	40.2	16.0	100.0.
4)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	2.77	4.0	24.7	27.6	32.0	11.7	100.0
5)성폭력은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3.02	6.5	35.6	20.8	27.3	9.9..	100.0
6)성폭력은 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	3.02	11.1	29.0	19.0	32.5	8.5	100.0
7)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14	5.9	23.7	29.1	33.1	8.2	100.0
8)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성적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2.90	4.5	24.7	34.5	29.4	6.9	100.0
9)부부사이에 강제로 발생한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81	12.2	33.3	22.5	25.0	7.1	100.0

*빈도 (%)

3.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가. 군대 내 성적인 언어문화 실태

남성들의 군 복무는 개인적 생활이 노출되고 남성들간의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동거생활이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군 생활에서 사병들의 대화의 주제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차지한다

사병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와 성적 농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대 내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사병은 22.1%, '조금하는 편이다'는 35.3%로, 응답자의 57.4%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성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하지 않는 사병의 응답율은 14%이다. 또한 응답자의 60.6%가 군대 내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고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병은 11.3%이다.

<표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도 수에 있어서 계급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무의미하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경험 정도를 평균값으로 보면 높은 계급일수록 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대병(4.11)이 현역병(3.31점)보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t=3.61$). 성적 농담의 경우는 이등병상병-일등병-병장 순으로, 그리고 제대병(4.30)이 현역병(3.34)보다 '성적농담이 군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41> 전체 군대 내 성 이야기와 성적 농담 경험 빈도

문항	많이한다	조금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거의하지 않는다	전혀하지 않는다	계 (%) 빈도(명)
군대 내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정도 하십니까?	22.1	35.3	28.7	11.3	2.7	100.0
군대 내에서 성적인 농담은 어느정도 이루어집니까?	14.7	23.5	19.1	7.5	1.8	66.6
군대 내에서 성적인 농담은 어느정도 이루어집니까?	25.0	35.6	28.1	9.2	2.1	100.0
군대 내에서 성적인 농담은 어느정도 이루어집니까?	16.6	23.7	18.7	6.1	1.4	66.5

<표 42> 계급별 군대 내 성이야기와 성적 농담 경험 정도

문항	계급별				현상태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현역병	제대병
군대 내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정도 하십니까?	3.09	3.29	3.36	3.42	3.31	4.11
	80	104	102	109	401	265
군대 내에서 성적인 성적인 농담은 어느정도 이루어집니까?	3.21	3.40	3.28	3.43	3.34	4.30
	80	104	102	109	401	264

사병들이 성적인 대화나 농담을 하는 이유는 ‘군대생활의 활력을 위하여’(64.7%), ‘습관적으로’(25.5%), ‘인기를 얻기 위하여’(5.0), ‘성적욕구 발상의 방법으로’(1.7%), ‘기타’(2.7%) 순인데 [그림 13], 성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단조로운 군생활의 활력소이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군대 내에서 남성들간에 성적인 대화나 농담이 부대생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¹¹²⁾, 본 조사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된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성에 관한) 얘기 많이 하죠 개인적인 경험을 오히려 더 얘기하게 되고 재밌게 장난으로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심심하면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 명에서 얘기하면 별 사람들 다 나오는 거죠” <사례 2-1>

“남자들 끼리니까 속일 것도 없고, 해봤다고 하면은 짓곳은 병사들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병사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또 휴가같은 것 갔다와도 몇 명하고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난삼아 허리아프다고 하면 애고 무리했네.. 그러고 그런 장난을 칩니다.” <사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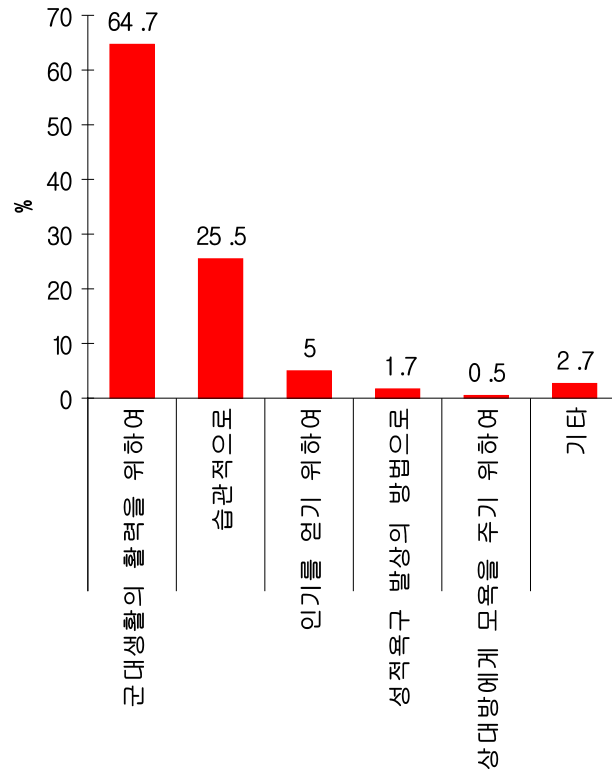
“심심하니까, “너 사회에서 뭐 했냐”, “ 여자랑 자봤냐” 계속 그런 식으로 , 저는 나같은 경우는 근무만 하고 싶은데 심심하잖아요. 고참을 즐겁게 해야되니까. 심심하

112)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78-83쪽; 장필화,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 몸, 성」, 또하나의 문화, 2000, 90-94쪽; 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7, 170-175쪽

게 되면 괜히 또 그니까 예전에 사귀던 여자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고참들이 다음날 부터 달라져요..... <중략> (샤워할 때) 그냥 성기크기를 보면서 놀리거나 (직접 만지지는 않구요?) 그냥 장난식으로 툭 만지고 .. <중략>.. 말을 하거나 툭치면서 많이 이 컷다고 그러고..에.. 거의 장난 식으로“ <사례 2-1>

‘심심해서’ ‘장난’ 식으로 이루어지는 성에 관한 이야기나 농담은 군생활의 일상적인 문화로서 사병간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에 관한 농담은 계급적 질서가 강한 사회에서 강제성이 가미되어 신체접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언어적 성희롱을 동반하기도 한다(사례 2-1, 사례 1-1). 더욱이 선임병들이 후임 병들에게 성경험의 이야기를 강요하거나 후임병에 대한 신체비하나 놀림으로 이어질 때, 성에 관한 이야기는 위계성이 결합된 언어문화가 된다는 점에서 강제적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¹¹³⁾

113) 언어적 성희롱의 실태와 위계성이 결합된 언어문화에 관한 분석 내용은 III장 참조.



[그림 13] 군대 내에서 성적인 대화나 성적 농담을 하는 이유 (N=625)

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

앞에서 군대 내 남성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언어문화나 성폭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과연 사병들은 군대 내에서 남성간에 일어나는 성적언동이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사병들의 인식과 태도를 묻기 위해 <표 43>과 같이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의 내용은 크게 1)군대 내에서 남성간 일어날 수 있는 언어적 육체적 성적 언동에 관한 태도 2)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남성간 성폭력의 발생 요인에 대한 태도 3)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을 방지

하는 방법에 대한 태도로 나누었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각 문항별 동의 정도를 평균점수로 본 내용은 <표 43>과 같다.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이며,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이다. 계급별로 보면,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계급은 상병(2,5,7,8번)과 병장(1,3,6번)이다. 현역병과 제대병을 비교하면, 대체로 비슷한데,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남성간 성폭력 해결에 대한 태도를 묻는 두 문항(7, 8번)이다.

<표 43> 전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동의 정도 (N=657)

구분	문항	평균	계급별				현상태	
			이등 병	일등 병	상병	병장	현역 병	제대 병
남성 간 성적 언동	1)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군대생활의 활력소이다	2.65	2.59	2.50	2.59	2.66	2.59	2.75
	2)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89	2.92	2.85	3.01	2.96	2.93	2.82
	3)남성간의 불쾌한 성적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3.07	3.10	3.07	2.94	3.11	3.07	3.08
	4)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1.87	1.68	1.94	1.91	1.88	1.87	1.88
남성 간 성폭 력발 생	5)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다	2.50	2.48	2.41	2.74	2.63	2.57	2.40
	6)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적접촉은 군대생활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이다	1.98	1.84	1.91	1.93	1.98	1.92	2.08
남성 간성 폭력 방지	7)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	3.26	3.32	3.41	3.64	3.61	3.51	2.90
	8)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3.01	3.11	3.27	3.44	3.34	3.30	2.57

1) 군대 내 남성간 성적 언동에 대한 태도

<표 44> 문항별 군대 내 남성간 성적언동 이해

구분	문항	매우 그렇 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전혀그 렇지않 다	계 (N=657)	평균 점수
남성 간 성적 언동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4.4	25.3	34.9	25.4	10.0	100.0	2.89
	남성간의 불쾌한 성적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7.5	27.1	36.5	23.0	5.9	100.0	3.07

*빈도 (%)

남성들 간에 발생하는 성적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성폭력'이라는 범주 안에서 인지되거나 논의된 사회적 경험은 거의 없다. 남성간 일어날 수 있는 성적언동이 부적절한 경우에 성폭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남성끼리 흔히 있는 언동'으로 무마되어진다. 남성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적절한 성적언동이 남성들 사이에서 성폭력으로 가시화되거나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에 관하여 사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군대 내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병은 35.4%이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34.9%,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는 29.7%이다. 동의 정도의 평균점수(2.89)로만 본다면, 가벼운 성적언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조금 높은 편이다. '남성들 간의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병은 34.6%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병은 28.9%이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보통이다'라는 입장은 36.5%이다. 이 문항에 동의하는 평균점수는 3.07점으로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동의 정도는 보통(3점)보다 조금 높다.

동의 정도의 평균점수나 빈도 수만을 보면 '남성간의 성적 언동이 심각하고, '불쾌

한 성적언동은 성폭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있으나, 남성간의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의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병들의 응답률이 특정한 응답범주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¹¹⁴⁾, ‘보통이다’를 중심으로 ‘조금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 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성적언동에 대한 사병들간의 인식 차이가 크고, 성적언동과 성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공통의 의식을 발전시키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사실상, 성적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이 흔한 일이나 그러한 성적언동이 공론화된 경우도 거의 없고,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내용이 개발되어 사병들에게 도움이 된 경우도 없는 까닭에 남성들간의 성적언동의 개념이나 인식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남성간의 성적언동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 ‘남성들의 사회성으로 읽혀지는 남성문화도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병사들하고 너무 친하고 술도 같이 나눠먹고, 제 무릎을 비고 자거나 이래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아, 우리는 이렇게 친하구나 했는데... 진짜 장난도 잘치고.. 그런 허물없는 사이에서 장난을 친 건데.. <중략>.. 주변 병사들도 그냥, 또 장난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지. 그걸 제가 알았으면 조금 어떻게 화를 내거나 했으면 되는데, 어... 애하고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딱 나오니까.. 재가 이럴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었나? 이런 기분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하다 못해 뭐 저처럼 뽀뽀를, 장난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뽀뽀를 한다는 거는 거의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지럼 피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합니다. 하다 못해 샤워를, 남자끼리 샤워하다 엉덩이를 탁 치거나... <중략>... 옆에 보고 막 너의 성기가 되게 크다, 너 여자친구하고 몇 번을 같이 자봤냐, 이런 것도 뭐 여성분한테 성추행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는 뭐 거의 일상생활, 자연스럽습니다.” <사례 1-6>

<사례 1-6>에서 보듯이, 남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에 관한 이야기나 성적 행위는 ‘친밀감’, ‘장난’의 문화로 이해되고, 일상적인 생활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114) 4)번 성기만지기, 6)번 남성간 성폭력 발생 원인, 7)번 성폭력에 대한 저항가능성에 관한 문항은 하나의 응답범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분명한 사병들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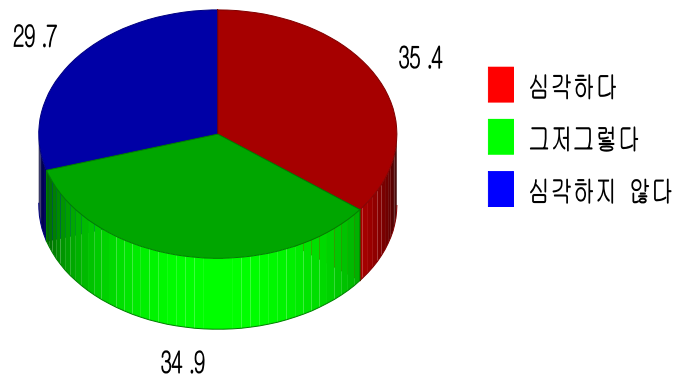
성적 언동의 문화는 '성적'이라기보다는 남성들의 관계를 위고 남성임을 확인하는 공통된 유대감을 내포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병은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못하고 소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폭력 사건으로 자살한 병사에 대한 <사례 1-3>의 소견은 이를 대변한다. "그 사건을 보고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못하고 소심하니까 그렇게 받아드린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사례 1-3>의 말처럼, 군대 내에서 남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성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군대에서 이러한 남성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군대 내 성적 농담이나 접촉은 견디어야한다고 말한 <사례 2-1>와 <사례 2-2>의 지적처럼, 개인적인 성격문제로 간주된다.

"남자들 밖에 없으니까 (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탈출구를 삼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막 물어보죠. 심심하니까.. <중략>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사례 2-1>

"거의 일반적일 꺼예요. 아마.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군대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고?) 이런다고 해서 나만 더 손해보고." <사례 2-2>

'남자라면' 할 수 있는 것 '남자들끼리는 혼한 일'라는 말에서 표현되듯이, 성적 언동을 통한 남성들 관계의 친밀감 형성은 남성적 사회성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다를바 없다. 남성간의 성적 언동이 어떠한 관계성을 만들고 어떤 의미를 창출하는지는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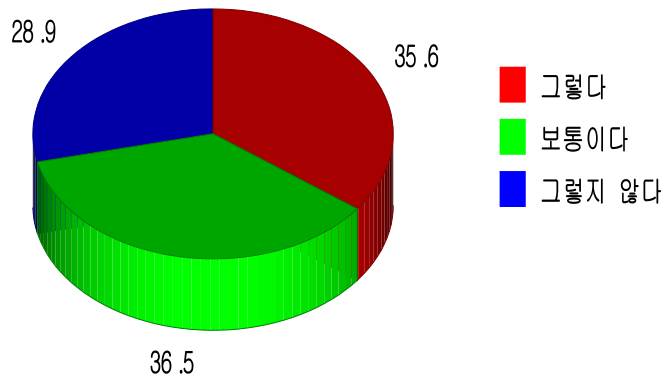
성적 언동의 심각성



[그림 14] 성적언동의 심각성 정도

: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불쾌한 성적언동은 성폭력이다



[그림 15] 불쾌한 성적언동은 성폭력이라는 인지도
: 남성들간의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는 성폭력이다 (%)

계급별로 보면, 남성간 성적언동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단지,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문항에서 계급적 차이의 유의미성을 보인다 <표 45> 계급이 높을수록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현역병과 제대병의 응답비율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 간 인식 차이에 있어서 큰 유의미성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대병이 현역병보다 '남성간 성적 언동이 심각한 편'이라고 여기고 군대생활의 활력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표 45> 계급별 군대 내 남성간 성적 언동 심각성 정도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응답범주	계급별*					현상태		
	일등병	이등병	상병	병장	총계	현역병	제대병	총계
그렇다	24.0	25.8	32.7	40.6	31.3	30.7	28.1	29.7
매우그렇다	10.1	5.0	5.0	1.9	5.2	5.1	3.4	4.4
조금그렇다	13.9	20.8	27.7	24.5	26.1	25.6	24.7	25.3
보통이다	41.8	37.6	35.6	28.3	35.4	36.0	33.1	34.9
그렇지않다	34.2	36.6	31.7	31.1	33.3	33.3	38.8	35.4
그렇지않다	26.6	27.7	26.7	16.0	24.0	23.9	27.8	25.4
전혀그렇지않다	7.6	8.9	5.0	15.1	9.3	9.4	11.0	1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chi^2=34.755$ df=16 p=0.004

2)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발생 요인에 대한 태도

남성간 성폭력의 발생이 남성성과 관련있다는 조사연구들은 남성성의 손상을 위한 회복으로서, 또는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구로서 남성이 여성에게 하듯이 남성간의 성폭력은 자행한다는 것을 밝힌다¹¹⁵⁾. 그러나 본 조사 응답자의 59.5%는 '남성간의 성폭력이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21.5%만이 '그렇다'는 동의를 하였다. 사병들은 군대 내 남성간의 성폭력이 남성성의 수행과 큰 관련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앞의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사병들은 남성간 성폭력이 남성성과 무관하지 않는 문제임을 스스로 노출시킴으로써 군대 내 성폭력에 관한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사병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로 외모나 태도가 여성적이거나(51.3%) 연약해 보이는 사람(18.3%)이라고 지적한다¹¹⁶⁾. 또한 '맘대로 다

115) Human Rights Watch United States, Predators and Victims: No Escape male Rape in U.S. Prisons, 2001, 맥물런(McMullen)은 Male Rape(1990)에서, 남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것은 신체적인 만족이라기 보다는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7년, 234쪽 재인용).

116) 이에 관한 통계와 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 85, <표 24>, <표 25> 참조. 남성간 성폭

루거나 괴롭히려는' (32%) 목적에서 가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병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남성성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발생의 한 요인으로서 남성성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관점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성간의 성폭력에 관한 사병들의 인식은 일관적이지 않는 결과에서 보듯이 인식의 혼란스러움을 드러낸다.

또한 성폭력 발생의 요인으로서 군대특성을 염두에 두고 사병들에게 성적 접촉은 군대생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사고인지를 물었다. 군대생활의 특성이라면, 내무반의 시설 구조나 군 복무 시설의 조건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부대 환경이 남성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접촉을 성폭력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다. 사병들은 '성적 접촉이 군대 생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라는 생각에 압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77.5%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고 답한 반면, 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16.3%이다. 다른 문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동의를 보인 이 문항은 동의도 1.98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사병들의 이러한 낮은 동의율은 '남성간 성적 접촉과 성폭력 발생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간 성폭력 방지에 대한 태도에서 연관지어 살펴보겠다.

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외모나 행동에서 '여성적'인 남성을 지적한다는 것은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인식이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있음을 보여준다.

<표 46>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발생 요인에 대한 태도(N=657)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평균 점수
남성 간성 폭력 발생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다	6.1	15.4	19.0	41.4	18.1	100.0	2.50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적 접촉은 군대생활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이다	0.5	5.5	16.3	47.2	30.6	100.0	1.98

*빈도 (%)

3)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방지에 대한 태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적 접촉이 군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는 의견에 강하게 동의하는 사병들의 의견은 ‘성폭력 발생은 방지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라고 생각된다. 이는 군대 특성의 하나인 계급적 위계질서가 성폭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하는 문항과 견주어볼 수 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는 문항에 ‘저항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병은 46.8%로서 ‘저항할 수 없다’는 응답보다(35.9%) 높다(동의정도 평균점수 3.26점). 특히, 제대병을 제하고 현역병만을 본다면 그 동의율(62.3%)은 현저히 높다. 이러한 태도는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군대내부의 성폭력대처에 대한 변화된 현실 때문에 제대병은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현역병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해석에는 여러 반대증거들이 존재한다. 성폭력에 관한 피해당사자들의 낮은 신고율(4.4%)과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불이익이 두려워서’(1순위 37.1%, 2순위 32.2%),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1순위 8.6%, 2순위 33.9%), 소용이 없어서 (1순위 27.1%, 2 순위 22.0%)를 꼽아 신고를 할 경우 부대 내 생활과 관계에서 피해자의 불이익이 우려스러운 정도가 높은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2002년 군대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

군인의 60.32 %가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했고 65.69%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한 점을¹¹⁷⁾ 비추어 보면 군대가 후임병이 상임병의 성폭력행위에 저항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되어서 이런 제대병과 현역병의 차이가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성폭력의 발생이 군대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현역병의 인식수준을 드러낸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성교육 및 개인의 인권교육 강화(26.2%)'를 첫 번째로 꼽은 사병들의 태도에서¹¹⁸⁾ 엿볼 수 있다.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사병들의 인식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군대의 성폭력 현실과 불일치한 답변을 주는 경우는 성폭력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개인의 책임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나타난다. 사병들이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생각한다면,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조심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강한 긍정의 답변을 보여야 하나 사병들은 오히려 중립적인 태도(3.01점)를 보인다. 이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6.2%에 불과하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38.5%이며, '보통이다'는 입장을 취한 응답자는 25.3%이다. 결국 사병들은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남성간 성폭력의 성격이나 원인에 관한 사병들간의 인식 차이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47>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방지에 대한 태도 (N=657)

구분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평균 점수
남성 간 성폭 력 방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	25.9	20.9	17.4	25.7	10.2	100.0	3.26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13.5	22.7	25.3	28.3	10.2	100.0	3.01

117) 위의 보고서, pp.89-92

11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79-182쪽 <표 59>, <표 60>, <표 61> 참조.

계급별로 보면, 상병-병장-일등병-이등병 순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의견에 더 동의 하며, 현역병(62.3%)이 제대병(36.9%)보다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표 48).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없다'는 답변에 있어서는 계급이 낮을수록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이등병의 응답율(30.4%)과 병장의 응답율(19.9%)은 조금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응답자들의 현재의 위치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높은 계급일수록 자신의 계급성이 갖는 권력을 실제보다는 더 경시하려는 심리가 있고 낮은 계급에 있는 사병들은 선임병의 권력이 도전하기 힘든 현실이다. 계급에 따라 동의율의 차이를 보이는 응답결과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은 계급의 위계성과 결합되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현역병(62.3%)과 제대병(36.9%) 응답률의 큰 차이이다. 이는 두 집단이 처해 있는 환경조건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문제시되면서 군대 내 성폭력 설문조사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현역병에게 반영되었다면 제대병의 경우는 설문조사 응답이 군복무를 마치고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므로 보다 더 객관적 입장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역병과 제대병의 인식의 차이는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의 응답 결과와도 연결된다. '남성 간 성폭력은 계급에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는 문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더 강하게 보인 제대병은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56.6%) 경향이 강하다. 말하자면, 제대병은 현역병보다 '성폭력 발생 시 저항하기 힘들고 개인이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서 성폭력을 방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표 49>

<표 48> 계급별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 이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

응답범주	계급별(N=636)*						현 상태(N=657) **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제대병	총계	현역병	제대병	총계
그렇다	44.3	52.5	62.4	52.9	37.8	47.3	62.3	36.9	46.8
매우그렇다	26.6	22.8	34.7	34.0	20.5	26.1	29.7	20.2	25.9
조금그렇다	17.7	29.7	27.2	18.9	17.3	21.2	23.6	16.7	20.9
보통이다	25.3	20.8	12.9	27.4	11.2	17.5	21.8	10.6	17.4
그렇지않다	30.4	26.7	24.7	19.9	51.1	35.2	24.9	52.4	35.9
그렇지않다	21.5	18.8	16.8	14.2	37.8	25.5	17.5	38.0	25.7
전혀그렇지않다	8.9	7.9	7.9	5.7	13.3	9.7	7.4	14.4	10.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chi^2=63.891$ df=16 p=0.000 ** $\chi^2=54.052$ df=4 p=0.000

<표 49> 계급별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방지에 관한 이해

군대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응답범주	계급별 (N=636)*						현상태 (N=657)**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제대병	총계	현역병	제대병	총계
그렇다	40.5	43.6	52.5	47.2	20.1	36.0	46.2	21.3	36.2
매우그렇다	12.7	20.8	19.8	18.9	6.4	13.7	18.5	6.1	13.5
조금그렇다	27.8	22.8	32.7	28.3	13.7	22.3	27.7	15.2	22.7
보통이다	29.1	29.7	23.8	26.4	22.9	25.5	27.4	22.1	25.3
그렇지않다	30.4	26.7	23.8	26.5	57.1	38.5	26.4	56.6	35.9
그렇지않다	19.0	15.8	18.8	20.8	43.4	28.3	18.3	43.3	22.7
전혀그렇지않다	11.4	10.9	5.0	5.7	13.7	10.2	8.1	13.3	13.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chi^2=77.384$ df=16 p=0.000 ** $\chi^2=69.792$ df=4 p=0.000

다.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와 인식의 차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하여 사병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사병들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III장의 경우 성폭력의 실태에서 나타나는 사병들의 실제 행동과 본 장에서 나타난 사병들의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차이점들이 있다. 군대 내 남성들 간의 성적언동에 대한 사병들의 태도와 군대 내 성적언동의 실제 효과의 차이 신체접촉의 허용의 차이, 성폭력 시 저항가능성에 대한 사병들의 행동과 생각의 차이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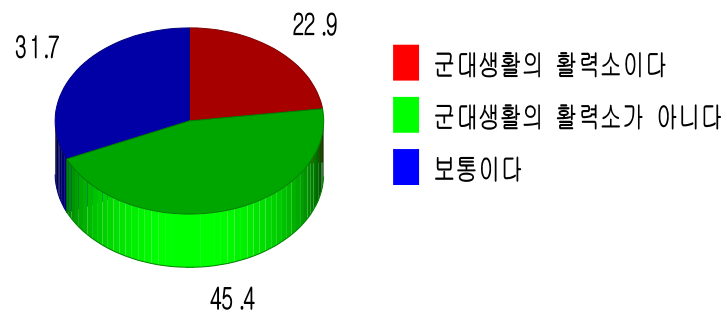
이는 사병들이 남성들 간의 성적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수준과 실제 군 생활에서 성적행위를 허용하는 정도, 이해하는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식과 행동사이의 간격은 성폭력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실제 일상적 생활에서는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성폭력을 남성문화로 환원하는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뿐만 아니라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성교육이 실제와 거리가 있는 내용이거나, 군대 내 성교육이 실시된다고 해도 성교육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1) 군대생활의 활력소로서의 성적언동의 효과

성의식 실태에서 사병들은 남성간의 성적언동이 군대생활의 활력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군대생활의 활력소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사병은 22.9%이고, 동의하지 않는 사병은 45.4%이다. 그러나 실제로 군대생활에서 성적언동은 군대생활의 활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심심한 '군대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응답자가 64.7%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그리고 심층면접에서도 성적언동은 심심해서, 또는 장난으로 남자들끼리 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¹¹⁹⁾. 사병들은 성적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심각한 문제이며(35.4%), 불쾌한 성적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가 성폭력에 해당된다(34.6%)고 생각하나, 실제적인 군대생활에서는 장난이나 친근감으로, 나아가 군대생활의 활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허용하고 있다.

11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74-76 참조.

성적언동의 효과



[그림 16] 남성간 성적언동과 군대생활의 활력소 여부
(N=657)

실재 성적연동의 이유



[그림 17] 군대 내에서 성적인 대화나 성적 농담을 하는 이유 (N=625)

2) 신체 접촉의 허용정도

성의식 조사에서 사병들은 대체적으로 신체접촉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5.6%가 '강제적이지 않아도 남성의 성기나 몸 만지기 등 신체적인 접촉에 거부감이 든다'고 답변했다. 특히 남성성기만지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압도적으로 높다(허용도 1.87점). '남성들간의 성기 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문항에 77.3%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응답했고, '있을 수 있다'고 허용한 응답자는 8.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기만지기는 언어의 성희롱이나 가벼운 신체접촉과는 다른 의미로서 사병들에게 인지되어 있다. 남성들에게 성기는 사회화과정에서 남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매개인 만큼

성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성기 이외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덜 부여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군대 내에서 성기 만지거나 신체 접촉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¹²⁰⁾, 사병들은 이를 ‘남성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장난 또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성의식 조사에서 사병들은 ‘이러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으로 사례를 묻고 질문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사병들이 가해자가 ‘친근감으로’ 성적 접촉을 한다고 생각하며(26.2%), 가해자는 ‘장난삼아’ 성적 접촉을 하고(42.9%), 피해자는 ‘장난삼아’ 성적접촉을 당하였다고(54.2%) 여긴다¹²¹⁾.

<표 50> 군대 내 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 허용도

구분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N=657)	평균 점수
	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0.3	7.9	14.5	33.2	44.1	100.0	1.87

3)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

성폭력 실태조사는 남성간 성폭력에 있어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²²⁾.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저항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군대 내 성폭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병들이 남성간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의

120) 본 조사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 발생... 자세한 내용은 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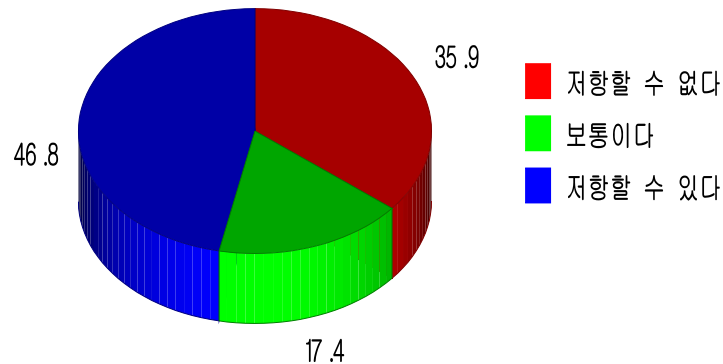
121)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러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인 사병들과 다른 자신의 입지에 따른 맥락에 관한 이해가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수치와 심층 분석은 참조하라

122) 듣거나 목격한 경우, 가해자가 선임병이었다는 응답은 81.7%,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선임병이었다는 응답은 71.1%이다. 자세한 내용은 쪽 참조

46.8%가, 특히 현역병의 62.3%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폭력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저항을 보인 경우는 17.9%에 불과하다. 혼자서 참고 견디거나(52.2%),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22.4%) 가해자에게 항의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보다 약 4배 더 많다. 또한 성폭력 시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보다는(4.5%), 담담하게 보고 있거나(65.7%) 못 본 척 외면하는 경우(9.0%)가 훨씬 많다¹²³⁾. ‘저항할 수 있다’는 사병들의 태도는 실제적인 생활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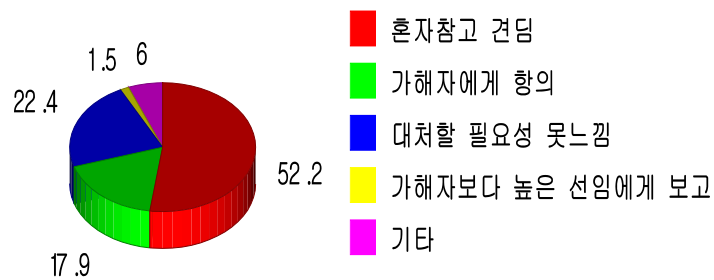
저항가능성



[그림 18]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저항 가능성에 관한 이해 (N=657)

123) 성폭력 시 주변인들의 반응에 관한 자세한 실태와 분석은 쪽 참조

실제 피해자 대응



[그림 19]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저항하는 경우 (N=67 17.9%)

4. 성의식과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가 성역할 의식, 성애의식, 그리고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상호관계성이 있을까? 이 상관성의 여부를 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상관관계성을 가지며, 성평등의식과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평등의식에서 성애의식만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반면 성역할의식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성폭력에 관한 통념 수용도가 낮을수록 성애부분에서 차별적인 성역할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높다고 볼 수 있다<표 51>. 이는 남성간 성폭력의 문제가 이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남녀평등의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51>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성의식 상관관계

		성평등의식			성폭력 통념수용도
		성역할의식	성애의식	총계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단순상관관계	.076	.208**	.176**	.330**
	유의확률	.051	.000	.000	.000

**p<0.01 *p< 0.05

가. 성평등의식과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각 항목별로 본다면 <표 52>와 같다.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의식과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반면, 성애의식은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태도와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태도를 묻는 총 8개의 문항 중 5개 문항과 정적(+) 상관관계를, 1개 문항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성애측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동의할수록 군대 내 남성간의 성폭력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이고,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며, '남성간의 성기 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다.

<표 52> 성역할의식/성애의식과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상관관계

구분	문항	성역할의식	성애의식
남성 간 성적 연동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군대생활의 활력소이다	.043 .268	.102** .008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027 .491	.055 .160
	남성간의 불쾌한 성적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125** .001	-.099* .011
	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072 .064	.085* .028
남성 간성 폭력 발생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다	.134** .001	.261** .000
남성 간 성폭 력방 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적 접촉은 군대생활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이다	.021 .586	.114** .003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	-.024 .540	.052 .182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123** .001	.183** .000

**p<0.01 *p< 0.05

·성역할의식과 성애의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경향성이 높다.

성애의식 부분에서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태도와 두드러진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정한 항목은 '남성은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강해야 남자답다'라는 문항이다. '남성은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강해야 남자답다고 생각할수록 '남성간의 성적연동은 군대생활의 활력소'이며 '성희롱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대 내의 남성간의 성폭력은 군대특성상 일어나는 사고이자,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조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상관관계성은 '자신을 남성답다고 여기는 성향이 강할수록 성적 폭력성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2000)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

남성성에 관한 문항은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도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성적으로 강해야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클수록 성폭력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3> 남성성과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상관관계

구분	문항	남성성
남성 간 성적 언동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군대생활의 활력소이다	.095* .014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009 .818
	남성간의 불쾌한 성적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078* .044
	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025 .145
남성 간 성폭 력발 생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다	.145** .000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적 접촉은 군대생활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이다	.096* .013
남성 간 성폭 력방 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	-.029 .460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090* .021

**p<0.01 *p< 0.05

나.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는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남성간 성폭력에 관한 태도를 묻는 총 8개의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하고 6개 문항과 정적(+)인 관계를, 1개 문항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말하자면, 성폭력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남성간 성폭력을 인지하는 의식은 높다

문항별로 본다면, 성폭력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남성간 성적언동은 성폭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성적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군대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도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나고', '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군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

**<표 54>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상관관계**

구분	문항	성폭력 통념 수용도
남성 간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군대생활의 활력소이다	.167** .000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34** .000
성적 연동	남성간의 불쾌한 성적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197** .000
	남성들간의 성기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34** .000
남성 간 성폭 력발 생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다	.259** .000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적 접촉은 군대생활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이다	.151** .000
남성 간 성폭 력방 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	.042 .284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334** .000

* p<0.01 **p<0.01

5. 소결

사병들의 성의식 실태 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병들의 성역할의식은 성애의식보다 보수적인 경향성을 더 보인다 항목별
로 살펴보면, 사병들은 가족부양자로서의 가장과 강한 남성성에 대해 높은 동의를 보
임으로써 전통적 남성 역할을 지지하고 보수적 성향을 더 띠는 반면 여성의 성역할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사병들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약화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성의식 변화와 변화하는 성문화의 불가피한 대응적 태도라고 보여진다.

둘째, 사병들은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조금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높은 문항은 주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원인 가해자의 특성, 사회구조적인 연관성에 관한 통념이고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낮은 문항은 성폭력을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성폭력의 발생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통념에 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병들의 성폭력에 관한 인식은 성폭력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기보다는 기본적인 이해에 머물고 있다 하겠다.

셋째, 전체적으로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사병들의 태도는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특정한 입장을 나타내기보다는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성격을 띤다. 또한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 사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 군생활에서 많은 사병들은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허용하고 이를 남성의 문화 또는 사회성으로 이해하면서 성폭력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비 일관적인 사병들의 태도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본 적 없는 사회적 경험의 부재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남성간 성폭력의 문제를 개인의 성문제로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남성끼리 허용되는 문화로 사소하게 여기는 이해 방식은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모순적 태도를 가져온다. 따라서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남성간 성폭력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동성애적인 성적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인 구도 내에서 계급의 위계성과 결합된 권력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간 성폭력을 흔히 있는 남성의 문화로 해석하기보다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남성간 성폭력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남성간 성폭력에 적절한 정치적, 법적 언어의 개발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태도가 다른 성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았다. 사병들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성애의식과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말하자면, 성의 측면에서 전통적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약할수록 그리고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 수용 정도가 낮을수록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높다. 또한 강한 남성성의 특성을 수용할수록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고,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낮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 남성성에 대한 이해, 성역할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폭력 실행과 남성성의 관계, 군대문화 등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발생 요인에 대한 보다 심화된 경험적 연구도 요청된다.

V.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식 실태와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군대 내에서 실시되는 성폭력 관련 대책들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 다음, 그 문제점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인 차원에서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둘째, 제도적인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와 그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군대 내 성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성폭력 예방과 성의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진단한다.

국방부의 경우 이들 법적 제도적 의식적 개선을 위해 2001년 성폭력을 성군기 위반사고로 규정하고 지휘체계 개선 등을 비롯해 제도적 법규 집행상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군대 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도개선 보다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군대내의 성폭력 대처 구조에 대한 총체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평가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따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장에서는 성폭력 대처 시의 법적, 정책적 관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괄적인 수준에서의 대안정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1.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

군대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성군기 위반사고라고 통칭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제 686호(2001. 6.11) 성군기 위반사고방지에 관한 지침을 보면 성군기 위반사고를 "성을 매개로 한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를 말한다" 고 하여 성군기 위반사고를 총괄적 개념으로 칭하고 있다¹²⁴⁾. 이러한 성군기 위반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은 균형법이나 제도개선에 기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가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살

124) 국방부, 성군기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제3조.

펴보려고 한다.

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과 문제점

군대 내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군형법²⁵⁾,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이 있다. 군대 내 성폭력에는 일차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남성간 성폭력에 해당하는 후임병에게 성경험 발표 및 성행위 흉내내기 강요 선임병이 후임병의 성기 만지기 상관이 하급자에게 구강성교 요구, 침상·침낭에 동숙 요구, 애무 행위, 후임병에게 구강성교, 자위행위 강요 등은 '성추행'으로 군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¹²⁶⁾

군대내 성폭력에 적용가능한 법률을 보면²⁷⁾ 군형법 외에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되므로 군대 내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률 자체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남성간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규정은 입법목적이나 규율하고자 하는 성폭력의 개념이 모호하고, 성폭력에 관한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법의 적용이 어렵다.

1) 군형법 상 추행죄의 입법목적과 계간처벌

군형법은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연성¹²⁸⁾이나 강제성

125) 군형법은 1962년 제정되었으며, 현행 군형법은 이후 12차례 걸쳐 개정되어 2000년 12월 26일 공포, 2001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형법은 해방 후 군정하에서 미군정법령 제86호 제4호 조선경비대법과, 이후의 국방경비대법 및 해안경비대법을 모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경비대법 및 국방경비대법, 해안경비대법은 미국의 전시법 및 해안경비대법을 모방하였으며 군형법은 일본의 구육군형법을 모방하여 문제가 많았다. (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일신사, 1996, p.19)

126) 육군, 「사고예방종합대책 추진방침」, 2003, p.12.

127) 육군, 「사고예방종합대책 추진방침」, 2003, p.15.

128)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보통의 음란행위는 개인의

이 없는데도 처벌조항을 둔 것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의 일상생활과 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¹²⁹⁾ 고등군사법원의 판례는 군형법 상 추행죄의 입법목적에 대해 ‘군사회 기강 문란 및 전투력 약화, 개인의 성도덕 관념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으며,¹³⁰⁾ 군형법 상 추행죄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법피적용자¹³¹⁾간의 행위에만 적용될 뿐 민간인과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¹³²⁾¹³³⁾

군형법상 추행죄의 목적은 일반적인 성폭력이 의도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보다는 군대사회의 기강 및 전투력 유지에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이 반영된 것이 계간의 경우 합의에 의한 계간과 합의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 성추행으로서의 계간이 같은 추행이라는 범주 안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율영역에 맡기지만 공공연한 음란행위는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처벌하게 된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129)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 277.

130) “1990.3.30. 고등군사법원 99노31”, 「군사법원 판결요지집: 2002 대법원·고등군사법원 판결」, 고등군사법원, 2002, p. 185.

131) 군법피적용자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이다.

132) “1973.9.25. 대법원 73도1915”, 「군사법원 판결요지집」, op cit, p. 184.

133) 기타 판례의 사안을 보면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손으로 만지고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교하는 시늉을 한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한 사례와 (“2000.12.26. 고등군사법원 2000노524”),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이나 이마에 1회 입맞춤을 한 행위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1990.3.30. 고등군사법원 99노31”)

<표 55> 국방부 지침상의 추행(계간)의 정의 및 처벌기준

추행(계간)의 정의	이는 영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에 의한 성추행 행위를 말하며 군대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고참병, 또는 상급자라는 계급이나 직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후임병 또는 하급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의에 의한 계간도 처벌을 받는다.
처벌기준	· 합의에 의한 경우: 군형법 제 92조(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강제에 의한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폭행·협박으로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생가능한 유형	성행위 묘사 강요, 신체 만지기 및 애무, 자위행위 강요, 단순 추행 성기애무(오럴 섹스) 강요.

*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 p 10

동의를 의한 성행위와 강제적인 추행 혹은 강간을 같은 맥락에서 추행으로 규정짓는 것은 군기문란 사고¹³⁴)라는 관점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인 ‘강제성’을¹³⁵) 기본 기준으로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의에 전제된 성행위에 대한 규정이 동성애에 한정되어 있어 동성애 폄하와 차별을 드러낸다. 계간이라는 용어 또한 남성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명칭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p>▶ 부대 내 사무실에서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서 불건전한 성행위 · 인터넷 채팅이나 E-mail을 이용한 성적 대화 등 불건전한 행위와 이를 매개로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 · 사무실 전화, 개인전화(핸드폰)을 이용한 불건전한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
<p>▶ 군속소(공관, 관사 등)에서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외부의 이성(직업여성을 포함)을 군 속소로 유인해 불건전한 관계를 갖는 행위 · 상관, 동료, 부하의 군 속소에서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
<p>각군의 지원부대(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휴식간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 사고</p>
<p>원조교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모든 성군기 위반 사고</p>

*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 유형 (국방부, 앞의 자료, 2003, p. 11)

135) 판례도 군형법상 추행이 형법상 범죄에 대해 단지 폭행, 협박의 요소만 없는 특별법의 관계라고 설명하면서도 군사회의 기강 및 전투력 운운함으로써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990.3.30. 고등군사법원 99노31”)

2) 남성간 강간의 불인정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적용되는 현행 균형법 형법,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 성보호법 등은 남성간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추행'으로만 평가한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법이 남성간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표 57> 국방부 지침의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

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여자를 간음하는(밑줄은 강조를 위하여) 것으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재판 회부) 할 수 있는 범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강간과 동일하나, 상대방을 여자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포함하며, 추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강간과 구별된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 욕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통상 성추행이라고도 한다.

*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 p 9

균형법에는 제16장 기타의 죄에 제192조 추행죄가 규정되어 있어,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형법은 공연성을 띤 음란행위와 강제적인 추행만을 범죄로 하고 있는 반면, 균형법은 그러한 요건 없이도 일반적인 추행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협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¹³⁶⁾

군대 내 성폭력에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상해·치상, 강제추행 살인·치사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¹³⁷⁾ 성폭력특별법 중에서 특수강제추행 등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 해당한다¹³⁸⁾ 특수 강제추행은 군대 내에서 한 명의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추행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선임병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 등 군대의 위계질서

13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p.160.

137) 형법에서 군대 내 성폭력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

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¹³⁹⁾에 의한 추행을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¹⁴⁰⁾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은 남성간 성폭력을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행'으로만 규정하고 있다.¹⁴¹⁾ 형법상 강간죄(제297조)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죄 명	조 문	구성요건	양 형
강제추행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위와 같음
미수범	300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미수	기수범의 형을 감경가능
강제추행 상해·치상	301조	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살인·치사	301의 2조	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	살해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8) 성폭력 특별법에서 군대 내 성폭력에 적용가능한 조항

죄 명	조 문	구성요건	양 형
특수강제추행등	6조 2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1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12조	위 죄의 미수	기수범의 형을 감경가능

139)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말한다. 위계는 속임수 또는 유혹을 포함하며, 위력에는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재상, 앞의 책, p. 38.

140) 제10조 제2항, 제30항, 4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1) 국방부의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에 따르면 성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여자를 간음하는 것으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는 강간과 동일하나, 상대방을 여자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포함하며, 추행을 한다는 점에서 강간과 구별된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 욕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강간과 추행의 분류가 이성간의 성행위를 기준에 근거하므로 남성간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

행위의 객체가 부녀(여성)로 한정되고, 항문성교 및 구강성교는 간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군대내 성폭력 사건 실태에 관한 국정감사자료¹⁴²⁾에서 영내사건을 '계간/성행위 흉내내기/신체애무/기타 추행'¹⁴³⁾으로 모호하게 분류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성간 성행위만을 기준으로 한 이 규정은 현행법의 남성간 성폭력의 개념을 제한한다. 남성간 성폭력을 '추행'으로만 한정지어 남성간 성폭력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강간과 같이 심각한 남성간 성폭력을 처벌하기 어렵게 하고 남성간 강간 등의 가해행위가 1년 이하의 처벌에 멈추어 엄한 처벌을 통한 범죄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

3) 낮은 형량과 친고죄의 문제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균형법상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량이 낮은 편이다. 공연성과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광범위한 유형을 포함하지만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균형법으로 심각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균형법의 낮은 형량은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으로 형량이 높아지기도 한다. 군대 내 성폭력에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량이 높은 규정으로 보완되는 것이다.¹⁴⁴⁾ 그러나 이 같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의 보완은 이론적인 가능성에 그칠 뿐이며 실제로는 친고죄 조항에 의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낮은 형량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균형법 상 추행죄의 형량은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사회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가시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강제적인 행위가 될

다. 또한 추행의 행위의 기술에서 '느끼게 하는'이라는 규정이 추행에서 피해자 유발론과 관련된 언설을 담고 있다.

142) "2003년 국회 국방위원회 이경재 의원 요구자료: 최근 3년간(01~03) 영내외를 포함한 성범죄 발생현황(성희롱 포함) 및 연도별/신분별/영내외별/ 기소 및 불기소별성희롱/성범죄) 구분 현황".

143) 본 연구를 위해 면접한 군 법무관 A.B 모두 어떤 기준으로 남성간 성폭력을 위의 네가지로 구분하였는지 알고 있지 못했다.

144) 예를 들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을 했을 때, 균형법상 추행죄로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에도 해당하며 형법에 의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¹⁴⁵⁾.

그동안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데에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¹⁴⁶⁾ 친고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성폭력을 은폐·조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법 상 추행죄는 ‘비친고죄’이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특별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상급자인 상황에서¹⁴⁷⁾ 피해자는 가해자 및 그 주변인들에 의해 고소취소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부사관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을 당하므로¹⁴⁸⁾ 가해자는 형량이 높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소를 취소하라고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가해자의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남아 있는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가해자나 주변의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상급자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고소를 취소하게 된다.¹⁴⁹⁾ 속보사례에서도 형법의 강제추행이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사실관계에 있어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적용된 법률이 달라지는 것은 고소의 유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¹⁵⁰⁾ 결국 친고죄 규정

145)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를 보면 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에 의한 성추행행위를 말하며 군대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고참병, 또는 상급자라는 계급이나 직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후임병또는 하급자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추행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군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1. p.10.

146)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4, p. 38;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 1998, p. 173; 서보학,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4호, 1996, p. 18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p. 56.

147)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임병에 의해 직접피해를 입은 비율은 71.1%이다.

148) 군인사법 제 1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4호.

149) 군법무관 B의 심층면접.

150) 고소를 한 경우에는 강제로 후임병의 겨드랑이, 가슴, 배 등을 간지럽 태우고 성기를 만지거나,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경우 등에 강제추행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며, 중대장이 소대장을 여관에서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항문성교를 한 사안의 경우도 성폭력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가 내려진적인 예가 있다. 그러나 위와 비슷하게 강제로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한 다른 경우에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

은 피해자가 고소를 결정할 때 가해자에 의해 가시적·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건들은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이 아닌 균형법 상 추행죄로만 처벌되며 처벌되더라도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¹⁵¹⁾

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남성간 성폭력이 강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균형법 상 추행죄의 입법목적을 명료화해야 한다. 또한 균형법 상 추행죄는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와 동의하지 않은 강제적 성행위를 구분해서 처벌해야 한다. 동성에 차별을 담고 있는 '계간 처벌'은 삭제해야 하고, 군기 유지를 위해 군대 내의 성행위금지가 필요할 경우는 다른 항목에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남성간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강간의 대상 및 행위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법에서는 남성간 강간을 인정하고 강간의 객체에 남성을 포함시키고 있다.¹⁵²⁾ 강간의 객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주 형법에서 남성을 포함시키는 추세이고, 영국에서는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에 따라 남성을 포함시켰고, 프랑스에서는 1980년 형법 개정으로 남성을 포함시켰으며, 독일에서는 1997년 제33차 형법개정으로 '부녀'에서 '타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행위유형에 대해서도 미국 모범형법전은 강간죄의 '성교'가 구강·항문 성교를 포함한다고 했고, 영국의 경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의 형법도 강간의 의미를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성기 이외의 것의 삽입을 포괄하며, 독일도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간음' 이외에 '유사한 성적 행위를 포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형법을 개정해서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고, 행위유형에 간음뿐 아니라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성기의 이물질 삽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형법 상 강제추행

은 사례들도 보인다.

151) 위 각주 30)의 예에서 후임병이 선임병에 의한 압력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친고죄인 형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선임병은 균형법에 의해서만 1년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균형법이 비친고죄이더라도 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이 친고죄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15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pp. 12-13, 50-51; Gillian C. Mezey & Michael B. King, *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126-130

죄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계사회인 군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형법 상 추행죄를 입법한 것과 같이, 폭행·협박의 요건이 없거나 완화된 형태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군형법 상 강간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¹⁵³⁾

아울러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의 친고죄 규정은 군대 내 성폭력 처벌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형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군대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

153) 군형법상 강간죄를 신설하라는 주장은 형법에 규정될 남성간 강간이 현행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형법상 강간죄가 폭행, 협박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친고죄화 된다면 군형법에 별개의 조항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제도의 개선

가. 현행 제도상의 관점의 문제점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제도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먼저 짚어야 한다. 관점은 제도의 형식과 내용 구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제도적 대처의 전제가 되는 관점은 법 문제에서도 지적했듯이 성폭력을 '성군기 문란 사고'로 보는 것이다.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사고는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국방부는 성폭력이 "개인의 과멸은 물론, 군 내부의 기강을 문란시켜 단결력을 약화시키며, 대군 신뢰도를 추락"¹⁵⁴⁾시키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명과 단결력, 사기 저하, 사후 처리를 위한 검열 등의 불필요한 정력 소모와 부대원 상호간의 불신을 야기하는¹⁵⁵⁾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단결력이나 사기 저하를 염려하고 대군 신뢰도의 추락을 조직 보위의 큰 문제로 여기는 군대에서 성폭력을 밝히고 해결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단결력과 사기,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한 크다. 실제로 2003년의 '사고예방 종합대책 추진방침'을 보면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등은 보복우려와 수치심으로 외부표출을 꺼리므로 적발이 어렵고, 초급간부들은 부대관리 취약점 노출을 우려하여 상급부대 보고 은닉 및 축소보고의 경향을 보임" 이라고 적고 있다¹⁵⁶⁾. 사건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사건의 근원적인 해결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해석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군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이해하는 것은 군기를 살리기 위하여, 내부성원들의 신뢰와 결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사건을 표면화시키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조직 보존논리¹⁵⁷⁾에 빠지기 쉽게 한다.

154) 국방부, 앞의 자료, 2001, 발간사.

155)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 2001, p.4.

156) 육군본부, 「사고예방 종합대책 추진방침」, 육방침 제03-35호, 2003. p.18

157) 조직 보존을 위하여 성폭력을 외부에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군대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0년 7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약 3년간 활동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백인위원회>가 공개한 사건들에서도 드러났듯이 진보적 시민단체 등 각종 운동조직에서도 일

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신고 절차와 실효성

1)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신고와 처리 절차

가) 신고절차

현재 군대 내 성폭력이 공식적으로 사건화될 수 있는 경로는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마음의 편지 및 소원수리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마음의 편지 및 소원수리함은 사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¹⁵⁸⁾ 마음의 편지나 소원수리함의 내용은 지휘관에게 보고된다.

②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상급자가 직접 발견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다. 지침 상으로는 대대급 이하 제대는 일일결산 및 지휘 보고 시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추행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분대장 관찰보고제도'를 시행하여 분대장으로 하여금 분대원의 신상변동과 행동 관찰사항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의 지휘계통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보고하게 한다.¹⁵⁹⁾

③ 부대정밀진단 등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다.

④ 헌병대나 군검찰에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헌병대나 군검찰이 부대마다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헌병대나 군검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하기는 어렵고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¹⁶⁰⁾

⑤ 군대 내 개설된 고충처리부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다. 고충처리 부서는 신고를

반시민들에 대한 자기 조직의 신뢰성 파괴나 동료들간의 의리 등을 내세워 성폭력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조직 보존논리는 많은 곳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158)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목격자의 보고방식에서 '소원수리함 또는 마음의 편지함 등을 통해'가 응답자 41명 중 21명으로 51.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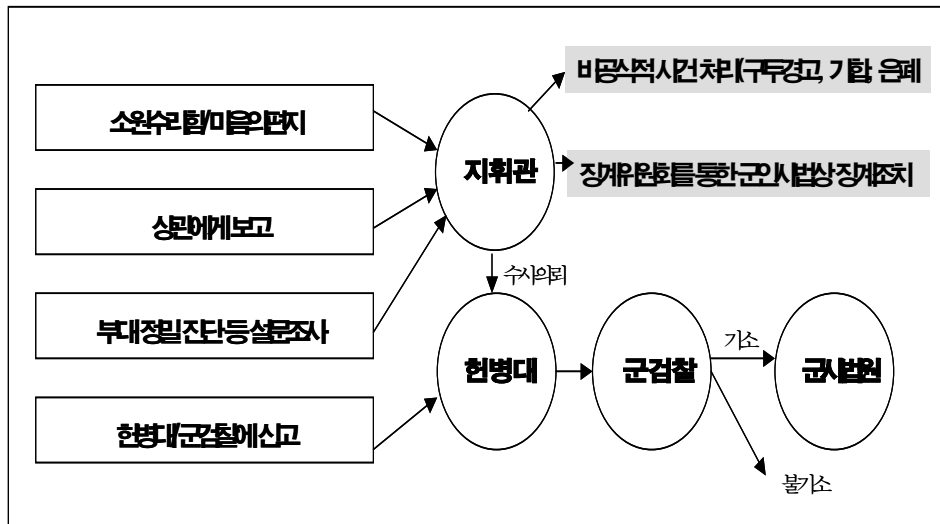
159) 「성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p. 21-22.

160) 특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계급이 낮은 병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려움은 가중된다.

접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⑥ 다른 사건으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다 군대 내 남성간의 성폭력을 혼자서 참고 견디다가 결국 탈영하게 되고 붙잡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난 사례가 있다¹⁶¹⁾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되지 않고 무시되는 경우에 피해사병이 탈영이나 자살 등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나) 신고후 처리절차



[그림 20] 신고 후 처리 절차

일단 군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보고되면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처리가 되는데, 처리절차는 지휘관에 의한 징계절차와 헌병대, 군검찰,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절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지휘관에 의한 징계절차'는 소원수리함이나 마음의 편지, 구두보고, 부대정밀진단을 통해 부대의 지휘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161) 군법무관 A 보충면접.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¹⁶²⁾ 헌병대로 사건을 넘겨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두로 경고하거나 사건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중요한 신고절차인 소원수리함과 구두보고¹⁶³⁾ 부대 지휘관의 소관이다.

둘째, 헌병대, 군검찰,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절차다. 지휘관이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나 헌병대와 군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헌병대 수사를 거치게 된다. 헌병대는 수사 후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군검찰은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 군대의 사건처리 절차가 민간과 다른 점은 헌병대-군검찰(민간에서는 경찰-검찰)로 일원화되지 않고 지휘관이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갖는 것이고, 헌병대가 독립수사권을 갖고 있어 항상 군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점이다.

2) 문제점

가) 군대의 성폭력 지침에서 밝힌 각종 대안을 살펴보면 빈번한 부대 정밀 진단 혹은 부대장 보고 의무화, 고충처리 담당관의 배치등 다양하다. 그러나 개선점을 찾기 이전에 이런 제도들이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만큼 기초적인 수준의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다. 본 조사를 포함한 세 번의 설문조사에서 10%이상의 피해 발생률이 나왔지만 작년 7월 국방부의 자체 조사후 보고한 성폭력 발생률은 지난 3년간 총 33건으로 '군대는 성폭력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외부 설문조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군대는 발생하는 거의 모든 성폭력이 보고되거나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주장할 만한 차이이다. 본 설문결과와 경우도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의 신고율은 103명 중에서 4명(4.4%)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경우 모두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해자와의

162) 군인사법 제58조, 59조; 부사관 이상에 대한 징계로는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이 있고, 병에 대한 징계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이 있다.(제57조)

163) 피해자가 보고보고 들은 경우의 피해보고 방식을 살펴보면, 소원수리함 또는 마음의 편지함을 통해(21건, 51.2%), 직접 상관에게 보고(10건, 24.4%),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짐(3건, 7.3%), 상관이 발견함(2건, 4.9%)으로 나타났다.(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고방식에 대한 문항이 있었으나 보고사례가 4건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할 수가 없었다) 소원수리함의 비중은 피해자·가해자·군법무관 면접사례에서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때문에'가 그 뒤를 이었다.¹⁶⁴⁾ '오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성폭력을 문제시하는 민감도가 아주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과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18%를 차지하여 사병들은 성폭력 신고결과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군기 위반사고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을 살펴보면 신고 및 접수 시 신고되어 확대되기 전에 조기에 조치하게 되어 있다¹⁶⁵⁾ 이러한 사실은 성폭력을 사건화하기보다 당사간에 합의하여 조정¹⁶⁶⁾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주거를 계속 같이하고 위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더 계급이 높은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성폭력의 조정과정에 자유로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 신고 후 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성폭력 처리에서 지휘관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가 각 부대 지휘관의 가치관 및 성의식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건으로 이해되고 사건의 발생이 지휘관의 승진이나 지위를 암묵적으로 위협한다면 지휘관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사건화

164) Preble과 Groth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는 이유를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피해 사실을 피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남성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자 스스로 성행위에서 쾌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성폭력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가해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혼돈, 죄의식,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지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reble & Groth, *Male Victims of Same-Sex Abuse*, Sidran Press: Baltimore, Maryland, 2002, pp. 51-52 참조)

165) 국방부, 위의 자료, 2001, p. 19.

166) 성군기 위반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및 기준에서 "성군기 위반사고가 신고되어 확대되기 전에 조기에 조치한다"는 사항은 성군기 위반 사고가 신고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를 보게 하는 것을 암시한다. 성폭력 피해를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성폭력을 사건화하는 것은 어렵다. '신고되어 확대된다'는 의미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사고로 인지함으로써 성폭력 피해를 사건화하는 것을 기피하는 맥락을 암묵적으로 드러내 준다(국방부, 위의 자료, 2001, p. 20).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¹⁶⁷⁾ 또한 국방부는 성폭력에 대한 지휘관의 예방책임을 지시하고 있다¹⁶⁸⁾. 이것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예방에 대한 책임은 발생사실에 대한 문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낳고 성폭력가해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사고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조정하고 무마시킬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다. 군대 내 남성간 신고처리 절차의 개선방향

1)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설문조사 결과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가 상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4명(4.4%)에 지나지 않았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방식은 “혼자서 참고 견디었다”(35명, 52.2%)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군대 내에서 자체 상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폭력의 문제해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목격자들이 주로 ‘불이익이 두려워서’와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되지 않아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점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¹⁶⁹⁾

167) “성군기 위반사고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국방부, 앞의 자료, 2001, p.20)

168) 성군기 위반 사고 예방안내서에 따르면 지휘관의 성군기 위반 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국방부, 앞의 자료, 2001, p.13). 첫째, 지휘관은 주기적인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교육(분기 1회 정과 교육 및 기회 교육) 및 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한다. 둘째, 성군기 위반사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개인신상과 사생활에 대한 누설을 금지한다. 셋째,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교제 문제의 예방을 위해 지도 활동 및 지속적인 부대원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성군기 위반사고 상담·고충에 대한 전담 창구 마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다섯째, 성군기 위반사고 상담자에 대한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한다. 여섯째, 성군기 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169) 귀하가 보고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불이익이 두려워서’를 1순위로 응답한 사람은 78명 중 13명(16.7%), 2순위로 응답한 사람은 8명(10.3%)으로 나타났다.

가) 사건 처리후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사건처리후 피해자가 분대원이나 가해자 주변인들에게 왕따 등 집단괴롭힘, 놀림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건발생 집단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고조치 등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직변경이나 타부대 전출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휘관 및 담당자의 피해자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지원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문제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면 성폭력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도 많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할 만한 충분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의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군복무에 임할 수 있다. 피해자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면 군대가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170)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대 내부에서 피해자의 상담이나 치료를 담당할 인력은 군종장교이지만 현재 군종장교에게 일임하는 것은 전문성에서 한계를 갖는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피해자가 치유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할당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성폭력 유무에 대한 체크 리스트 실시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는 과정에서 후임병들에게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군의무관은 이러한 증상을 일시적인 현상이나 피병으로 진단하기 쉽다171) 군

170) “계간은 한 개인을 군대 입대 전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빠뜨리고 정신적 판단기준, 육체적 발달, 가정·친구·사회환경적인 제반 성장요소, 그리고 개인 윤리규범 기준에 파괴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심리적인 공황과 심한 모멸감 수치심과 자괴심,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유발시켜 악성 군기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국방부, 「성군기위반사고 예방안내서」, 2003, p.10)

171) “일단은 95%가 피병이다. 군대생활 하기 싫은 걸 전환장애증이라 하더라구요. 전환장애

의무관은 '군무부적응자'들이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병 개개인의 신상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지, 성폭력의 고통을 겪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 중에서 성폭력 당시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응답에 참여한 93명 중 22명(21.4%)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는 성병감염뿐 아니라 외상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므로 군의무관은 환자로 찾아온 사병의 상태를 진찰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의관이 '성폭력 피해 유무'를 '체크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내무반 시설 개선

연구진이 면접한 군대 지휘관이나 육군 교도소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내무반 시설 개선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¹⁷²⁾ 내무반 시설 개선은 군인들의 신체적 접촉을 줄임으로써 취침시에 내무반에서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 일정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군대 내 성폭력이 은밀한 장소뿐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무반 시설 개선은 소극적인 의미의 처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내무반 시설 개선은 187명(15.5%)에 지나지 않았고, 군대 내 성교육과 개인의 인권교육 강화(321명, 26.6%)가 내무반 시설 개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¹⁷³⁾ 군대 내 남성간 성폭

증. 그걸 보면서 정신병이라고 파악을 안 해요. 일단 피병이다. 잠시 병원에 댔다가 돌려보내면 멀쩡해질 거다 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것보다는 군대가 싫어서 생긴 병이다, 그 병 자체는 구타나 가혹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억압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군대를 싫어하는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기질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군가협 실무자>

172) 군은 “병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자, 구형 통합막사 103개 대대를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국방저널」, 2004.1 (<http://www.dema.mil.kr/jour/jour01.html>)). “군 내무반에 소대단위의 침상형에서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침대형으로 교체되면 병사들의 생활면적이 3.63㎡에서 6.72㎡로 확보된다. 또한 2020년까지 6조 9700억원을 들여 1150개 대대급 부대의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꿀 계획이다.”(“군내무반에 개인침대 보급”, 「한겨레신문」, 2003. 11. 30.)

173) 설문조사 결과 군대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군대 내 성교육과 개인의 인권교육 강화(321명, 26.6%), 신고절차 개선과 신속한 대응책 마련(270명, 22.4%), 가해자 처벌을 위

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사건에 대한 헌병대 및 군검찰의 개입

지휘관의 부대통제권은 군대의 특성상 인정되어야 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법기관의 개입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휘관의 사건 접수시 그 정보를 헌병대 및 군검찰과 의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¹⁷⁴⁾ 또한 소원수리함과는 별도로 특화된 성폭력 신고함을 설치해서 신고함의 개봉권한을 군검찰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5) 군인법의 제정

군인들은 국가의 안보와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명하복을 해야 하고 생명을 바치거나 희생을 요구받는다. 군인에게는 의무만 부여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군인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군인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는 군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¹⁷⁵⁾ 군대가 성폭력을 성군기로 이해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향후 군인법 등을 제정해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한 법적 강화(214명, 17.8%), 내무반 시설 개선(187명, 15.5%), 성폭력 상담 및 대처기관 마련(183명, 15.2%), 군대생활의 폐쇄성 해결(10명, 10.8%), 스스로 잘 처신해야 함(7명,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174) 현재에도 징계로 처리된 사건 중에서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나, 이는 사후적 통제라는 점에서 모든 경우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사건당사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정보의 공유가 더 효율적인 처리방식이 될 것이다.

175)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2002, pp. 194-199.

4. 군대 내 성교육과 성의식 변화

가. 성교육 실태와 효과

지침에 따르면 분기별로 성교육¹⁷⁶⁾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대 방문시 지휘관등을 면접했을 때도 빈번하게, 특히 2003년 7월 김모 일병의 자살사건 이후에는 더욱 자주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접했었다.

그러나 성교육 횟수에 관해 전체 응답자만의 결과를 보면 성교육을 받은 횟수는 입대 이후 평균 2.8회로 나타났다. 군대에 방문해서 응답한 결과는 수치가 좀더 낮아서 A부대 사병의 경우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69명이 평균 2.43회, B부대 사병의 경우 87명이 평균 2.67회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성교육을 받아본 횟수

	빈도(명)	평균
A부대	69	2.43
B부대	87	2.67

특이할 사항은 군대 내에서 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A부대의 경우 145명 중 60명(41.4%), B부대의 경우 143명 중 44명(30.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군대 내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

	A부대	B부대	총계
예	85 (58.6%)	99 (69.2%)	184 (63.9%)
아니오	60 (41.4%)	44 (30.8%)	104 (36.1%)
총	145 (100.0%)	143 (100.0%)	288 (100%)

176)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 p.12

이는 부대 별로 성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¹⁷⁷⁾, 사병들이 성교육을 받은 횟수가 실제적으로 아주 적었거나 성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횟수나 내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현실을 보여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군대 내 성교육의 내용은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의 내용과 방지를 위한 교육(281명, 40.3%), 성병의 종류와 치료에 대한 교육(121명, 17.4%), 성병방지를 위한 피임교육(106명,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건수별 백분율을 보자면 성폭력 일반에 대한 교육은 77.8%가 받은 것으로 나왔으며 성병 등 보건교육 33.5%, 피임교육 29.4%, 성욕해소법 2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성교육 내용의 빈도 (N=361)

	빈도(건수)	백분율(%)	
성병 종류와 치료에 관한 교육	121	17.4	33.5
성병 방지를 위한 피임교육	106	15.2	29.4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의 내용과 방지를 위한 교육	281	40.3	77.8
생리 구조와 임신과정에 관한 교육	47	6.7	13.0
남녀평등 의식에 관한 교육	60	8.6	16.6
성욕해소법에 관한 교육	77	11.0	21.3
사고사례를 통한 교육	1	0.1	0.3
기타	4	0.6	1.1
총	697	100	193.1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의 내용과 방지와 ‘남녀평등 의식에 관한 교육’은 핵심적이다. 설문조사에서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의 내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은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교육내용은 지휘관이 성군기 위반시 군법에 의한 처벌을 경고하거나 성병 예방을 강조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남녀평등 의식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60명(8.6%)에 지나지 않았다.

177)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한 OO사단의 경우 금년에 신병과 분대장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6회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군인 한 명이 1년에 받는 실질적인 횟수는 그에 못 미치고 있다.

식에 관한 교육은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한 교육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다⁷⁸⁾.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적었다는 것은 내용 있는 성교육이 되었는가에 대해 회의하게 되는 부분이다.

성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 결과 긍정과 부정 중립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63> 성교육의 유용성 여부 (N=359)

	빈도(건수)	백분율(%)
매우 도움이 되었다	31	8.6
조금 도움이 되었다	97	27.0
그저 그렇다	140	39.0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8	16.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3	9.2
총	359	100

그러나 성교육의 유무와 성의식 문항들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군대 내 성교육이 군인들의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교육을 받은 사병이 성교육을 받지 않은 사병보다 특별히 성의식이 높게 나타나지 않아 성교육을 받지 않은 사병과 별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나. 성교육실시에서 관점상의 문제

군대 내 성교육은 군인의 성을 관리함으로써 군기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¹⁷⁹⁾ 성욕이 왕성한 군인들이 모인 곳이 군대라는 전제에서 외박이나 휴가시 성관계 사고 방지 또는 성병 방지등 성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¹⁸⁰⁾ 이러한 관

178) 외부강사인 성교육강사 A는 성교육에서 남녀의 평등한 관계부분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한다는 게 폭력이라 얘기하지요 그거는 어떤 폭력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폭력이고 삶의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성교육은 사람끼리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179) “부대장이 휴가를 나가면 여자도 만나고 여자친구 있으면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 더럽게 나가서 여자친구하고 사창가 가서 그러지 말아라. 병 걸여 와서 그러면 뭐 무슨 소용 있겠냐. 그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얘기예요.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 1-1>

점은 군인들이 외박이나 휴가시 성병에 감염되어 오지 않게 하고 임신·출산 등의 성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성교육을 주로 구성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군대내 주 성교육 강의자인 간호장교나 군의무관은 생물학적 성이나 생식구조를 설명하거나 남성의 성욕해소법이나 성병방지에 주력한다 면접한 군의관은 자신이 실시한 성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병이) 많이 발생하죠. 문제가 티켓다방이나 군대 주변에 그런 불법,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다른 군은 한번 감염되고 나면 면역이 생기는데 성병은 면역이 안 돼요... 저는 일반적인 성교육하고 성병교육 하면서 휴가 가기 전에 애들 불러서 콘돔 받아가라. 군 보급품 중에 콘돔 있으니까.” 남성의 성욕은 강하고 자제할 수 없다는 남성중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젊은 남성인 군인의 성욕을 어떻게 해소하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기를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군기사고방지중심의 교육방식은 성폭력문제를 교육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남녀평등의식이나 바람직한 성문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인간간의 관계성 등 성폭력문제의 기본관점을 교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육군 교육사령부가 제작한 ‘성희롱 없는 부대만들기라는 비디오¹⁸⁰⁾에서도 나타났다. 성희롱의 유형별 분류는 충실하게 하고 있지만 왜 성희롱을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의 경우, 성군기 위반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남. 여성간 성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와 ‘근대화 및 민주화 진행과정에서 파생된 과도기적 야노미 현상으로서 여권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꼽고 있다¹⁸²⁾. 이러한 관점은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성폭력이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위축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

180) “성적 관심과 분출 욕구가 가장 왕성한 조직의 특성과 군내 여군인력 확대 등으로 성군기 위반행위 발생 개연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성군기 위반사고는 군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격과 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므로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육군본부, 「사고예방종합대책 추진방침 교육방침」 제03-35호, 2003, p. 11)

181) 육군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로서 2001년 6월 30일에 제작되었다.

182)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 op.cit. p. 3

을 혼동하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다른 불이익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는 군대라는 조직의 위계성이나 남성중심성 내포된 폭력성 때문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 군대내 성교육 개선방향

1) 시급한 성교육 예산확보

설문조사 결과 군대 내 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군목 등 군대 내 종교 담당자(148명, 30.0%), 군대 내 성교육 담당자(136명, 27.6%), 성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90명, 18.3%), 간부(77명, 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 성교육 담당자 빈도 (N=360)

	빈도(건수)	백분율(%)	
군목 등 군대 내 종교담당자	148	30.0	41.1
군대 내 성교육 담당자	136	27.6	37.8
성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90	18.3	25.0
간부	77	15.6	21.4
비디오 시청	26	5.3	7.2
의학전문가	15	3.0	4.2
기타	1	0.2	0.3
총	493	100.0	136.9

이 결과를 보면 성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성희롱에 속하고 또는 성추행에 속하는지를 알리거나 해서는 안될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¹⁸³⁾. 구체적으로 성을 보는 관점 남녀간 남남간의 평등한 관계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폭력은 왜 일어나는지, 군대내에서 형성해야 할 바람직한 성문화는 무엇인지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

183) 성희롱에 관해 자체 제작한 비디오를 그런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는지 등의 다양한 전문적 내용을 담고 있고 효율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성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과 교육전문가의 양성, 군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군대실정을 담을 수 있는 군대와 외부와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을 일차적으로 필요로 한다. 실제 면접한 외부 성교육 전문가들은 군인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나¹⁸⁴⁾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2001년부터 성군기 위반 사고에 대한 지침은 항목별로 상세하게 만들었지만 성교육을 위한 예산이 2003년까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폭력 대처에 대해 군의 내실 있는 대처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하게 한다. 일례로 보충면접에 응한 외부 성교육 강사 A는 2002년 공문을 작성해서 국방부의 담당자나 부대의 지휘관을 찾아가서 군인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장거리 부대출장과 낮은 강사료를 감수하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⁸⁵⁾ 낮은 강사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접한 군 지휘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외부강사를 부르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 무료로 해달라고 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곤 한다는 것이었다. 외부 성교육 강사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장거리 부대출장을 해야 하는 군대내 성교육에 대해 청탁이 최근 들어 많이 들어오지만 대부분 무료강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외부 성교육 강사와 관련된 현실은 지침 등에서 보인 의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서 강사료조차도 지불하기 힘든 정도의 투자로는 성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대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외부전문가들의 활용이 전적으로 이들에게 성교육이 맡겨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외부전문가들은 군인이나 군대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군

184) “제가 작년부터 성인들을 위한 성교육을 상담하면서 그 사실은 남자들을 위한 성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여자들한테만 자꾸 방어적으로 교육을 하니깐. 남자들도 건강한 성문화나 이런 대안을 알면 그렇게 안 살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 기획서를 냈어요. 군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성교육강사 A>
“군대 내에서 성교육이 실시되면 교육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대상이 되는 남성들의 층이 고르고 연령별 동질감이 있고 성장과정이 같아 유리한 교육집단이죠. 젊은 세대의 남성 성교육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성교육강사 C>

185) “훈련소에서 10분이내의 근거리 상담소가 있어요. 교육을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부대에 교육을 건의했지요. 공문을 작성해서 훈련소의 정훈참모부 대위와 면담을 했어요. 그 분이 사회복지사 출신이어서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면담하고 성폭력 실태를 파악했죠”<성교육강사 C>

인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¹⁸⁶⁾ 군대 내 성교육 담당자와 외부전문가가 공동참여해서 군인에게 적합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사병 이외의 지휘관 등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필요

현재 국방부 여군발전단이 진행하는 교육은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교관중심의 위탁교육에 이어 2004년도부터 인성교육과 지휘통솔 과목 등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부대별 교육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¹⁸⁷⁾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방향성을 잘 살려 교육을 실시한다면 성폭력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휘관과 군의무관 형사사법 담당자, 군종장교들의 성폭력에 대한 민감도는 성교육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이들의 변화된 성의식은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 내 계급과 역할에 따른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대상에게 적합한 성교육을 고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

군대 내 성교육은 성폭력에 관한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간과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남성 피해자들이 낙

186) 성교육 강사 D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대 내 사례를 가지고 와서 교육하지 않으면 좀더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자기 몸으로 체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 같아 부대에 관한 실사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평가서에 남성간 성희롱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 내용을 보강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올해는 그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교육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쪽 내용을 보강해서.”

187) “이제야 ‘양성평등’ 익히는 軍 - 창설 이래 첫 의식교육 실시”, 「경향신문」, 2003.10.6. 여군발전단은 여군학교가 없어지면서 2002년 11월 국방부 내에 생긴 여군 대표조직으로서 여군관련 정책 개발, 고충상담과 처리, 여군 대표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성폭력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게 되어 올바르게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⁸⁸⁾

둘째, 동성애와 동성간의 성폭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성애 혐오의 문화 안에서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는 동성애자와 구분되지 않는다. 남성간 성폭력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남성간 성폭력을 질서유지나 성군기 문란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폭력의 개념을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만이 성폭력이 아니라 성적 농담이나 장난을 성폭력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성기삽입만이 성폭력이라는 인식은 성폭력을 관계의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성행위를 성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강간과 같이 극단적인 성폭력에 비해 성기 만지기 포옹, 언어적 성희롱 등은 친밀감과 장난으로 용인하려는 군대 내 성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삼가도록 한다. 성추행에 대한 군법 처벌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올 수 있지만 성폭력의 개념 이해가 없이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분노나 갈등을 성폭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자신의 분노와 갈등을 조절하여 대화로 풀어 가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¹⁸⁹⁾ 성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의 위험에 처한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조를 요청할 것인지 군대 내 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4. 소 결

188) Michale Scarce, *Male on Male Rape*, 1997, p. 248.

189) Michale Scarce, *op. cit.*, p. 260.

이 장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의식적 문화적 변화유도와 함께 사건발생 이후 법적 사건처리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해결 과정은 법적 제도적, 의식적 차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법적인 차원에서는 남성간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에 포함시키고 남성간 성폭력에서 강간을 인정해야 한다.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상의 친고죄규정은 군대 내 성폭력 처벌에서 강도 높은 성폭력을 벌하기 힘든 조건을 만든다. 형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군대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 군형법상에서 합의에 의한 계간 처벌은 삭제해야 하고 남성간 성폭력과 동의에 의한 성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둘째, 낮은 신고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장과 사건에 대한 헌병대 및 군검찰의 개입 군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군의무관의 검진 체크리스트에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피해자의 성폭력 치료 및 심리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며, 민간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해나가야 한다.

셋째, 의식적 차원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성문화 개선을 위해 군대 내 성교육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군대 내 성교육을 위해 예산을 할당하고 외부 전문가와 군대 내 성교육담당자가 군인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공동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VI. 총결론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은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설문응답자중 휴가병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군대 안에서 설문에 응한 현역병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응답자가 다수¹⁹⁰⁾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15.4% 이고 가해경험이 7.2% 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높은 발생률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절대다수인 81.3%가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폭력문제와의 연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다양한 차원의 문제가 얽혀있다 첫째, 성폭력은 남성성의 경쟁 속에서 진정한 남자를 만들려고 하는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쉽게 동원되기도 한다. 둘째, 폭력과 가혹행위의 발생과 순 상관관계에 있는 성폭력 발생은 군대라는 공간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남성의 특성상 피해자로서 자신을 위치 지우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일상적인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대신, 장난이나 친밀감으로 미화시키는 가해자 중심논리가 군대사회의 특수성인 위계의 엄격함 속에서 더 깊게 뿌리박히게 된다. 넷째, 발설이나 신고 시 피해자가 겪을 고통이 큰 군대생활의 조건상 보고나 신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쉽게 동성애자로 낙인찍힌다는 사실은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군대라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침묵하게 한다.

따라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해결은 군인 개인의 인권을 조직원리의 주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에서부터, 양성평등적 남성성에 대한 이해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보는 논리와 문화의 확산과 피해자의 적절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타당한 처벌, 동성간 성관계와 강제적 성폭력을 구별하는 논리의 정착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적, 법적,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군대내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방부나 육군의 실효성 있는 대책활동은 조사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에서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하여 2003년의

190) 설문에 응답한 현역병은 405명이고 제대병은 266명이다.

자살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군대의 경우 2001년 이후에는 지침을 내려 제도 보완과 교육확대를 꾀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인데, 설문 응답자들은 일정하게 일반적 성폭력과 관련한 통념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군대내 성폭력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으레 있는 일 친밀감의 표현 혹은 장난 등으로 합리화. 사소화시키거나 신고 등을 통한 공식적 문제해결가능성을 거의 믿고 있지 않았다. 현역병들의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자신들의 문제를 설문조사에서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군대가 성폭력을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

이런 현실은 군대가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의식적 변화가 형식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군대문화의 변화나 효과 있는 성교육 실시를 위한 전면적인 투자와 인력마련 신고·보고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화된 방침 마련 등과 함께 세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법률상으로는 남성간 성폭력을 그 행위정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인정과, 남성간 성폭력을 동의에 의한 성행위에 구분지어서 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성폭력을 군기를 위반하는 일탈행위수준으로 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부대장의 처리권한을 약화시키고 신고의무제나 군검찰 직할사항으로 특화시키는 것 등을 통해서 모든 성폭력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성폭력 보고 처리율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 발생확인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구조의 마련이나 군의무관의 체크리스트에 성폭력 조항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군대외부의 전문인력강사단을 구성하고 군대와의 협력 하에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평가와 교육실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 지휘부가 남성간 성폭력을 단순한 군기문란사고로 생각하여 감추거나 군대 안에서 군기를 세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의 하나로서 문제를 드러내고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과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번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가 단순히 군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대처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방부,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 2001
-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방지에 대한 지침」, 2001
- 육군본부, 「사고예방 종합대책추진방침」, 2003
- 육군본부,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특별대책」, 2003
- 국회 국방위원회,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현황(성희롱 포함) 및 연도별/신분별/영내외별/기소 및 불기소별성희롱/성범죄) 구분 현황」, 국회 국방위원회 이경재 의원 요구자료, 2003
-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판결」, 2002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2002
- 국방부, 「2000년 이후 군내 성범죄 관련 실태 및 조사관련 자료」, 2003
- 국방부, 「성군기위반사고예방안내서」, 2003
- 권수현,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1998
- 권인숙, 「사회 군사화와 여성정체성」,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문, 2000
-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 7권 4호, 1993
-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대법원, 『군사법원 판결요지집』, 2002
- 민경자, 『한국여성인권운동사』, 『반성폭력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0
- 박노자, 『우리안의 파시즘』,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삼인, 2002
- 법무부, 『범죄백서』, 1998
-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 월간조선, 『월간조선의 군대종합 가이드 북』, 월간조선사, 2000
- 육군, 「사고예방종합대책 추진방침」, 2003
- 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일신사, 1996

- 이동훈. 「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선희 외, 『보건교육』, 「미혼 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관련 요인분석」, 보건증진학회지 제 17권 2호, 2002
- 이재경, 『여성학 논집 19집』 「직장내 성희롱 실태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2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 장필화, 『여성/몸/성』,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또하나의문화, 1999
- 정희진,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문화, 1999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 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 『남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원 편 사회문제연구소, 1999
- 채규만, 『성피해 심리치료』, 학지사, 200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1998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자료', 2003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자료', 2004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할 몇 가지 것들", 2003
-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199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의 상업화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2000
-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 3호』, 한국피해자학회, 1994
- 함인희,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문화 제 13집 2호』
-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 1993

2. 국외문헌

Bill Watkins & Arnon Bentovim, 「Male Children and Adolescents as Victims」,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Cindy Struckman-Johnson, David Struckman-Johnson, 「Men Pressured and Forced into Sexual Experienc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23. No. 1』, 1994

Claire Casey, 「Dealing With Male Rape」, 『Police Review 17 (January 29)』, 1993

D.J. West, 『Homophobia: covert and overt』, 2000

Deborah Harrison & Lucie Laliberte, 『No Life Like It : Military Wives in Canad』, 1994

Ford C.I Hickson, Peter M. Davies, Andrew J. Hunt, Peter Weatherburn, Thosmas J. McManus, Antony P.M. Coxen, 「Gay Men as Victims of Nonconsensual Sex,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23, No.3』, 1994.

Human Rights Watch United States, 『Predators and Victims』, 「No Escape Male Rape in U.S.Prisons」, www.hrw.org, 2001,

John M. Preble & Nicholas Groth, 『Male Victims of Same-Sex Abuse: Addressing Their Sexual Response』, 2002

M. Scarce, 『Male on Male Rape』, Cambridge, Massachusetts:Perseus Publishing, 1997

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 『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 Oxford Press, 2000

Richard. J. Gelles, 『Intinate Vioence in Families』, Sage Publication.inc. 1997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Schuster, 1975

T.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rasment in the U.S.Military」 New York, London, Oxford: The Haworth maltreatment and Trauma Press.

디트리히 슈바니츠, 『남자』, 들녘, 2003,
수잔 에스트리치, 『진짜 강간』, 교육과학사, 1993
엠마누엘 레아노, 『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 책갈피, 2001
캐롤 페이트만, 『남과 여-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0
토마스 퀴네 외, 『남성의 역사』, 솔, 2001
한스 페터 뒤르, 『음란과 폭력』, 한길 히스토리야. 2003

3. 관련기사

경향신문 2003. 7. 10, [포커스] 동성간 성폭력 ?이제 말해야 한다?
경향신문, 2001. 1. 10, '성군기' 근본대책 세워야
경향신문, 2003, 7, 24, 軍 성추행 막을 軍인권법 제정을
경향신문, 2003. 7. 23, 병영내 성폭력 발생원인 심층적 접근 필요 등
뉴스메이커, 536호, 병영 성 군기 문란 '워치콘' 병영 내 성추행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
문화일보, 2003. 7. 29, 성추행.수뢰...軍紀 무너진다
연합, 2003. 9. 21, 군내 성범죄 올들어 급증
조선일보, 2003.7. 15, 軍內 성폭력은 인격살인? 사회가 나서 대책 세울 때다
주간동아, 2003. 7. 31 (395호), [커버스토리] 군대 성추행을 무장 해제하라? / 쉬쉬하다 상처만 더 깊는다 / 부대 내 성추행? 신고해도 물어두기 급급 ... 철저한 조사 처벌예방교육이 근본 / 미군은 성폭행범에 30년刑 美日처럼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 부대 내 전문 상담원 근무도 필수
주간조선, 2003. 7. 31 (1764호) 남성끼리 성추행? 그 은밀한 심리
한겨레, 2003. 7. 14, 축소 급급한 군 성추행 수사
한겨레, 2003. 7. 18, [집중점검 - 군 인권] (1) 근절되지 않는 폭력
한겨레21, 2002. 10. 24 (431호) [이슈추적] 누가 군사법제도를 주무르나
한겨레21, 2003. 7. 24 (469호) [이슈추적] 내무반이 사람잡네
한겨레, 1998. 8. 24, 성희롱 금지령/늘어나는 여성인력 보호/비뚤어진 병영문화 추방

<부록 1>

《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 중 발췌 》

■ 성군기 위반 사고의 정의

성군기 위반 사고란 성을 매개로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 행위, 성적 접근, 성적 요구, 성과 관련된 언어나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에 의해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명예 실추를 초래하는 모든 성관련 범죄를 말한다

■ 성군기 위반사고의 유형

성군기 위반사고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성희롱 사고, 성범죄 사고, 그리고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를 포함한다.

성희롱 사고	성희롱이라함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위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 차이를 이유로 복무·근무평가·근무조건·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범죄 사고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간통, 혼인빙자간음,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추행(계간) 등을 말한다.
기 타 성군기 위반사 고	성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공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사고 및 기카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성관련 사고를 말한다 * 성군기 위반사고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와 동성인 경우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대해 가하는 역차별적인 성군기위반사고를 포함한다

■ 군대 성피해 신고 체제(예) 일부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 (www.mnd.go.kr) 국방부 검찰단 (www.mndpro.go.kr) 국방부 합동조사단 (www.mndcig.go.kr) 국방부 성문제 상담소장						
감찰	헌병	기무	군종	의무	지휘계통	기타



육·해·공군본부에서 운용중인 신고체제						
육군 여성성문제상담관 해군 여성성문제상담관 공군 여성성문제상담관						
감찰	헌병	기무	군종	의무	지휘계통	기타



작전사 단위에 운용중인 신고체제						
(예) 1군 여군 고충상담책임관						
감찰	헌병	기무	군종	의무	지휘계통	기타



사(여)단 단위에 운용중인 신고체제						
(예) * 사단 고충상담책임관						
감찰	헌병	기무	군종	의무	지휘계통	기타



피해자

<부록 2>

--	--	--	--	--

군대 내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취지는

첫째,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현황과
둘째, 사병들의 전반적인 성의식을 파악하여
셋째, 향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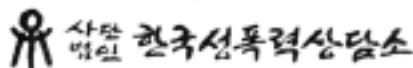
개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02-2125-9700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F
<http://sisters.or.kr> ☎ 02-338-2890

연구팀: 권인숙 (연구책임자), 김엘리, 김현영, 이동욱
연락처: 02-338-2890 전송: 02-338-7122 (담당: 이동욱)

A. 성의식에 관하여

1. 다음은 **성역할**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1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는 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성은 사회적 출세보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남성은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강해야 남자답다	①	②	③	④	⑤
1-6	피임은 여성의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성적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은 여자답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성폭력**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1	성폭력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성폭력은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2-3	성폭력은 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8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부부사이에 강제로 발생한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군대 내에서 남성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성적 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군대생활의 활력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군대에서 발생하는 남성간 성적 접촉은 군대생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남성들간에 성기 만지기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남성간의 불쾌한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군대 내 남성간의 성폭력은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3-8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군대 내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를 기입하고 □안에 횟수를 쓰십시오. ① ___에 (횟수 □번) (→ 41번 문항으로) ② ___아니오 (→ 5번 문항, 3페이지로) < '① 예' 로 답한 경우 >

4-1. 성교육을 누구에게 주로 받았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① ___ 군대 내의 성교육 담당자
 ② ___ 의학 전문가
 ③ ___ 성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④ ___ 군목 등 군대 내 종교 담당자
 ⑤ ___ 기타 _____

4-2. 귀하가 받은 성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① ___ 성병 종류와 치료에 관한 교육
 ② ___ 성병방지를 위한 피임교육
 ③ ___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의 내용과 방지를 위한 교육
 ④ ___ 생리구조와 임신 과정에 관한 교육
 ⑤ ___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교육
 ⑥ ___ 성욕 해소법에 관한 교육
 ⑦ ___ 기타 _____

4-3. 성교육이 군대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___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___조금 도움이 되었다
- ③ ___그저 그렇다
- ④ ___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___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귀하의 군 복무 중 성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하는 입대 후, 성관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를 기입하고 □에 횟수를 쓰십시오.

① ___ 월 □ 회 ② ___ 연 □ 회 ③ ___ 전혀 해본 적이 없다 (→ 8번 문항)

6.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주로 언제 합니까?

① ___외박 나가서 ② ___휴가 때 ③ ___부대 내 생활에서 ④ ___기타

7.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주로 누구와 합니까? _____

B.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에 관하여

※ 다음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 해주십시오.

8. 올해 여름, 성폭력을 당해서 자살한 사병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___예 ② ___아니오

9. 성폭력 때문에 자살한 사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___충분히 공감한다
② ___약간 공감한다
③ ___공감하지 않는다
④ ___기타 _____

※ 다음은 남성간 강제적인 성적 접촉에 관하여 듣거나 본 경우입니다

10-8. 귀하가 보고나 들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이 상관에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① ___예 (→10-8-1번 문항으로) ② ___아니오 (→10-8-4번 문항으로)

<‘①예’로 답한 경우>

10-8-1. 누가 보고하였습니까?

① ___피해자 ② ___목격자 ③ ___다른 사병(들) ④ ___기타___

10-8-2.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___ 직접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 ② ___ 소원 수리함 또는 마음의 편지함 등을 통해서 보고하였다
- ③ ___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졌다
- ④ ___ 기타 _____

10-8-3. 보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___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 ② ___ 사건 진상 조사만 있고 사후 조치는 없었다
- ③ ___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조치되어졌다
- ④ ___ 가해자가 기합 등을 받았다
- ⑤ ___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 ⑥ ___ 가해자가 타부대로 전출되었다
- ⑦ ___ 피해자가 타부대로 전출되었다
- ⑧ ___ 기타 _____

<‘②아니오’로 답한 경우>

10-8-4.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을 보거나 들은 귀하가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쓰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___ 소용이 없어서 ② ___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 ③ ___ 불이익이 두려워서 ④ ___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 ⑤ ___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 ⑥ ___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서
- ⑦ ___ 기타 _____

10-8-5. 피해자가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쓰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___ 소용이 없어서 ② ___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 ③ ___ 불이익이 두려워서 ④ ___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 ⑤ ___ 기타 _____

11. 귀하는 어떤 사람이 주로 성적 접촉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 표 하십시오.

- ① ___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
- ② ___ 학벌, 지역 등으로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
- ③ ___ 매사에 뒤처진 사람들(고문관들)
- ④ ___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
- ⑤ ___ 특별한 이유없이 대상이 됨

12. 군대 내에서 가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표로 기입하십시오.

- ① ___ 친근감의 표현으로
- ② ___ 맘대로 다루려고
- ③ ___ 괴롭히려고
- ④ ___ 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 ⑤ ___ 동성애자이므로
- ⑥ ___ 군기를 잡으려고
- ⑦ ___ 기타 _____

※ 다음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한 경우입니다

13. 귀하는 남성에게 다음과 같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___ 키스
- ② ___ 포옹
- ③ ___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만지기
- ④ ___ 성기 만지기
- ⑤ ___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
- ⑥ ___ 자위행위 강요
- ⑦ ___ 성기 등 신체 애무 강요
- ⑧ ___ 기타 _____
- ⑨ ___ 없다 (→ 14번 문항, 9페이지)

13-1. 몇 번 경험하였습니까?
① ___ 1번 ② ___ 2번~4번 ③ ___ 5~10번 ④ ___ 수시로

13-2. 누구에게 성적 접촉을 당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① ___ 후임병 ② ___ 동기 ③ ___ 선임병 ④ ___ 부사관 ⑤ ___ 장교

13-3. 어디서 성적 접촉을 당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① ___ 내무반 ② ___ 화장실 ③ ___ 샤워실 ④ ___ 행정사무실 ⑤ ___ 초소
⑥ ___ 야외훈련장 ⑦ ___ 연병장 ⑧ ___ 산속 ⑨ ___ 부대 밖 숙박시설
⑩ ___ 기타 _____

13-4. 어떤 상황에서 강제적 성적 접촉을 당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① ___ 처벌이나 기합 줄 때 ② ___ 취침할 때 ③ ___ 샤워할 때
④ ___ 휴식이나 게임 시 ⑤ ___ 운동할 때 ⑥ ___ 외박 시
⑦ ___ 기타 _____

13-5. 강제적 성적 접촉 시, 물리적 폭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① ___ 많이 있었다 ② ___ 조금 있었다 ③ ___ 전혀 없었다

13-6. 성적 접촉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까?

- ① ___에 (→13-6-1번 문항으로) ② ___아니오 (→13-7번 문항으로)

<‘①’로 답한 경우>

13-6-1. 다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___가담하여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② ___잘한다고 분위기를 만들었다
③ ___담담하게 보고 있었다
④ ___못 본 척 했다
⑤ ___하지 말라고 제지를 했다
⑥ ___기타 _____

13-7. 귀하는 자신이 왜 성적 접촉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신체가 연약하게 보여서 ② ___학벌, 지역 등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③ ___매사에 뒤처지기 때문에(고문관이기 때문에)
④ ___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워서 ⑤ ___별 이유 없이
⑥ ___기타 _____

13-8. 귀하는 가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애정 표현으로 ② ___괴롭히려려고
③ ___맘대로 다루려고 ④ ___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⑤ ___장난삼아 ⑥ ___군기를 잡으려고
⑦ ___기타 _____

13-9.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 귀하는 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까?

- ① ___에 (→13-9-1번 문항으로) ② ___아니오 (→13-9-3번 문항, 8페이지로)

<‘①’로 답한 경우>

13-9-1.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___상관에게 직접 구두로 보고하였다
② ___소원 수리함 또는 마음의 편지함 등에 사건 정황을 써서 넣었다
③ ___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④ ___기타 _____

13-9-2. 보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___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② ___사건 진상 조사만 있고 사후 조치는 없었다
③ ___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조치되어졌다
④ ___가해자가 기합 등을 받았다
⑤ ___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⑥ ___가해자가 타부대로 전출되었다
⑦ ___피해자가 타부대로 전출되었다
⑧ ___기타 _____

<‘아니오’로 답한 경우>

13-9-3.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쓰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_____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 ② _____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 ③ _____ 불이익이 두려워서
- ④ _____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 ⑤ _____ 기타 _____

13-9-4.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였습니까?

- ① _____ 혼자서 참고 견디었다
- ② _____ 동료사병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③ _____ 가해자에게 항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 ④ _____ 가족에게 알렸다
- ⑤ _____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 ⑥ _____ 기타 _____

13-10. 군대에서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적접촉을 당한 뒤, 어떤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_____ 불안감 ② _____ 긴장감 ③ _____ 우울증 ④ _____ 분노
- ⑤ _____ 체념 ⑥ _____ 혼란 ⑦ _____ 모욕감 ⑧ _____ 수치심
- ⑨ _____ 기타 _____

13-11. 위와 같은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속되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① _____ 예 ② _____ 아니오

13-12.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서, 어떤 태도나 후유증을 경험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_____ 자살욕구 ② _____ 자해시도 ③ _____ 근무지 이탈 시도
- ④ _____ 불면증 ⑤ _____ 대인기피증 ⑥ _____ 악몽
- ⑦ _____ 기타 _____ ⑧ _____ 특별한 후유증이 없었다

13-13.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한 뒤, 군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_____ 지속적인 성적접촉을 거부할 경우 일차려를 받거나 다른 불이익을 당했다
- ② _____ 긴장감, 불안감 등으로 복무에 차질이 있었다
- ③ _____ 가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적접촉을 당하게 되었다
- ④ _____ 주변 사람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
- ⑤ _____ 별 어려움이 없었다
- ⑥ _____ 기타 _____

14-4. 어떤 상황에서 강제적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십시오.

① ___ 처벌이나 기합 줄 때 ② ___ 취침할 때 ③ ___ 샤워할 때
 ④ ___ 휴식이나 게임 시 ⑤ ___ 운동할 때 ⑥ ___ 외박 시
 ⑦ ___ 기타 _____

14-5. 강제적 성적 접촉 시, 물리적 폭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였습니까?
 ① ___ 많이 하였다 ② ___ 조금 하였다 ③ ___ 전혀 하지 않았다

14-6. 강제적 성적 접촉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___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② ___ 괴롭히려고
 ③ ___ 맘대로 다루려고 ④ ___ 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⑤ ___ 장난삼아 ⑥ ___ 군기를 잡으려고
 ⑦ ___ 기타 _____

14-7. 강제적 성적 접촉 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까?
 ① ___ 예 (→14-7-1번 문항으로) ② ___ 아니오 (→15번 문항으로)
<‘①예’ 로 답한 경우>

14-7-1.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① ___ 가담하여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② ___ 잘한다고 분위기를 만들었다
 ③ ___ 담담하게 보고 있었다
 ④ ___ 못 본 척 했다
 ⑤ ___ 하지 말라고 제지를 했다
 ⑥ ___ 기타 _____

※ 다음은 군대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성적 언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5. 귀하는 군대 내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비하를 당하거나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___ 예 ② ___ 아니오

16. 친근감의 표현이나 강제적이지 않아도 남성의 성기나 몸 만지기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거부감이 든 적이 있습니까?

- ① ___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② ___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③ ___ 그저 그렇다

- ④ ___약간 거부감이 든다
- ⑤ ___매우 거부감이 든다

17. 군대 내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 ① ___전혀 하지 않는다
- ② ___거의 하지 않는다
- ③ ___보통이다
- ④ ___조금 하는 편이다
- ⑤ ___많이 한다

18. 군대 내에서 성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___예
- ② ___아니오

19. 군대 내에서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___예
- ② ___아니오

20. 군대 내에서 성적인 농담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 ① ___전혀 하지 않는다
- ② ___거의 하지 않는다
- ③ ___보통이다
- ④ ___조금 하는 편이다
- ⑤ ___많이 한다

21. 귀하는 군대 내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습관적으로
- ② ___군대생활의 활력을 위하여
- ③ ___인기를 얻기 위하여
- ④ ___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
- ⑤ ___기타 _____

22. 다음 중 군대 내의 남성간 성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표로 기입하십시오.

- ① ___성교육과 개인의 인권교육 강화
- ② ___내무반 시설 개선
- ③ ___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강화
- ④ ___성폭력 상담 및 대처기관 마련
- ⑤ ___신고절차 개선과 신속한 대응책 마련
- ⑥ ___기타 _____

※ 귀하의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귀하의 소속 군대는?

- ① ___육군전방 ② ___육군후방 ③ ___해군 ④ ___공군
- ⑤ ___해병 ⑥ ___단기사병(보충역) ⑦ ___기타_____

24. 귀하의 현재 직급은?

- ① ___이등병 ② ___일등병 ③ ___상병 ④ ___병장 ⑤ ___제대병

25. 귀하의 출생 연도는? 19[]년도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